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Counter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on Aggressor Students in School Violence

이승현 · 김민규 · 서민수

KICJ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책임자

이 승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공동연구자

김 민 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서 민 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경감

연구지원

김 지 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박 현 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발간사

최근 정치인 후보자 자녀와 연예인의 학교폭력 사건들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사안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벌써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졌고, 학교폭력 대응절차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선도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대책이 여론에 떠밀려 단순히 조치를 ‘강화’하는 형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해학생 조치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 정책이 현재의 학교폭력 가해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대응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전반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조치결정 내용, 조치결정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관련 정책과 운영현황을 분석하는 외에 외국의 가해학생 대응정책, 행정소송 사례, 언론보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을 분석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서 대응 가능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선도·교육조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 수행된 연구임에도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민규 부연구위원과 경찰인재개발원 서민수 경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의 진행과 교정·편집 작업을 위해 수고해준 김지윤 조사연구원과 박현나 연구보조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관련 통계자료 확보에

ii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도움을 주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와 한국교총 관계자, 전문가 자문에 직접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11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이 승 현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이승현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11

제3절 연구 방법 13

1. 문헌 연구 13

2. 비교법적 연구 14

3. 판례 및 언론 보도자료 분석 14

4.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15

제2장 이승현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관련 대응정책 및 법제 분석 17

제1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정책의 변화 19

1.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기 20

2.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대응기 24

3. 정책 전환기 27

4. 강력대응으로의 회귀기 28

제2절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29

1. 제1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30

2. 제2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32

3. 제3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35

iv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4. 제4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38
5. 소결	41
제3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관련 규정 분석	42
1. 가해학생 선도조치 관련규정	43
2. 가해학생 세부조치기준	45
3. 부수적 조치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47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관련 입법안 분석	48
제4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현황	50
1.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	50
2. 학교폭력사안 자체해결제 현황	50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현황	51
4. 학교폭력 가해학생 불복 현황	53
제5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문제점	56
1. 서설	56
2. 조기 해결의 가능성 차단	57
3. 즉시분리로 인한 낙인	59
4. 학교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선도조치	62
5. 심의위원회 판단의 전문성 문제	67
6. 가해학생 부모의 책무성 강제 어려움	70
7. 피해자 보호에 소홀	70

제3장 김민규 · 서민수

판결 및 언론보도 사례를 통해 본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71

제1절 분석의 개요	73
제2절 행정소송 사례를 통해 본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74
1. 지방법원 판결 분석	74
2. 고등법원 판결 분석	87
3. 소결	91
제3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92

- 1. 사건 개요 92
- 2. 서면사과 조항에 대한 판단 93
- 3. 반대의견 94
- 4. 소결 95
- 제4절 언론보도 사례를 통한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95
 - 1. 분석방법 97
 - 2. 분석 대상 및 검색 조건 98
 - 3. 분석 결과와 함의 99
 - 4. 소결 123

제4장 김민규

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정책 127

- 제1절 영국의 현황 및 대응 129
 - 1. 영국의 학교폭력 현황 129
 - 2. 영국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132
 - 3. 가해학생 조치 134
 - 4. 소결 136
- 제2절 프랑스의 현황 및 대응 136
 - 1. 프랑스의 학교폭력 현황 136
 - 2. 프랑스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138
 - 3. 가해학생 조치 139
 - 4. 소결 141
- 제3절 독일의 현황 및 대응 142
 - 1. 독일의 학교폭력 현황 142
 - 2. 독일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146
 - 3. 가해학생 조치 148
 - 4. 소결 150
- 제4절 일본의 현황 및 대응 150
 - 1. 일본의 학교폭력 현황 150
 - 2. 일본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151

3. 가해학생 조치	152
4. 소결	154
제5절 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정책의 시사점	155

제5장 이승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157

제1절 서설	159
제2절 학교폭력 사안의 조기해결을 위한 방안	160
1. 사안 ‘인지 직후’ 갈등해결을 위한 개입	160
2. 즉시분리의 대상 유형화	163
제3절 학교폭력 조치결정의 전문성 강화	164
1.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164
2. 가해학생 세부조치기준 개선방안	166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변화	167
제4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유형별 개선방안	168
1. 서면사과 방식의 개선	168
2. 접촉금지조치의 개선방안	169
3.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방식의 개선방안	171
4. 특별교육의 실효성 평가 필요	172
5. 출석정지의 개선방안	173
6. 교육적 조치와 징계적 조치의 구분 필요	173
7. 조치 이행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174
제5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후의 개선방안	174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후관리의 필요성	174
2.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모니터링 강화방안	175
3. 가해학생 학부모 책무성 강화 방안	176
4.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	176

제6장 이승현

결론 179

참고문헌 185

Abstract 197



표 차례

[표 1-1]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내역	15
[표 2-1] 2004년 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21
[표 2-2] 2005년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2
[표 2-3] 2008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23
[표 2-4] 2019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3
[표 2-5] 2013년 「현장 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주요내용	25
[표 2-6] 2014년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5
[표 2-7] 2017년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의 주요내용	26
[표 2-8] 2018년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보완대책」의 주요내용	27
[표 2-9] 2019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28
[표 2-10] 2020년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8
[표 2-11]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29
[표 2-12]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과제	41
[표 2-13]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선도규정의 변화	45
[표 2-1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적용의 기본판단요소	46
[표 2-1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판정점수	46
[표 2-1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48
[표 2-17] 21대 국회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입법안	49
[표 2-18]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	51
[표 2-19] 학교폭력 심의 현황	52
[표 2-20]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현황	53
[표 2-21] 2020년 이전 학교폭력 행정심판현황	54
[표 2-22] 학교폭력 행정심판 현황	54
[표 2-23]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현황	55
[표 2-24]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 현황(2020~2022.8.31.)	55
[표 2-25] 학교폭력 가해학생 불복 현황	56
[표 2-26] 문제점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현황	57
[표 3-1] 빅카인즈 검색 조건	99
[표 3-2] 학교폭력 선도조치 기사 중 국민청원게시판 청원 현황	101

[표 3-3] 가·피해 학생의 성별, 학교급별 분포 현황	105
[표 3-4] 학교폭력 유형별 보도 건수	107
[표 3-5] 학교폭력예방법 중 선도조치 개정 과정	108
[표 3-6] 학교폭력 선도조치 유형별 보도 현황	110
[표 3-7] 학교폭력 선도조치 불복사례 보도 현황	111
[표 3-8] 학교폭력 선도조치 쟁점 관련 사실 보도 현황	119
[표 4-1] 2018-2019학년도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 사건의 성격	137
[표 4-2] 괴롭힘 확산정도 및 그룹 차이	143
[표 4-3] 괴롭힘 유형별 확산 정도 및 그룹 차이	144
[표 4-4] 사이버괴롭힘의 확산 정도 및 그룹 차이	145



그림 차례

[그림 2-1] 학교폭력 대응정책 변화 흐름	20
[그림 2-2] 기본계획의 체계도	21
[그림 2-3]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30
[그림 2-4]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32
[그림 2-5]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35
[그림 2-6]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38
[그림 2-7]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도	43
[그림 2-8]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	50
[그림 3-1] 관계도 분석 결과	100
[그림 3-2] 키워드 분석	102
[그림 3-3] 연관어 분석	104
[그림 4-1] 지난 12개월간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	130
[그림 4-2] 지난 12개월간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	131
[그림 4-3] 이지메 인지 건수 추이	151
[그림 5-1] 학교폭력 대응절차 흐름도 개선안	162
[그림 5-2] 사이버폭력과 오프라인폭력의 조치부과 차이	170

최근 연예인과 정치인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대책이 여론에 떠밀려 단순히 조치를 '강화'하는 형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해학생 조치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현재의 학교폭력 가해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대응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전반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조치결정 내용, 조치결정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분석하였다.

제1차에서 제4차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과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이 학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협업하여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주었고,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의 장기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학생부 기재와 결합되면서 입시제도 안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입시제도에 반영됨에 따라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은 조치의 경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학교폭력일지라도 반성과 화해보다는 변호사의 개입 등으로 인해 절차의 복잡성과 기나긴 사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하였다. 사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하였고, 소송 남발로 인해 학교의 대처를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를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사안을 제외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9가지 유형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내려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에 실시되는 즉시분리는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고, 조치 결정전 가해추정으로 인해 낙인의 가능성과 학습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자체해결제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대응절차이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므로, 조기에 갈등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9가지의 조치 유형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해학생의 선도”에 적합한 것인지를 평가해보았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기 낙인과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과 퇴학 등은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해학생을 학교라는 교육 장소에서 빼내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해학생의 선도에 적합하지 않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의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데만 그치고 있고, 가해학생 학부모의 지속적 관심과 피해학생의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인식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판례 검색 서비스인 ‘케이스노트 프로(CaseNote Pro)’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 중 ‘원고 승’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방법원 판결 사건’은 38건이었고, ‘고등법원 판결 사건’은 6건이었다. 판결의 입장을 정리하면,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가해학생 조치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성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에 이를 것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법원은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 있어서는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한 증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가해학생 조치의 부과는 학교의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의 규율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절차적인 요건

이 완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면사과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반대의견에서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내심의 윤리적 판단과 외부의 사회규범과의 괴리나 충돌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격과 양심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빅카인즈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하였다. 선도조치 쟁점의 핵심은 가·피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이유였다. 가해 학생의 경우 ‘가해 불인정’이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고, 피해 학생의 경우 ‘경미 조치’에 대해 불복사례가 많았다. 학교폭력 선도조치가 근본적으로는 피해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이자 가해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임에도 언론 기사에서는 여전히 심의위원회의 개최 지연과 심의 과정에서의 전문성 미비로 가·피해자측이 심의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다수의 보도 사례가 있었다. ‘경미 조치’의 사례가 많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선도조치가 전학이나 퇴학 같은 완전한 분리가 아닌 선도조치 이행 이후 가해학생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불복하는 이유가 다수이었다.

외국의 학교폭력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아일랜드의 최근 학교폭력 대응 법제를 보면, 학교폭력의 유형 및 심각성의 정도를 개별화하여 총 4단계로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1단계 대응은 피해가 경미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사전적 개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 발생시 「형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교육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기개입과 교육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각 주의 「교육법」에서 학교폭력 등이 문제된 학생의 지도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교육 조치’와 ‘징계조치’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선도·교육 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징계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학교폭력예방법과는 다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이지메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여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며, 학생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의 부모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와도 연계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대안은 1) 현재의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의 조사과정이 선도조치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인지를 평가한 대안, 2) 9가지 선도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구동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3) 조치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조치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들을 파악한 대안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갈등해결을 위한 조기개입과 선별적 제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반성을 유도하고 피해학생이 빠른 피해회복단계에 이르려면 신속하게 갈등해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즉시분리 이전에 ‘사안인지 직후’ 바로 외부의 갈등해결 전문가가 개입하여 즉시분리와 사안조사절차의 필요성과 이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상 분쟁조정은 금전배상액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 조정” 규정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조정 결과가 조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8항에 “분쟁조정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치결정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의 경감, 조치없음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셋째, 가해학생 조치의 세부적용기준에 있어서 지속성 판단기준 시점의 명시, 화해는 정도가 아닌 여부로 판별하도록 판정점수척도의 변경, 반성의 정도 판단을 위한 교사 등의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기본구성요소와 부가적 요소의 판별기준을 교육부 고시 기준에 명확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개별조치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서면사과는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서면이라는 형식에 의존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과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촉금지가 접근금지에 준할 정도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금지의 판단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금지로 인해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학습권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이나 장소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조치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도록 가이드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 사안의 경우 접촉금지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외국의 경우와 같이 휴대폰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폭력의 경우 접촉금지의 방식에 정보통신기기 제한을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 등의 경우 봉사기관을 공공·행정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봉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 유형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특별교육기관의 질 담보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최대 10일 등 기준을 두거나 가해학생의 상황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모두 징계적 조치이므로, 독일과 같이 교육적 조치와 징계적 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당 조치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해학생측이 명확히 알고 이행하도록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 이행에 따른 구제절차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도조건부 훈방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럼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조치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학교급 또는 관련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어 필요한 때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연계 등 지역 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부모의 책무성을 지속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피해자보호에 있어서도 보호를 이유로 절차단계에서 모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만들게 되면 동의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절차단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 1 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서론

이승현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은 2004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제17조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서면사과, 접촉, 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법적 처우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적 조치여서 '학교'라는 교육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처우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사회봉사의 경우 사회봉사 기관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¹⁾,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후 학교는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²⁾.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던 정모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결과 전학조치를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생활기록부 기재 삭제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가해학생이 대학을 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가해학생 처리에 대한 사회적 분노

1) 한겨레, “가해학생 사회봉사 보낼 데 없나요?..헛도는 학폭처분”, 2023년 3월 20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4347.html>, 2023.7.31. 최종검색).

2) 뉴시스, “학폭 엄벌 후 소송 시달리는 학교...현황도 모르는 교육부”, 2023년 3월 5일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3_0002213727&cID=10205&pID=10200, 2023.7.31. 최종검색).

1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가 일었고, 정모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했다.³⁾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이후 후속단계에서도 가해학생측이 소송전을 통해 절차 진행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학생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학생간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2023년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였고, 그 결과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 전반을 점검하여 4월 12일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⁴⁾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조사, 결정,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과정 전반을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실효적인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처분을 받은 이후 불복절차 관련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건수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총 1,405건이고, 이 중 813건(57.9%)이 인용되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될 수 없는 구조 하에 있다.⁵⁾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대책이 여론에 떠밀려 단순히 조치를 강화하는 형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해학생 조치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현재의 학교폭력 가해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대응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전반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
- 3) KBS 뉴스, “국회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의결”, 2023년 3월 21일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1920&ref=A>, 2023.7.31. 최종검색); 이데일리, “정순신 아들, 1년만에 전학..평균보다 11배소요 이례적”, 2023년 3월 22일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07846635545944&mediaCodeNo=257&OutLnkChk=Y>, 2023.7.31. 최종검색).
 - 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2023년 4월 12일자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66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3.7.31. 최종검색).
 - 5) MBN, “정순신아들 학폭 피해자 고통 막는 방법은...시간끌기 방지법 발의”, 2023년 3월 12일자 (<https://www.mbn.co.kr/news/society/4911109>, 2023.7.31. 최종검색).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조치결정 내용, 조치결정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하기 위한 전제요소로서 전담기구의 조사와 심의위원회 결정과정, 분쟁해결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 이후 변화되지 않은 9가지 조치가 약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학교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조치인지, 현재의 학교폭력 양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치인지, 9가지 조치 외에 부가조치들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선도 및 교육조치로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의 부가조치로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조치로 인해 가해학생측이 입시 등 반영 여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 및 행정절차 제기 등으로 인해 선도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과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 연구 내용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는 총 6개 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지, 어떤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지를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행 가해학생 조치의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책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정책이 기존 총 4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수립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에

1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방법에 규정된 선도조치 관련 규정과 관련 지침, 부가적인 조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최근 입법안의 경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가해학생 선도조치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고, 이에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문제점을 발굴하였다.

제3장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안처리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행정소송 등 소송이 제기된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처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심의위원회 자료는 비공개자료이므로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불복절차인 행정소송 판례를 통해 가해학생측이 문제삼는 절차상 쟁점을 찾아보았다. 소송이 제기된 판례만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쟁점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언론 보도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외국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해학생에 관한 선도정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외국의 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먼저 조치의 결정 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가해학생측이 조치 결정을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안처리 절차에서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절차과정 뿐만 아니라 조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후관리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3절 | 연구 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선도조치가 범조항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과 해당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예방 및 교정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단발성 조치나 1주일 이내의 단기조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치 전후의 변화를 통해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교육의 효과나 재발가능성을 평가하는 것도 교육의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이전의 연구결과⁶⁾를 보더라도 쉽지 않다.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력 재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예방 및 교정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을 ‘조치의 이행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현행 법제와 정책들을 분석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선도 및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조치를 이행하는데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는지, 판결과 언론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 연구 외에도 외국의 입법례와 정책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과정에서의 쟁점을 파악하고자 행정소송 판결례와 언론 보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회의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1.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와 관련된 정책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30여 년간 시행된 학교폭력 관련 정책과

6) 이승현/정재영/강태훈/김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면 이하.

1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법제 등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4차례 시행되었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관한 대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보았다. 가해학생 선도관련 기존의 선행연구자료 외에도 학교폭력 관련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 공식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 내용의 객관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2. 비교법적 연구

외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실태와 정책들을 살펴본 후 가해학생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책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접근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시사점을 함께 분석하였다.

3. 판례 및 언론 보도자료 분석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이 문제되는지, 가해학생측은 어떠한 점을 근거로 불복절차를 거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안제시에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1차적으로 결정되는 곳은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회’인데, 이 심의회 결정문은 비공개자료이므로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시도교육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비공개 결정을 하므로 그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대안으로 원고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례 및 판결례를 살펴봄으로써, 가해학생측은 어떠한 점을 쟁점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가해학생측이 제기한 판결례만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부가적으로 언론 보도로 문제화된 사건을 살펴봄으로서 가·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4.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함에 있어 법률규정과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가해학생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사, 관련단체 전문가, 연구자,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 [표 1-1]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내역

구분	회의일자	참석자	주요내용
1	23.4.27	교원단체 관계자 2인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한계 4.12 대책에 대한 교사의 의견
2	23.5.17	학교 교원 1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과정에서의 어려움 4.12 대책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인식
3	23.5.19	학교 교원 2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문제점
4	23.5.22	정책 담당자 2인 연구자 1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문제점 선도조치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5	23.5.24	연구교수 2인 NGO단체 관계자 1인 전담 변호사 1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한계 선도조치의 방향과 개선안 논의
6	23.8.17	학교 교원 1인 NGO단체 관계자 1인 정책 담당자 1인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분쟁조정, 세부조치기준, 개별조치대안 등)
7	23.8.23	학교 교원 2인 전담 변호사 1인 연구교수 2인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9가지 조치 관련 의견, 외부전문가 개입방안)

제 2 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관련 대응정책 및 법제 분석

이 승 현

제2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관련 대응정책 및 법제 분석

제1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정책의 변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한지 30여년이 지났고, 학교폭력 예방정책이 수립된 지 2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4단계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제1기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작된 시기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폭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제2기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나 중상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강력처벌을 예고하는 대책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제3기에서는 학교폭력의 성격상 관계에 의한 폭력이 많기 때문에 이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관계회복이나 화해중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그러나 최근 정모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녀에 대한 사안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가해학생 사안처리절차 중 불복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한 절차지연 행위,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입시와의 연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개입으로 학교의 피로도 등이 나타나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가해학생 선도 및 대응방식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학교폭력 대응정책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가해학생 선도를 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 [그림 2-1] 학교폭력 대응정책 변화 흐름



1.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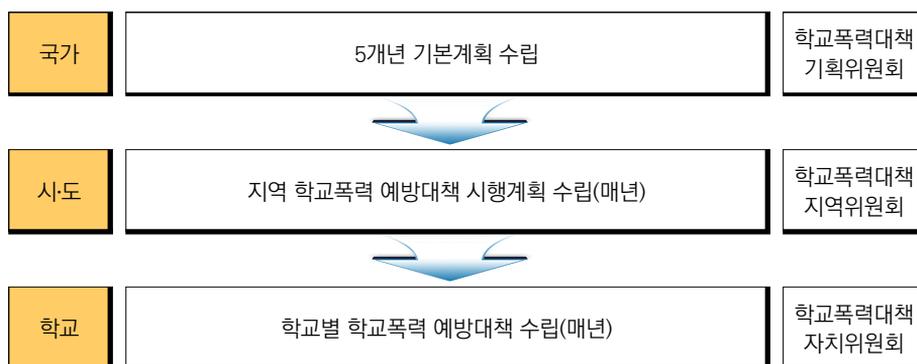
1995년 6월 8일 고등학교 1학년 김대현 군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언론이 학교폭력 문제를 크게 부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김대중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내각에 지시하여 국가 차원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1995년에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추진체계(학교: 학교폭력추방위원회, 교육청: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반, 교육부: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본부)를 구축하고, 행정자치부는 학교 주변업소에 관한 인·허가 절차 강화, 대검찰청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부처별 대책이 마련되었다.

7) 라이프, "학교폭력에 자살한 아들 대기업 임원 관둔 아버지 사연", 2015년 3월 31일자 (<https://www.wikitree.co.kr/articles/213385>, 2023.7.31. 최종검색).

일진회 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보도되었고, 이후 부산 여중생 사망사건, 시흥 여고생 자살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폭력관련 정부대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2003년 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생간’의 폭력으로 정의하고, 추진지원체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5년 단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하였다.

» [그림 2-2] 기본계획의 체계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9, p.2

» [표 2-1] 2004년 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력,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제2조 제1호)
추진체계의 법적근거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제7조, 제8조)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10조, 제11조)
기본계획 수립	5년 단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제6조)
전문인프라 구축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 배치 근거 규정 마련(제12조)
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4조), 가해학생 선도조치(제15조)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제16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제13조)

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기관이 되어 2005년 2월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년~2009년)」을 수립하였다.

▶▶▶ **【표 2-2】** 2005년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예방·근절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활성화	범정부 차원 학교폭력 대책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찰주관 학교폭력대책반 운영내실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 활성화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전문능력 제고	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연수 강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피해학생 치료·재활 방안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중시 풍토 조성 유해환경 집중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학교내외 학생보호활동 강화 대안교육 내실화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5.

학교 내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성폭력을 추가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08년 3월 14일 학교폭력 예방법이 전면 개정되었다(법률 제8887호). 동법에서는 피해자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조항이 신설되었고,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강화되었다.

▶▶▶ [표 2-3] 2008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폭력 포함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 제1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참여(제8조 제3항).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4조 제3항)
피해학생 보호 강화	피해학생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 행사(제16조 제5항)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제17조 제8항)

제1차 기본계획에서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을 우려한 자치위원회의 미온적 대처, 관련 교사의 관심과 참여 부족, 상담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⁸⁾, 2009년 2월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 [표 2-4] 2019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학교 보호인력 확대, 학교내 CCTV 설치 확대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긴급전화 연계망 구축 지역사회 협력·연계망 구축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전교원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따돌림, 괴롭힘 등 학교 폭력 추세에 맞춘 선제적 대응 가정의 예방교육 강화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자치위원회 심의 활성화 Wee클래스 등 학교상담망 확충 자치위원회 심의·조정 역량 강화 학교폭력 정보공시 상세화
가해자선도·피해자 치유시스템 질 제고	Wee센터 중개기능강화와 CYS-Net을 통한 연계체계 구축 고위험 가해학생 통합적 위기관리 체계 마련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선도·치유기관 확충과 특성화

8) 이승현/이천현/안성훈/박성훈/이덕난/김영식, 『현장중심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p.49

2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규칙과 질서준중 학교시스템 구축(상벌점제)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강화 언어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선플운동) 또래상담 기능강화(또래상담자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안전망 구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등 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 법사회적 폭력근절 문화조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9.

2.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대응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과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20일 대구 중학교 2학년 권모군이 같은 반 학우들의 상습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⁹⁾ 이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보복 폭행이나 자살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었고 이에 정부차원의 엄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12년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에서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4가지 직접 대책(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3가지 근본대책(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 책무성 강화, 교육전반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을 마련하였다. 인성교육 중심의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학교현장에서 사안처리에 있어서 무력감을 가지는 현실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2·6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산고등학교 학생 자살사건¹⁰⁾ 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학교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집중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2013년 7월 23일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되었다.

9) YTN, “대구에서 친구들 괴롭힘에 중학생 투신”, 2011년 12월 22일자 (https://www.ytn.co.kr/_1n/0115_201112221509487259, 2023.7.31. 최종검색).

10) 연합뉴스, “경산서 고교생 투신자살...‘학교폭력’ 유서(종합 2보)”, 2013년 3월 12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30312181900053>, 2023.7.31. 최종검색).

» [표 2-5] 2013년 「현장 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주요내용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학교환경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 강화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대응 강화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성폭력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 신청절차 간소화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센터 운영 가해학생 전학 및 퇴학조치시 중장기 대안교육 제공 생활기록부 기재 후 2년간 유예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교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은폐 축소 및 부적절 대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및 전사회적 대응 강화	학교폭력 신고시스템(117긴급전화) 개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배치 학교폭력대책 추진체계 재정비

출처: 교육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 2013.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크고 작은 학교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바 학교폭력에 대한 전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14년 12월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조하면서,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면서도 사안처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하였다.

» [표 2-6] 2014년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도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학생보호인력 확충 학교밖 안전관리 강화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역량 강화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체계 강화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2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전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출처: 관계부처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14.

2017년 3월 29일 인천지역에서 학교밖 청소년 김모양이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살인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¹¹⁾, 2017년 9월 1일 부산지역 여자중학교 학생 4명이 1명을 집단폭행한 이후 페이스북에 상해사진과 내용을 게시하여 충격을 주었는데,¹²⁾ 이들이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소년법」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2월 22일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이 발표되었다.

» [표 2-7] 2017년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의 주요내용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	단위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안학교 위탁시설 학교전담경찰관 지정 학교전담경찰관 업무정례화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 개선
소년사법체계 기능 개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 확충 보호관찰 청소년 전문 관리감독체계 구축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확충	아웃리치, 청소년동반자 확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교육적 선도
범정부 협업체계 개선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CYS-Net 운영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개편
부모의 자녀지도 역량 강화	부모교육 확산 유도 보호처분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교육 강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2017.

11) 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용의자는 17살 이웃 여성”, 2017년 3월 30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70330002654065>, 2023.7.31. 최종검색).

12) 중앙일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2018년 2월 2일자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56>, 2023.7.31. 최종검색).

범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에도 2018년 3월 13일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과 2018년 6월 26일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청소년 비행예방과 사후대응을 강화하는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보완대책」이 마련되었다.

▶▶▶ [표 2-8] 2018년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보완대책」의 주요내용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중대한 청소년폭력 엄정대처, 선도기능 강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 집중관리 소년범 관리환경 개선을 통한 재범 예방
청소년 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학생을 위한 전국단위 전담지원기관 확충 성폭력·가정폭력 피해학생 전학관련 지침 마련 마을변호사와 사안처리 연계 강화 병원형·가정형 Wee센터 체제 구축
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보호관찰소·경찰간 정보공유로 선도 및 사후관리 내실화 신속한 가해자 정보공유로 초기대응 강화 자살위험상황의 신속한 개입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교육적 관계회복 중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학교폭력 피해자 특별교육 내실화 '학생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 강화 학교폭력 실태조사 체계 정비
청소년 폭력예방 및 문화개선 추진	인성교육 기반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체험형 청소년 폭력예방교육 강화 사이버 2차 피해 대응 강화
민관 파트너십 구축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출처: 관계부처 합동,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보완대책, 2018.

3. 정책 전환기

학교폭력 관련 정책이 계속 강경대응 기조로 흘러가다가 학교폭력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처리절차로 인해,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증가, 학교업무 부담 증가, 경미한 폭력사안도 심의대상이 되어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절차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 8월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

28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 [표 2-9] 2019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학교 내 자치위원회 폐지	학교폭력 사안 심의를 위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제12조 제1항), 10명 이상 50원 이내 위원 구성, 전체 위원1/3 이상을 해당지역 학교 내 학부모로 위촉(제13조 제1항)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자체해결제 실시	피해자측이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고, 위원회에 보고(제13조의2)
피해·가해학생 행정심판 청구절차 일원화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제17조의2)

학교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대책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가이드북 개정 및 지원이 강화되었다.

▶▶▶ [표 2-10] 2020년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학교공동체 역량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학생참여·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학교폭력 유형·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학교폭력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체계 강화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안팎 협력체계 구축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제고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0.

4. 강력대응으로의 회귀기

학교 내에서 관계적 회복 방식으로 학교폭력 대응방향이 변화해가는 듯했으나,

2023년 국가수사본부장 정모 변호사의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이 불거지면서¹³⁾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2023년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학교폭력 대응방향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나 대입 수시·정시 반영 등의 대책은 가해학생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11]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관리 강화 학교폭력 2차 가해 원천 차단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 수시·정시 반영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초기보호체계 강화 가해학생 조치 불복시 피해학생 보호제도 마련 다중 안전망을 통한 피해학생 맞춤 지원
교권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학교의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교원 권한 강화 및 책무성 제고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학교구성원의 사회·정서 교육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육 지원

출처: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23.

제2절 |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정책은 시기별 법률이나 정책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5개년마다 수립되는 추진과제가 무엇이나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

13) 월간조선,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사의표현”, 2023년 2월 25일자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7152&Newsnumb=20230217152, 2023.7.31. 최종검색).

도정책이 주기별로 어떠한 변화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차수별 기본 계획에서 가해학생 선도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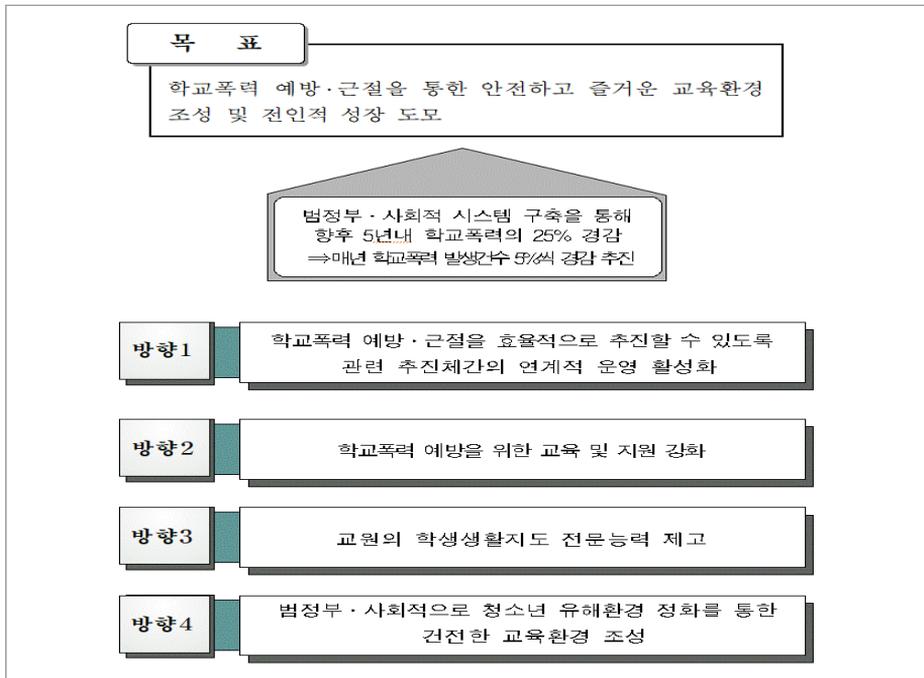
1. 제1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가. 선도정책의 방향

제1차 기본계획은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의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었고,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대책 마련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제1차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개입'에 중점을 두었다. 대표적인 것이 비행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선도교육프로그램 마련과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개입방안 모색이라 할 수 있다.

» [그림 2-3]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5, p.15.

나. 선도정책의 주요내용

1) 비행·일탈·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실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외에도 비행학생, 학교생활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개발한 선도프로그램을 학교나 단체에 지원하였다.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검찰은 '기소유예제도'를 확대 실시하였고, 교육조건부 선도유예제도의 확대 실시를 검토하였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능성, 학부모의 선도 노력정도,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한 다양한 선도처분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가해학생 부모가 자녀지도와 피해자의 회복 노력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모색하였다.

3) 청소년상담 및 선도시설 설치 확대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드롭인 센터 등 청소년의 선도와 상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였다.

다. 선도정책의 한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비행예방 센터의 확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기소유예제도 마련,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멘토링제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이 다양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단위학교별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나 단순 상담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와 전문기관과 유기적 연계가 되지 않아 선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¹⁴⁾ 가해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역시 단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14) 관계부처합동,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9, p.9.

한계를 보였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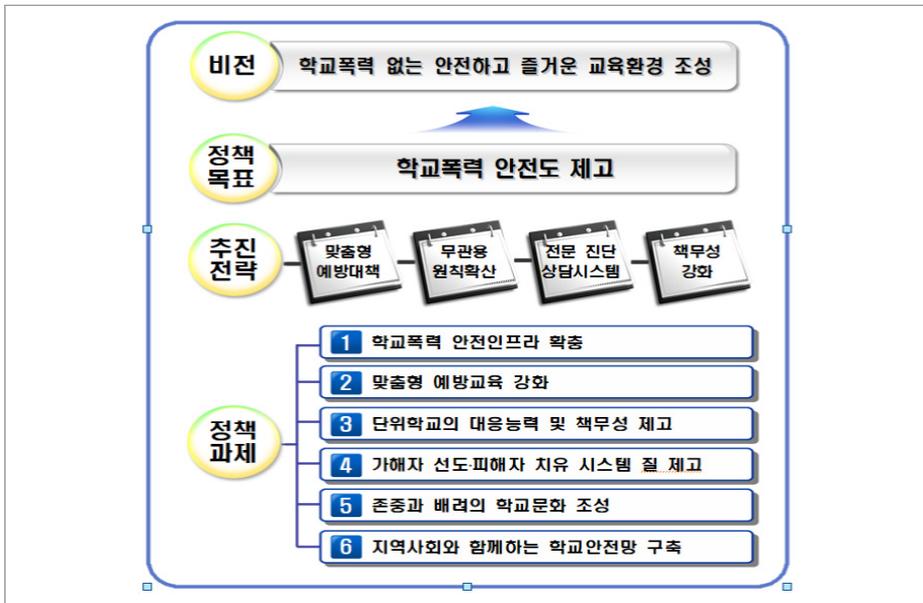
2. 제2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가. 선도정책의 기본방향

제2차 기본계획으로 인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체계가 갖추어지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학교폭력의 감소에 기여하였다. Wee프로젝트 등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지원에 있어 전문상담망이 확충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들도 나타났다.

가해학생 선도에 있어서는 선도프로그램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선도를 위해 전문진단·상담시스템 구축, 고위험 가해학생 통합적 위기관리, 가해학생 선도기관 확충과 특성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 [그림 2-4]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9, p.16.

15) 관계부처합동,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9, pp.9-10.

나. 선도정책의 주요내용

1) Wee센터와 CYS-Net을 통한 조기진단·상담 및 연계체계 마련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의뢰받은 가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위해 Wee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자체 상담, 지원, 보호, 외부연계 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고위험 가해학생에 대한 통합적 위기관리

학교폭력 가해정도가 심하거나 재비행의 경우 Wee센터에서 전문적인 원인 진단과 상담을 의무화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보호관찰소 수강명령을 받던 학생에게 실시하던 인지행동 치료교육을 일반 성폭력 가해학생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고위험군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Wee센터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추수지도를 하며,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고위험군에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발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고위험군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과 상담을 확대하였고, 지역교육청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이 연계하여 가해학생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위험군으로 장기적인 치유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는 기숙형 장기위탁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Wee스쿨을 확대 설치하였다.

3) 소년범죄자에 대한 선도체계 강화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조사 초기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인성검사 및 재비행 위험성 분석 후에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대검찰청에서는 소년범 사건처리 제도를 개선하고, 소년사건에 있어 검사의 결정전 조사처리제도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와 수사기관, 지역상담 기관과 연계한 ‘사랑의 교실’ 운영이 보다 내실화되었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이나 가족상담 프로그램 이수도 보다 강화되었다.

3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활성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를 하도록 하여, '경미한 폭력'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학교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마련하였다.

5)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강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조치에 대한 효과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9월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매뉴얼」을 보급하였고, 학교급에 따른 교내봉사를 다양화하고, 지역 사회 청소년단체와 연계하여 사회봉사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선도조치 규정을 개정하였다. 위원회 조치결과 전학조치가 남발되는 문제와 함께, 가해학생측이 전학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조치에 관해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선도정책의 한계

학교폭력이 국정과제에서 4대악으로 규정되어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시스템의 질을 제고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이 범죄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고, 학교폭력 신고 후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교가 화해 중심의 분쟁조정보다는 사안조사를 하는데 집중하다보니, 조치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여전했다. 학교 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절차 진행과정이나 전문성·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¹⁶⁾

16) 관계부처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4, p.12.

3. 제3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가. 선도정책의 방향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체계가 마련되었지만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현장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이에 2014년에 마련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공정한 사안처리와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과 선도에 집중하였다.

» [그림 2-5]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비전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목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학교 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 중점 관리 ◆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5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6 학생보호인력 확충
	7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8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9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10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12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1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5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14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15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6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출처: 관계부처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요약, 2014, p.3.

3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 내에 교원, 학부모,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공정성과 전문성의 문제제기는 지속되었고, 사안처리가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과에 영향을 미치자 재심소송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은 감소하였으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과 선도정책에 집중해서 가해유형이나 수준에 맞는 대응정책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나. 선도정책의 주요내용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체계 구축

‘Wee클래스’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1차 상담과 특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학교장 긴급조치 요건을 확대하였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가해학생 특별교육 거점형 Wee센터’를 지정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가해학생 보호자 동반 가족단위 특별교육을 확대하고,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학부모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2) 가해 유형·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학교 내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 인터넷 게임 중독 등에 대한 전문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사이버폭력 가해자를 위한 지역별 거점Wee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었다.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해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을 운영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시적 맞춤 치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사안 중 소년사건화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초기 단계 소년사건 처리시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실시하고, 대안교육과 법사랑위원 선도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조치 대상자 중심 대안교육도 확대 실시되고, 학교폭력 관련 소년사건의 경우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연계 집중교육도 실시되었다. 경찰 수사결과가 학교에 통보되도록 하여 학

교와 경찰간 협조를 보다 공고히 하도록 하였다.

3)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인, 의료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내부교원의 비율을 제한하고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조정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단위학교별로 자치위원회 개최 전 사전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인의 진술 기회를 확대하여 결정의 수용성을 제고하였으며, 재심제도를 개편하여 조치결정 공유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4) 가-피해학생의 화해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소송전으로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복적 관점을 적용한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방안이 도입되었다. 자치위원회 결정으로 교우관계 회복기간이 4주 내외로 부여되면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자치위원회 개최시 가해학생 조치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다. 선도정책의 한계

제3차 기본계획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대응에서 한걸음 물러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등을 시행한 것이 큰 성과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가해유형이나 가해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추구하려고 했던 노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

가해학생 맞춤형 선도교육과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고, 정서적 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의 지속성·심각성은 심화되었다.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언론보도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요구는 더 강해졌다.

4. 제4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가. 선도정책의 방향

언이어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의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방지에 맞춘 대응노력이 가시화되었다. 반성을 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에 집중하여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에 있어 강화된 정책들이 다수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봉사과 특별교육 등 가해학생 조치가 교육과 선도를 통해 재발방지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이행 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마련에 주력하였다.

» [그림 2-6]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5대 정책영역		14개 추진과제	
1	학교공동체 역량 계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3	학교폭력 유형 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4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2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5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6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계고
		7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3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8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9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
4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10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11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
5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12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13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4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계고

출처: 관계부처합동,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요약, 2019, p.11.

나. 선도정책의 주요내용

1) 가해학생 조치별 실효성 제고

가해학생 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1~3호조치 학생부 기재유보 정책 조치에 따라 미이행된 경우 학생부 기재를 하도록 하고,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일수가 부족하거나 특별교육 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추가조치를 부과하여 가해학생의 교육과 선도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가해학생 조치 중 사회봉사 조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교육청별 지역사회복지 시설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고, 출석정지시 특별교육을 병과하여 선도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였다. 사이버폭력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나 SNS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2)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이전 기본계획에서도 계속 논의되었던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학교급별·가해유형별 맞춤형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에도 노력을 하였다.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시도교육청이 특별교육 위탁기관을 내실 있게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기관평가도 추진하였다. 청소년 경찰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용하여 특별교육기관을 다양화하기 위한 시도도 하였다.

3) 가해학생 사후관리 강화

제4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후관리 강화 노력이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만 중점을 두었다면, 4차 기본계획에서는 조치 이후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이행완료 된 후에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교사, Wee센터 상담의뢰 등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 추고자 노력하였다. 학교폭력의 재발 위험이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전담경찰관

4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을 중심으로 한 집중 사후관리도 추진되었다. 경찰선도프로그램 이수학생에 대하여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하여 맞춤형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가해학생 중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후속 상담 등 사후관리를 이어나갔다.

4)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

소년법이 적용될만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는 대응 전문인력을 활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이 마련되었다.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제도’가 도입되었고, 학교폭력 전문분야 수사관 인증제도도 활성화되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우범소년 송치제도와 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었다. 보호처분 이후에 교육·선도를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체제를 정비하는 노력도 있었다.

5) 보호자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가족동반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특별교육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보호자도 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특별교육이나 주말·야간을 이용한 교육 이수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선도정책의 한계

제4차 기본계획은 과거의 가해학생 선도정책보다는 보다 고도화되고 맞춤형 선도 형태로 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부분이라든지,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제시한 부분 등은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방향이 좀더 세밀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자극적인 학교폭력 사안들의 언론보도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이 크게 보도되고 학교폭력의 해결 방식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소년법 연령 하향 등의 방향으로 선회한 것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4차 기본계획이 가해학생 처벌에만 집중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관계회복과 갈등조정이라는 목표로 전환해가다 갑자기 엄정대응이라는 기조로 다시 회귀해가는 것은 아닌지, 학교폭력예방법이 목표하고 있는 가해학생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5. 소결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지난 20여년간 수립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관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큰 진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이 학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협업하여 변화를 모색해야 할 과제임을 그동안의 정책이 보여주었다.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형태보다는 갈등해결을 통해 정서적·사이버폭력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 [표 2-12]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과제

기본계획	핵심	가해학생 선도관련 주요과제
1차	가해학생 선도체계 마련	비행·일탈·학교부적응 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청소년 상담·선도시설 설치 확대
2차	고위험군 관리체계 강화	고위험 가해학생 전문진단·상담 의무화 고위험군 학생 관리체계 강화 고위험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정착 소년법 범죄자에 대한 선도체계 강화 대안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특성화
3차	맞춤형 선도교육	단위학교 중심 가해학생 관리체계 강화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 지원 확대 가해유형·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체계 강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4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기본계획	핵심	가해학생 선도관련 주요과제
4차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	학교폭력 발생시 조기개입 체계 마련 가해학생 교육·선도조치 내실화 가해학생 특별프로그램 내실화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사후관리 강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소년사건 수준의 폭력 대응 강화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기반 마련

정부의 장기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학생부 기재와 결합되면서 입시제도 안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입시제도에 반영됨에 따라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은 조치의 경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학교폭력일지라도 반성과 화해보다는 변호사의 개입 등으로 인해 절차의 복잡성과 기나긴 사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하였다. 사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하였고, 소송 남발로 인해 학교의 대처를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제3절 |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관련 규정 분석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고, 이러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보고 있다(제2조 제1호, 제3호).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반드시 학생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의 규율대상이 되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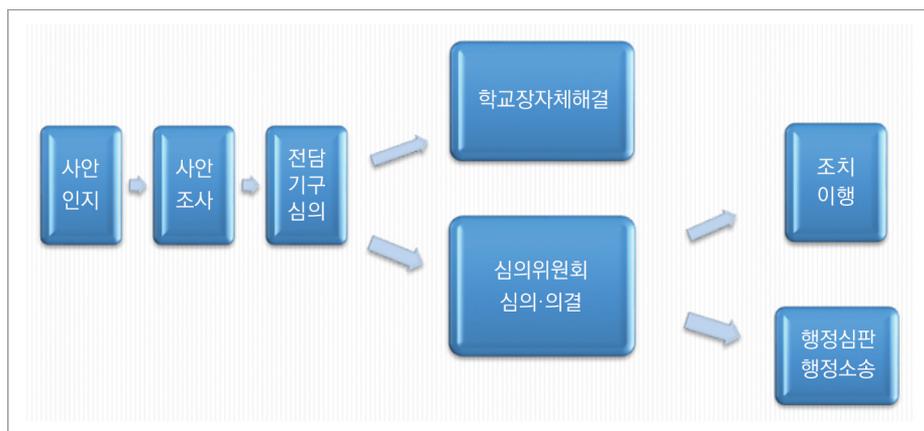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서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통해 학생

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1. 가해학생 선도조치 관련규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를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을 제외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통해 다음과 같은 9가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가 내려진다(제17조 제1항). 다만, 퇴학처분의 경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그림 2-7]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각각의 조치를 동시에 부가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해야 한다(제17조 제6항). 서면사과를 제외하고, 8가지 유형의 선도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해당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7조 제11호).

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그러나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전에도 ① 서면사과, ②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특별교육 이수, ⑤ 출석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특별교육 이수와 출석정지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7조 제4항).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해야 한다(제17조 제7항).

학교폭력예방방법상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관한 제17조의 규정은 그동안 두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다. 2008년 개정법에서는 출석정지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한정하였고,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2012년 개정법에서는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행위 외의 보복행위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기존에 있는 9가지 조치를 경중 순서에 따라 재배열했다.

▶▶▶ [표 2-13]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선도규정의 변화

2004년 제정법	2008년 개정법	2012년 개정법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 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보호자 특별교육 명시(17조 제 8항)	경한 순서에서 중한 순서로 변경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17조에서도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조치의 유형들을 보면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가해학생에게 선도·교육보다는 사법기관에서 행하는 징계와 유사한 조치나 학교에서 이탈을 강요하는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폭력예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2. 가해학생 세부조치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9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이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당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교육부가 기준을 고시하지 않음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후속조치로 2016년 9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적용은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④ 가해측과 피해측의 화해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상세한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4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세부기준 고시 「별표 1」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정도는 기본 판단요소로,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부가적인 판단요소로 보아 판단하고 있다.

▶▶▶ [표 2-1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적용의 기본판단요소

		기본 판단 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출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참고

기본 판단 요소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한 이후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의 보호 여부를 고려하여 부가적 판단요소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심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조치를 가중·감경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부가요소도 두고 있다. 조치를 가중할지 또는 감경할지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

▶▶▶ [표 2-1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판정점수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 육 환 경 변 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출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참고

3. 부수적 조치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도입 당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이중 처벌과 다름없다는 주장에서부터 논란이 많았고,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당시 현재는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졸업까지 학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지침이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하였다.¹⁷⁾

이후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조치는 학생의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꾸준히 논란이 되었고, 2014년 초중고 모두 학생부 기재보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였고 경미한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졸업 후 보존 조치에 대하여도 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 전에 전담기구 심의과정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정모 변호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가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해학생의 반성과 피해회복과 치유 여부와 무관하게 삭제되고 있음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되었다.¹⁸⁾ 이에 2023년 4월 발표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의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을 졸업 후 4년으로 확대하고, 강제전학기록은 예외 없이 4년동안 보존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롭게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조치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2026년부터 대입정시를 비롯하여 모든 입학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7) 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2헌마630 결정.

18) 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9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p.15.

▶▶▶ [표 2-1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가해학생 조치	현행	개선안
1.2.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	
6.7호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
8호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9호	영구보존 (삭제 불가)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2023년 4월 12일자.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관련 입법안 분석

2020년 12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로 21대 국회에 제출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보았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발의된 학교폭력관련 법안 총 47개 가운데 가해학생 조치 관련 법률개정안은 21건이었다.

법안 21건 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유형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상 접촉 등의 행위도 금지하자는 입법안이 9건에 이르렀다. 또한, 가해학생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한 경우나 피해학생 이외의 학생에게 보복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가중조치를 하자는 법안도 눈에 띄었다.

정모변호사 자녀 사건이 밝혀진 이후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신청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두자는 입법안과 집행정지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폭력 대응과정에서 교원이나 학교장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해지자,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자는 입법안도 제시되었다.

▶▶▶ [표 2-17] 21대 국회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입법안

의안명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2107907	강민정 의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가중
2108702	임오경 의원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행위 포함
2108729	배준영 의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행위 포함, 피해학생의 지속적 폭력 피해시 대책위를 거쳐 교육장이 전학조치
2109218	양정숙 의원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 외 다른 학생에게 폭력시에도 병과·가중
2109318	류호정 의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행위 포함 지속적, 고의적 행위에 대해 조치의 병과·가중
2109329	박정 의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행위 포함 지속적 학교폭력에 전학, 퇴학 등 조치 가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조치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2109403	권인숙 의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행위 포함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대해 조치의 병과·가중
2112319	정청래 의원	접촉·협박·보복행위 구체화, 사이버공간 행위도 금지
2113203	이탄희 의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행위 포함
2113394	서영석 의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행위 포함 특별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포함 가해학생 보호자 노력의무 추가
2114270	임호선 의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삭제 퇴학처분 외 가해학생 조치시 특별교육 이수 필수적 부가
2114917	김철민 의원	사회봉사 이상 조치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조치삭제 불가
2120374	서동용 의원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 명시 사이버괴롭힘 등 금전적 손실 발생시 피해금액 환불조치 추가
2120902	백혜련 의원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행정심판에 대한 집행정지 심리시 피해학생 의견 듣도록 함
2121222	민형배 의원	교육장 및 학교장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이행 책임 강화
2121289	도종환 의원	긴급 선도시 학급교체 조치 추가
2121349	한준호 의원	전학·퇴학시 학교봉사 함께 부가 불가 가해학생조치의 쟁송결과 가해학생,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
2121585	도종환 의원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피해학생측에 문서로 통보
2121975	정경희 의원	긴급 선도시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의무화 학교장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위반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조치 가해학생측 행정심판 제기시 피해학생측에 통지 학교폭력 대응과정 분쟁발생시 학교장·교원 고의·중대과실 없으면 면책
2121988	이태규 의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행위 포함 접촉·협박·보복행위에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중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 결정시 피해학생 의견 청취, 집행정지 인용시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2121997	정경희 의원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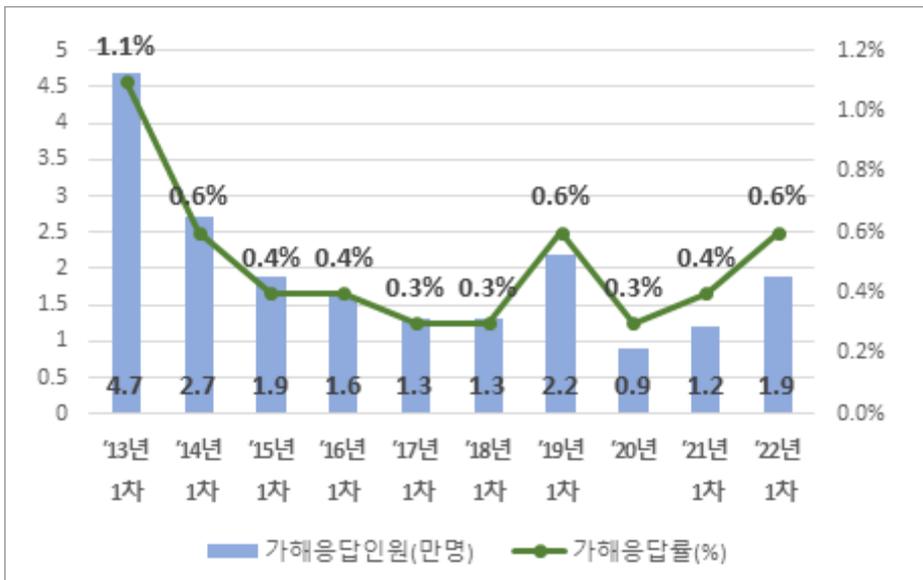
제4절 |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현황

1.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비율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실태조사 이후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가해학생수가 잠깐 상승하긴 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잠시 감소세를 이어갔고, 최근 관계적·정서적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 [그림 2-8]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



출처: 교육부,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2년 9월 5일자.

2. 학교폭력사안 자체해결제 현황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¹⁹⁾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6년 23,673건에서 2018년 32,632건, 2019년 31,130건으로 증가하였다가, 코로나19 발생과 자치

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2020년 8,357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11,815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22년 1학기에만 9,796건에 이르고 있다.

2019년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피해학생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①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학교 내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사건이 다루어지던 것이 2019년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시행으로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경미사안에 대한 조기종결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첫해 전체 학교폭력 전체사건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로 해결된 비율이 27.5%에서 2020년 67.7%, 2021년 64.8%, 2022년 61.0%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의 거부로 인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표 2-18]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

연도	전체	심의위원회 심의건수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	자체해결제 비율
2019	42,706	31,130	11,576	27.5%
2020	25,903	8,357	17,546	67.7%
2021	44,444	15,653	28,791	64.8%
2022	63,041	23,602	38,439	61.0%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2023년 4월 12일자.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현황

2020년 이전에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심의되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19) 강득구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2021년 10월 1일자(<https://blog.naver.com/dulipapa/222523245602>, 2023.5.30. 최종검색).

5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시도교육청 산하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심의와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변경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건이 다소 감소하는 듯하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2-19] 학교폭력 심의 현황

심의기관	연도	심의건수	피해학생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	2013	17,749	25,704	29,325
	2014	19,521	26,073	28,949
	2015	19,968	25,811	28,393
	2016	23,673	29,041	32,947
	2017	31,240	39,170	44,346
	2018	32,632	39,478	40,999
	2019	31,130	40,411	41,183
	2020	8,357	13,425	16,129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	2021	15,653	20,682	26,399
	2022년 1학기	9,796	14,037	17,407

출처: 교육부, 내부통계자료, 202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개의 선도조치가 동시에 부과되기도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중 '서면사과'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접촉·보복행위 등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순이다. 과거에는 특별교육의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수치가 급감하고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조치의 비율이 줄어들어 10%대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학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살펴 보면, 가해학생 선도조치 전체 32,948건 중 접촉·보복행위 금지가 23.3%(7,689건)로 가장 많았고, 서면사과가 18.8%(6,182건), 학교봉사가 14.5%(4,777건) 등이었고, 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7.1%이다.

▶▶ [표 2-20]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현황

연도	심의 건수	가해학생 선도조치 건수								
		서면 사과	접촉 보복 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2016	23,673	14,370	9,218	7,590	2,865	9,640	3,591	751	1,745	163
2017	31,240	18,238	12,193	9,900	3,815	11,663	4,729	977	1,951	141
2018	32,632	20,364	13,644	10,235	3,734	11,780	5,213	1,038	2,072	153
2019	31,130	20,938	14,996	9,648	3,494	13,111	5,300	1,101	2,127	168
2020	8,357	6,688	7,303	4,426	1,078	1,533	2,107	277	667	46
2021	11,815	11,561	13,032	8,090	2,476	1,791	2,976	743	999	53
2022 1학기	9,796	6,182	7,689	4,777	1,566	605	1,464	413	438	18

출처: 강득구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2021.10.1.20; 이덕남/유지연,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지연의 쟁점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9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5.10.

4. 학교폭력 가해학생 불복 현황

가. 행정심판 현황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측 또는 가해학생측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이전에는 재심제도가 있었으나 피해학생측과 가해학생측이 다른 절차를 거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어 처리되고 있다.

20) 강득구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2021년 10월 1일자 (<https://blog.naver.com/dulipapa/222523245602>, 2023.5.30. 최종검색).

5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 [표 2-21] 2020년 이전 학교폭력 행정심판현황

연도	학생 구분	재심		행정심판		합계		
		처리건수	인용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처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2016	피해학생	799	233	1	0	800	233	29.1%
	가해학생	500	223	302	106	802	329	41.0%
2017	피해학생	1,186	401	7	0	1,193	401	33.6%
	가해학생	682	237	518	169	1,200	406	33.8%
2018	피해학생	1,422	406	1	1	1,423	407	28.6%
	가해학생	717	260	660	197	1,377	457	33.2%
2019	피해학생	1,486	403	1	0	1,487	403	27.1%
	가해학생	781	245	828	217	1,609	462	28.7%

출처: 강득구의원실, “[보도자료]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이상이 기각”, 2021년 10월 6일자²¹⁾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하여 가해학생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 건수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의 경우 2020년 480건에서 2022년 889건으로 증가하였다.

▶▶ [표 2-22] 학교폭력 행정심판 현황

불복 형태	행정심판		
연도	2020	2021	2022
건수	480	751	889
최종 인용률	17.7	14.5	11.7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2023.4.12.

나. 행정소송 현황

학교폭력이 조치 그 자체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21) 강득구의원실, “[보도자료]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이상이 기각”, 2021년 10월 6일자 (<https://blog.naver.com/dulipapa/222528489290>, 2023.5.30. 최종 검색).

불만과 민감도가 높아져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1건에서 2022년 26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2-23]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현황

불복 형태	행정소송		
	2020	2021	2022
연도	2020	2021	2022
건수	111	211	265
최종 인용률	11.7	12.8	4.9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2023.4.12.

최근 3년간 가해학생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 이 중 57건(17.5%)만이 승소하였다. 그런데도 가해학생측이 행정소송을 꾸준히 제기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치의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다.

▶▶ [표 2-24]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 현황(2020~2022.8.31.)

구분	행정소송 건수	승소 건수	승소율
전국	325	57	17.5%

출처: 강득구의원실, “[보도자료] 강득구의원,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17.5%에 그쳐”, 2023년 2월 28일자²²⁾

다. 집행정지 신청 현황

현재 학교폭력 불복절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이다. 실제로 본안심판이나 소송의 인용률은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해학생측의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심판이나 소송에서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해학생에

22) 강득구의원실, “[보도자료] 강득구의원,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17.5%에 그쳐”, 2023년 2월 28일자 (<https://blog.naver.com/dulipapa/223031080124>, 2023.5.30. 최종검색).

대한 조치의 이행이 정지되어 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에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 [표 2-25] 학교폭력 가해학생 불복 현황

불복 형태	행정심판			행정소송		
	연도	2020	2021	2022	2020	2021
건수	480	751	889	111	211	265
집행정지 인용률	59.3	49.9	52.4	67.1	61.6	60.0
최종 인용률	17.7	14.5	11.7	11.7	12.8	4.9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2023.4.12., p.11

이에 2023년 4월 12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 통지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하고,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²³⁾ 가해학생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분리요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제5절 |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문제점

1. 서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20여분의 의견과 기존 학계 내용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전문가그룹은 교육부, 지역교육청에서 정책을 담당

2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2023년 4월 12일자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3197&srSearchVal=%ED%95%99%EA%B5%90%ED%8F%AD%EB%A0%A5&srSearchKey=article_title&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3.5.30. 최종검색). p.5.

하고 있는 전문가, 초중고 교사, 교원단체 및 학교폭력 지원 NGO단체 전문가, 학교폭력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 및 연구자이다. 학교폭력 조치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실제로 사안처리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 [표 2-26] 문제점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현황

구분	자문위원 활동영역	심의위원회 활동경험
1	교원단체	X
2	교원단체	X
3	교사	O
4	정책 담당자	O
5	정책 담당자	X
6	연구자	X
7	교수	X
8	교수	O
9	NGO단체	O
10	변호사	O
11	교사	X
12	교사	X
13	변호사	O
14	NGO단체	O
15	교사	O
16	정책 담당자	O
17	교수	X
18	교수	O
19	교사	O
20	교사	O

2. 조기 해결의 가능성 차단

가. 자체해결제의 한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은 많지만 당사자 간에 학교폭력 사실과 범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교장 자체 종결보다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갈등해결 부족으로 인한 관계적 학교폭력이 증가(자문위원 4의 의견)하고 있어, 학교측 업무담당자와 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입장에

서 한정된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수를 처리함으로 인해 업무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심의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으나 행정적 처리절차와 조치 이행 부분은 여전히 학교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민원이나 불복으로 인한 문제에서 학교가 자유롭지 못하다(자문위원 4의 의견). 자체해결제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측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양당사자간 갈등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이다(자문위원 13의 의견)

학교 현장에서는 자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회복 노력을 할 경우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인 자체해결이 어렵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자체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 자체해결 대상 유형에 해당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자문위원 3의 의견)도 있으나, 명시할 경우 피해학생측에서는 다른 대처를 할 가능성 자체가 박탈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자문위원 5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경우 담당교사들의 안내가 부족한 것도 자체해결의 걸림돌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체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거의 없고, 형식적인 설명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신뢰하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자문위원 9의 의견, 자문위원 10의 의견). 학교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자체해결제를 원하고 있으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종결되더라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절차 진행을 어려워하기도 한다(자문위원 7의 의견).

나. 학생부 기재로 인한 소송남발 가능성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부 기재 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부터이다. 이후 10여년간 대학입시에 민감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측에게 강력한 결점이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중한 학교폭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억제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자문위원 7의 의견).

그러나 학교폭력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측은 적극적인 사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학생부 기재가 '빨간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력한

제재로 인식되게 되었다.²⁴⁾ 우려되는 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대책강화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자문위원 8의 의견).

2023년 4월 12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서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자문위원 1, 자문위원 8의 의견). 앞으로 가해학생 측의 반발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고 가해학생의 불이익이 재학 당시보다 졸업 이후 취업이나 진학의 불이익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피해학생 측에서도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자문위원 2, 자문위원 10의 의견).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바, 정부의 발표대로 졸업 후 4년까지 학생부 기록을 남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을 하는데 있어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자문위원 10의 의견).

3. 즉시분리로 인한 낙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서 분리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학교의 장이 즉시분리를 하도록 할 의무가 없음으로 인해 신속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에 2020년 이탄희 의원의 법안 발의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법이 개정(법률 제17668호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었다.

학교측이 피해학생의 분리 의사를 확인한 다음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다. 즉시분리는 조치는 아니고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치'로서 성격을 가지는 긴급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조치인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즉시분리는 조치가 아니므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즉시분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외닿는 조치여서 즉시분리가 적극적이고 강하게 요청되는 부분이긴 하나(자문위원 17의 의견), 조치결

24) 시사인, "학교폭력 그 이후, '생기부 빨간 줄'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 2023년 4월 13일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56>, 2023.7.31. 최종검색).

정 전 신고만으로 가해자로 '추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 조치결정 전 낙인 가능성

제도 도입 당시 즉시분리는 가·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분리하고 피해학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사례에서는 가해와 피해가 명확하게 확정되기 전에 즉시분리가 진행되다 보니 이른 시기에 가해와 피해를 나누는 구도로 만들어지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자문위원 5의 의견).

분리조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학교폭력 신고를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규정짓는다는 점에서 낙인 가능성이 크다(자문위원 3, 자문위원 7의 의견).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기계적으로 분리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집단폭력 등으로 즉시분리가 필요한 사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맞신고의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분리하는 조치로서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자문위원 10의 의견).

나. 분리방법의 문제

분리 이후 관리 주체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 학교 사정에 따라 현실적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여유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상담실을 활용하지만 다른 상담업무를 할 여유 공간이 없어 실제로 분리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자문위원 3의 의견). 장소적 분리라는 것이 형식적 분리에 불과하여 교실 내에서 떼어놓는 외에는 그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자문위원 18의 의견).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분리장소를 확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에서는 “가해자 분리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기간 동안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원격수업 등을 실시하라.”고 하고 있다.²⁵⁾ 그러나 학교현장의 사정상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분리 이후 별도로 교육할 인력과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

25)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 p.39.

고 있다(자문위원 3의 의견, 자문위원 4, 자문위원 14의 의견).

다. 분리 기간의 문제

「학교폭력예방법」상 즉시분리는 초일을 산입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는 것은 3일이 되지 않거나 금요일에 사안 발생시 실제로 하루만 격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즉시분리 기간이 휴일 포함 3일인 것은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한다(자문위원 3의 의견). 분리대상과 장소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분리시작 기산점에 대해 가·피해의 인식이 다를 수도 있다.

이번 4.12 대책을 통해 즉시분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즉시분리시 관리주체, 분리장소, 분리 프로그램 등 분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즉시분리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자문위원 1, 자문위원 3, 자문위원 20의 의견)

피해학생의 관점에서 위협을 느끼고 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라면 요청에 따라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자문위원4의 의견)는 의견도 있다.

라. 분쟁해결의 기회 차단

분리조치로 인해 가·피해 당사자가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된다(자문위원 3의 의견). 분리조치는 제17조 제6호의 가해학생 선도조치인 출석정지에 비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라는 점, 가해측이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맞선 고시 악용될 소지가 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긴급조치가 있음에도 분리조치가 기존의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여지가 있음에도 일단 양당사자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진다(자문위원 9의 의견). 학교에서 학교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즉시분리를 통해 많은 책임을 지우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자문위원 15의 의견).

4. 학교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선도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기재된 가해학생 선도조치들은 가해학생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공감을 통해 반성을 이끌어내는 조치이어야 한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조치 이행을 위한 여건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실효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다. 조치의 이행가능성의 관점에서 9가지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호의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서면으로 그동안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조치’로²⁶⁾, 이후에 반성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서면이 남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자문위원 3의 의견). 피해학생에게는 사과를 받음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자문위원 11의 의견).

그러나 서면으로 하는 사과가 자신의 순수한 반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방어적 형태의 서류작업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사과의 진정성이 문제 되고 있다(자문위원 3, 자문위원 7, 자문위원 11의 의견). 서면사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부모가 사과문을 대신 써주거나 무성의하게 작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²⁷⁾ 가해자는 서면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면사과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사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자문위원 3의 의견).

사과의 내용과 형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인 사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사과문 속에 가해학생의 변명이나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자문위원 11의 의견). 서면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자문위원 11의 의견).²⁸⁾ 서면사과를 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추가적인 조치나

26)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 p.72.

27) 한겨레, “가해학생 사회봉사 보낼 데 없나요... 헛도는 학폭 처분”, 2023년 3월 20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4347.html>, 2023.7.31. 최종검색).

28) 양승미/최승원,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p.180.

개선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자문위원 12의 의견).

나.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신고·고발한 학생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로 접근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제2호 조치로 인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조치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라는 공간의 제약 때문에 실질적인 접촉 금지가 어렵다(자문위원1의 의견). 학교의 경우 교실 공간에서의 분리 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즉, 화장실, 급식실 등에서의 접촉 등이 금지되어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동선 분리 자체가 어렵고, 이러한 장소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마주칠 경우 심리적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자문위원 3, 자문위원 9의 의견). 금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교육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의도하지 않은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에 한계가 있다(자문위원 11의 의견).

또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접근 금지’와 그 개념이 달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대면하거나 동일 공간에 있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자문위원 7의 의견). 사이버폭력의 경우 사이버상의 가해행위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는 사이버 채팅방 등의 탈퇴를 권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자문위원 3의 의견).

다. 학교봉사와 사회봉사

학교에서의 봉사는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기회를 갖게 하는 조치로,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학교행사 도우미,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책임감을 키우게 하는 조치이다. 학교봉사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과 학교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하고, 협력과정을 통해 학교공동체에 기여하는 방법을 익히는 조치이다.

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은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봉사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고, 학생 스스로도 수업을 참여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형태가 되고 있어 학생의 책임감을 고취하는데 충실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고, 지도교사의 업무 가중도 심화되고 있다(자문위원 11의 의견). 학교 봉사방식이 대부분 청소의 의존하고 있어 다양하지 않다(자문위원 12의 의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 역시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조치이다. 사회봉사의 진정한 의미는 본인이 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데 있지만, 자원봉사 기관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²⁹⁾, 실제로 자원봉사의 의미로 전락하여 책임성 부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자문위원 3, 자문위원 12의 의견).

또한 사회봉사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연락하면 해당기관에서 관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봉사활동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자문위원 11의 의견), 매뉴얼에서 사회봉사는 행정·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나 읍면동 지역에서는 봉사기관을 찾기도 어렵다고 한다.³⁰⁾

라. 특별교육

특별교육은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행동반성을 하게 하는 조치로 전문강사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치이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조치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이 일회적인 경우가 많고(자문위원 12의 의견), 주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주제 교육이 아닌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자문위원 15의 의견). 비행을 경험한 가해학생의 경우 청소년비행예방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이미 비슷한 유형의 교육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특별교육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자문위원 15의 의견). 학교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교육 조치를

29) 한겨레, “가해학생 사회봉사 보낼 데 없나요... 헛도는 학폭 처분”, 2023년 3월 20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4347.html>, 2023.7.31. 최종검색).

30) 한겨레, “가해학생 사회봉사 보낼데 없나요... 헛도는 학폭 ‘처분’”, 2023년 3월 20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4347.html>, 2023.7.31. 최종검색).

하기 어렵고, 별도의 조치라기보다는 부가적인 조치로 운용하고 있다(자문위원 3의 의견). 특별교육의 성격상 강제할 경우 교육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자문위원 12의 의견).

마. 출석정지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의 수업 출석을 제한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로,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라는 점에서 피해학생에게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자문위원 13의 의견). 실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출석정지를 내리기보다는 경미한 사안에 출석정지를 내리고 있고, 성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출석정지를 하고 있다. 출석정지시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다.

출석정지시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자문위원 8, 자문위원 12의 의견). 실제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려도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이유로 등교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자문위원 20의 의견).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자문위원 14의 의견). 출석정지는 '등교 정지'가 아니므로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학습 자료 마련 등 수업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자문위원 20의 의견). 출석정지 기간 동안 반성이나 행동교정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출석정지가 끝난 이후 가해학생이 출석하면 동일한 환경에서 피해학생과의 갈등이나 폭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자문위원 11의 의견).

바. 학급교체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조치로, 피해학생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자문위원 12의 의견). 교사의 입장에서도 교사간 정보 공유로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학급교체는 학교현장에서 별도의 반 편성이 어려운 현실에서 잘 하지 않는

조치로 전학조치보다 그 건수가 적다.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반배정하는 과정에서 학년 교사들의 반발, 배정된 학급의 학생들과 보호자들의 민원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꺼리는 조치 중의 하나이다.³¹⁾ 가해학생이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여 동일한 행동을 할 경우 제2의 피해학생이 생길 수도 있다.

사. 전학과 퇴학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장기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강제전학과 퇴학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전학 또는 퇴학조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의 분위기 전환이나, 당사자에게 경고로서 의미는 강력하게 보일 수 있으나,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방법을 통하지 않고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형태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일지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조치를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³³⁾

전학은 가해학생에 대한 ‘폭탄 돌리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폭탄을 돌리다보면 아이가 힘이 약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과거에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그 학생 하나가 학교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고 권력이 그와 같은 행동을 제한하려고 할 경우 ‘학생 인권 침해’, ‘아동학대’로 문제제기가 되어 선생님들이 손을 놓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³⁴⁾

31) 한국교육신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종류 및 특징”, 2021년 7월 5일자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4069>, 2023.7.31. 최종검색).

32) 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지연의 쟁점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9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p.4.

33) 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어 왕복 3시간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사안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할지라도 해당교육청의 지침은 전학대상 학생을 직선거리 2.5km이상인 학교에 분산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한도 거리가 없고, 등학교에만 매일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를 고려하면 적절한 학교배정인지 의문이고, 행정적 문제와 선도 목적을 고려했다 해도 전학결정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 학폭 가해자 강제전학, 왕복 3시간 거리는 인권침해”, 2022년 6월 24일자(<https://www.yna.co.kr/ew/AKR20220624052000004>, 2023.7.31. 최종검색).

34) 비디오머그,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보내면 그걸로 끝인가요?”, 2022년 7월 15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20799, 2023.8.10. 최종검색).

정모 변호사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불복수단을 활용하여 절차 지연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 학생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자문위원 9의 의견).

가해학생은 전학 이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새로운 학교에서도 학생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수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퇴학결정으로 가해학생측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이나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자문위원 11의 의견). 전학 또는 퇴학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의 방식으로 모든 조치가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후에도 가해학생이 책임감 있게 교육받고 치료받는 조치들이 뒤따를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선도조치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심의위원회 판단의 전문성 문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를 꾸리던 것을 시도교육청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1/3 이상을 해당 구역 내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가. 사안처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갈립

시도교육청 산하 심의위원회로 사안이 이관되면서 사안판단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 실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우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자문위원 3, 자문위원 4, 자문위원 7의 의견).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교육지원청의 컨트롤 하에 있고 전담변호사도 있다 보니 절차상 하자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양측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다(자문위원 10의 의견).

그러나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교육을 맡고 있는 전문가나 연구자의 경우 전문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 척도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적인 판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한다(자문위원 5의 의견). 예를 들어 지속성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기준도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 매뉴얼에서는 보편적 판단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행위를 지속성이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할지 위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자문위원 16의 의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위원의 성향에 따라 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자문위원 15의 의견).

전문적인 심의와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비율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이 여전히 낮고, 학부모위원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 위원의 경우 또래 자녀를 키우다보니 결과만 보기 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심의위원들 중에는 심의위원회 판단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위원들이 취조하듯이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중삼중으로 질문하여 절차의 피로감을 더하고 있기도 하다(자문위원 10의 의견).

나. 사안 처리의 지연 문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다.³⁵⁾ 그러나 2022년 시도교육청별 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면 전체 심의건수 10,063건 가운데 4주 이내에 처리된 것은 7,059건, 4주가 지나 심의된 것은 3,004건에 달한다고 보고되었고, 서울의 경우 전체 1,204건 중 70%에 이르는 854건이 4주 이내라는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³⁶⁾

학교폭력 사건이 시도교육청 산하로 몰리다보니 사안을 판단하여 결정하는데까지 3-4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자문위원 3, 자문위원 6의 의견). 학교폭력 사안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었

35)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 p.62.

36) 연합뉴스, “학교폭력 느는데..학폭위 30%가 4주내 심의 지침 못지켜”, 2022년 10월 17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7039900530?input=1195m>, 2023.8.31. 최종검색).

음에도 학교 현장의 업무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 변화라고 보고 있다(자문위원 6의 의견).

다. 사안 판단의 공정성 문제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정도를 판단할 때 심각성을 먼저 판단하고 0점부터 4점까지 배점하여 고의성, 반성정도, 쌍방간의 화해정도 등을 판단한다. 심의 위원회도 세부 적용기준에 따르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조치 결정이 다르게 나올 경우도 있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결정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자문위원 5의 의견). 세부기준표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판정점수가 0인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없고, 반성과 화해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된다.³⁷⁾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는 정량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출석시 반성의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극단치보다는 중간 점수를 주려는 경향이 있고, 누군가 잘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진술하는 경우 반성이나 화해정도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법적 조력을 받는 가해학생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다(자문위원 5의 의견). 심의위원회 진술시 반성 정도가 투영되는 경우 반성점수가 바뀌기도 하고, 화해 시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드러내는 경우 화해점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자문위원 13의 의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통일 경우 2점을 주지만 교육청별로 또는 소위원회별로 판단점수가 다를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자문위원 5의 의견). 학교폭력 당사자가 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면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어느 한 당사자만 출석하여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자문위원 10의 의견).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 정도에 관한 기준은 조치 결정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의 판단이나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는데 있어서도

37) 이현정,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8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7, p. 239~240.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사안 판단이 더 공정해야 한다(자문위원 6의 의견).

6. 가해학생 부모의 책무성 강제 어려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측의 불이익이 커지는 정책들이 늘어감에 따라 가해학생 학부모의 대응도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부모의 문제의식이나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 민감해지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해 불만을 가진 가해학생 학부모가 사안조사 과정을 아동학대 사례로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자문위원 2의 의견). 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이 교권 침해사례로 변질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자문위원 3의 의견).³⁸⁾

7. 피해자 보호에 소홀

2023년 4월 12일에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서는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재내용을 삭제하는 조건에 피해학생 동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묻겠다는 대책이 담겨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자문위원 1, 자문위원 3의 의견).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목적으로 한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자문위원 3의 의견).

행정심판 단계에서 마을변호사 지원, 국선변호인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법권의 과다 투입으로 인한 변호사간의 쟁송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자문위원 1의 의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8) 오마이뉴스, “‘기피학교’에서 2년간 학폭을 담당했습니다.”, 2023년 8월 11일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952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3.8.14. 최종검색).

제 3 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판결 및 언론보도 사례를 통해 본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김민규 · 서민수

제3장

판결 및 언론보도 사례를 통해 본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제1절 | 분석의 개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심의위원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을 파악하면 불복 이유를 파악할 수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비공개이므로 쟁점을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된 사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결은 판례 검색 서비스인 '케이스노트 프로(CaseNote Pro)'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였다. 검색조건은 '학교폭력'을 검색어로 하여 출력된 결과 중에서,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판결이 이루어진 소송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이 조건으로 검색된 민사소송 231건과 형사소송 391건은 학교폭력에 관한 상세한 쟁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결과 [행정소송] 중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원고승] 사건을 분석하였다. 2023년 8월 4일 현재, 이러한 검색조건에 따른 '지방법원 판결 사건'은 38건이었고, '고등법원 판결 사건'은 6건이었다. 주의할 것은 이것은 'CaseNote Pro'를 통해 검색된 판결 중에서, '학교폭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례는 제외하고 연구진의 선별을 거친 판례 건수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국 법원에서 실제 학교폭력 사건으로 판결을 한 건수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행정소송의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에서 소송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된 학교폭력 사안 중 가해학생 조치와 관련된 쟁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빅카인즈 데이터분석을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제2절 | 행정소송 사례를 통해 본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조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소송까지 제기한 경우가 여럿 존재한다. 연구진은 행정소송 제기로까지 이어진 경우에, 주로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심리 결과 원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판결하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에서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원고로서 제기한 행정소송 중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승소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1. 지방법원 판결 분석

가. 개관

우선 판례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 예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³⁹⁾ 즉,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고,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게 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이루어져

39)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구합2290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 구단11174 판결 등.

학생의 일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의 발생 경위,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조치부와 결정 기준 등 관련 조문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며,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¹⁾

이러한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언어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판단 관련 사례

1) 언어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부정 사례

전술한 바와 같이 법원은 학교생활 중에 발생하는 학생 간 충돌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법률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⁴²⁾

40) 전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159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2197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합2496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구단11399 판결 등.

41) 서울행정법원 2022. 7. 19. 선고 2021구합74952 판결.

42)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구합22907 판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이 그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나아가 학교라는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에 대하여 행위의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살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7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우선 법원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언을 한 경위, 발언의 정도, 발언자의 나이 및 해당 발언을 통해 피해 학생이 위협을 느끼거나 부당한 압박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2. 7. 19. 선고 2021구합74952 판결

- "진짜 개 못 뉘네, 너는 기초가 없다,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냐? 우리 반 미술 꼴찌네"와 같은 표현은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주관적 평가 및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에스크'라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원고 계정에 제3자가 익명으로 '신고', '학폭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원고는 수동적으로 응답하기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과 -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학급교체, 특별교육 등 조치처분을 취소함

창원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구단11174 판결

- 원고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가해학생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육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이고, 이로 인해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고 있음. 또한 감정표현이 서툰고, 불안함이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함
- 가해학생에게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로서 가능한 발언이며, 이로 인하여 관련학생이 피해자로서 위협을 느끼거나 부당한 압박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과 -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조치처분을 취소함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구합22907 판결

- 원격수업 도중, 원격수업을 방해한 학생(피해학생)이 변명을 하자 원고가 '추하다'와 같은 발언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실은 인정됨
- 이러한 발언에 대해 피해학생이 '니가 더 추함'이란 글을 올린 사실, 학급의 다른 재학생의 반응 및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모욕 등에 해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과 -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조치처분을 취소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31. 선고 2021구합30625 판결

- 피해 학생이 원고에게 '멀치다, 말라가지고 여자 지킬 수 있겠다' 등의 발언을 하자, 원고가 상대 학생에게 '다리가 짧다, 못생겼다'라고 발언한 점이 인정됨. 이러한 발언이 짜증이나 화를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모욕으로서 상대 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교실에서 바지를 벗거나 다른 학생의 부모에 대해 부적절한 언사를 한 사실은 인정됨. 이러한 행위로 교실 내 다수 학생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인정되나, 이 행위가 상대 학생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대 학생도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 취소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예훼손·모욕’에 의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법원은 동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학교폭력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⁴³⁾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합24966 판결

- 원고가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임
- 원고와 동급생 친구 사이의 둘만의 대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이루어짐
- 계속된 권유와 비밀보장 약속에 따라 해당 발언을 함
- SNS나 메신저 등 전파성이 높은 통신수단을 매개로 하지 않음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결과 - 서면사과 처분 취소

다음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에스크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각호에서 열거된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⁴⁾ 다음의 판결들은 SNS에서의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들이다.

전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145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1590 판결

- 원고 외 학생이 원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여학생의 외모 등급을 매기고 품평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함
- 원고(B)는 해당 문서를 발견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사진을 보관함
- 또 다른 원고(A)는 우연히 해당 사진을 발견함
- A는 이 사진을 피해학생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하며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B는 A에게 사진을 전송함. A는 관련이 없는 제3의 학생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알려 달라 부탁함. 제3의 학생은 이를 인스타그램에 1시간가량 게시하였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학생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함
- A는 피해학생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진을 전달받았으므로, 이 행위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B 역시 A의 부탁으로 피해 상황을 알리고자 파일을 전송한 점에 비추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음

결과 - 2022구합1453: 출석성지, 특별교육 처분 취소
- 2022구합1590: 사회봉사, 특별교육 처분 취소

43)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합24966 판결.

44) 대전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107304 판결: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등 같은 호에서 열거한 방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8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대전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107304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e-학습터'에 과제물을 게시함 - 해당 과제 내용에 관계 학생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겪은 바를 기술하고 있어 명예훼손적 표현이 될 가능성은 있음 - 다만 해당 과제 작성이 관련 학생에 대한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과제물을 작성·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102941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대화방에서 다수 학생이 참가하여 장기간에 걸쳐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발체하여 제출한 일부 대화 내용이나 표현만을 근거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 외에 교사의 훈계나 지도 등 교육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함
결과	- 접촉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 취소
청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50562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하여 전달한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및 지속성을 살펴볼 때, 그 내용에 심각성이거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행위도 1회에 그쳐 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처분 취소

2) 언어폭력, 모욕, 명예훼손 인정 사례

피고 등이 욕설과 조롱을 하여 원고가 모멸감, 수치심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관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등에게 언어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심의위원회 판단과 이에 따른 '조치 없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판례가 있다.⁴⁵⁾ 법원은 비록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되지는 않았지만, 목격학생 6명 중 4명이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피고도 처음에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자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와 같이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한 학생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45)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5876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58766 판결

- 피고가 학교 운동장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
- 목격 학생 6명 중 4명이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함
- 원고가 사과를 거절하고, 피고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입장 번복
- 피고와 같은 반 학생들로서 언어폭력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과 - 원처분(아무런 조치없음) 취소

다. 성관련 판단 사례

학생 간에 벌어지는 간음, 강제추행 등 성관련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여부로 수사나 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성관련 사안은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해학생의 장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성폭력’은 형법에서 정한 행위로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한편,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간다는 주관적 인식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⁶⁾ 즉,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 지라도, 이것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으로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안도 있다.⁴⁷⁾

46)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0구합71895 판결: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이 형법 규정에서 정한 행위로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성폭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는 주관적 인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47) 창원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구단11399 판결: “... 설령 이 사건 조치원인 기재대로 원고가 일부 발언하거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관련 학생에게 다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 더 나아가 성폭력

8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이하에서는 성관련 사안에 있어서 학교폭력예방방법상의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례들이다.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75489 판결

- 원고가 피해학생은 모두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음
-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함
- 원고는 피해학생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함
- 페이스북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성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가 오간 점, 피해학생이 성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거부사를 밝힌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학생 진술에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등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조치, 특별교육 등 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구단11041 판결

- 원고와 상대학생은 모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음. 원고는 상대학생과 3일간 교제하면서, 1일차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2일차에 강제추행(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하였으며, 3일차에는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는 점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 고소 사안에서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고, 상대학생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함
- 심의위원회는 두 학생이 교제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그러나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상대학생의 경찰 참고인진술조서를 볼 때, 교제를 부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상대 학생의 진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조치, 특별교육 등 처분 취소함

인천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55330 판결

- 원고와 피해학생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음
- 원고와 피해학생이 2회에 걸쳐 성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원고의 주장은 일치하지 않고 있고,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피해학생이 원고와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처분 취소함

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으로서 관련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평가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치원인 사실을 인정하거나 해당 발언이나 행위가 강제추행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따돌림 판단 관련 사례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으로서,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의2호에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일반적인 학교생활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따돌림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⁴⁸⁾ 이하에서 나온 판례는 대체로 문제된 사안이 ‘따돌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51992 판결

- 원고는 피해학생의 이름을 넣어 축구와 농구의 모든 포지션에 피해학생의 이름을 넣어 부르고, 피해 학생의 자세를 따라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롱을 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의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원고의 행위가 피해학생을 비꼬는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구합7369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구합73370 판결

- 원고 A와 원고 B는 피해학생에게 전화하여 절교하자고 말하는가 하면, A는 B가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절교하자는 문자를 보냄. 또한 B는 유튜브에 피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듯한 영상물을 업로드함
-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흔한 갈등임
- A와 B의 행위를 일방적 가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의 횟수나 기간, 정도에 비추어볼 때 공격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처분 취소

48)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구합7337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67729 판결 등.

8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132 판결

- 원고는 원고의 친구와 급식실로 가면서 그 친구가 피해학생에게 '실패, 실패'라는 말을 하였음. 한편 원고는 통학버스 내에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과 같이 다니지 않겠다.'고 말함
- '실패, 실패'라는 말은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것이 실패했다'는 의미로 단정하기에는 단편적이고 상황에 따른 다른 해석도 가능한바, 따돌림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피해학생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제3의 학생에게 한 것을 피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욕으로 보기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67729 판결

-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그만 좀 붙어 다녀, 너 게이냐?", "좃갈게 하네", "존나 실망했어", "이번에는 전학생 꼬시냐? 레전드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피해학생은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해당 학교를 자퇴함
- 따돌림을 원고가 선동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과 동급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집단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적 공격을 반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피해학생이 진료를 받을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따돌림을 반복하거나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처분 취소

마. 폭행 및 강요 등 판단 관련 사례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은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기타의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서는 입증이 수월한 편이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례에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하의 판례들은 폭행 및 강요의 성립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여,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들이다.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구합11699 판결

- 학교폭력은 고의에 의한 폭행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과실에 의한 사고는 동법상의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체육시간에 원고가 휘두른 채에 피해학생의 코뼈가 맞아 부러진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는 않음
- 쉬는 시간에 장난을 치다가 다리를 골절시킨 사안에서, 원고가 즉시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함

결과 - 서면사과, 접근금지 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64461 판결

-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등교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선물교환을 종용하거나 특정발언을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하여 학교폭력을 이유로 한 조치를 받음
- 독감이 걸린 친구에게 “열이면 학교에 오면 안 된다”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은 등교정지를 강요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선물을 교환하며 원하는 선물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서 대화를 주도한 정황은 있으나 전체적 대화내용과 그 흐름에 의하면 선물교환을 강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A는 내거야”와 같은 발언을 하도록 요구하여 그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발언을 이끌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정황이 없으므로, 이를 강요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특별교육 처분 취소
----	--------------------

광주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15277 판결

- 원고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학생의 얼굴에 신체접촉을 한 바, 피고는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음
- 원고는 몸을 풀면서 팔을 휘두르던 중 우연히 볼을 건드린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보아서도 고의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과실로 인한 폭행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결과	- 서면사과 처분 취소
----	--------------

바. 진술의 신빙성 판단 관련 사례

사건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당사자의 진술인 경우로서, 당사자 간에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경우 판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30564 판결

- 원고가 피해학생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살인미수자' 등으로 발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폭력이라 주장함
- 해당 발언은 원고로부터 직접 피해학생이 들은 것이 아닌 친구를 통해 전해들은 것에 불과함
- 원고가 해당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피해학생 및 말을 전한 친구의 진술이 유일함. 원고와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둘의 진술만으로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처분 취소
----	--------------

서울행정법원 2021. 5. 6. 선고 2020구합61430 판결

- 신고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2개월 이상 피해학생을 괴롭혔고, 다른 학생들까지 선동하여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는 것임
-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부 사실이라도 목격한 학생이 존재하여야 하나, 목격자 진술은 전혀 확보된 바 없음
- 피해학생 본인 및 그 학부모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객관적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 비하여 진술 자체에 더욱 높은 신빙성이 요구됨
- 사안을 구체적·개별적 특정하지 않았고, 세부적 묘사도 부족하므로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비록 피해학생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의 심적 고통을 겪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학생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은 추단 가능하나, 이를 넘어 학교폭력을 반복·주도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과	- 서면사과 처분 취소
----	--------------

사. 처분 평정 관련 사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교육 및 선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는 조치별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을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의 세부적인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5.1. 일부개정, 시행) 별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별표 내용을 제출된 증거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부과할 것인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나, 그 조치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따라서 개별적으로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그에 대한 조치 및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본다.⁴⁹⁾

이하에 소개된 판례는 고시에 따른 배경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 것들로서, 대체로 심의위원회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처분을 취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구단12016 판결

- 이 사건 이전에 별도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사회봉사 등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 원고의 선도가능성이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가중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의결함
- 그러나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시기에 행해진 것이고, 해당 사건 간에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가중요소로 삼는 것은 과도함

결과 - 접촉금지, 출석정지, 특별교육 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21970 판결

- 원고는 가해학생의 친구이자 피해학생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임
- 가해학생의 여자친구에게 피해학생이 성희롱을 하였음. 이에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이 과정에서 원고는 가해학생의 부탁을 받고, 피해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불러내었음
-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가해학생의 폭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전제한 후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 학교폭력이라 보기 어렵고, 가해학생이 폭행을 계획하였다는 정황도 없음
- 가해학생의 폭행을 말리려고 하는 다른 친구들을 저지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직접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의 고의성을 '낮음(1점)'으로 배정한 것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고의성도 '낮음(1점)'으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따르면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보통(2점)으로 총 6점 부여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8점으로 판정한 심의위원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결과 - 사회봉사,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구합66297 판결

- 중학교 1학년 시기 학교폭력 사건과 중학교 3학년에 발생한 이 사건 학교폭력 사이에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높게 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원고가 친구들로부터 목격자 진술을 요구하여 받아낸 것을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전학처분 기준인 16점 이상인 17점으로 산정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과 - 전학처분 취소

8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대전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구합105414 판결

- 원고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목을 졸라 타박상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함
- 원고의 고의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되나, 원고가 한 진술,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 이후에 보인 태도 등이 원고의 반성정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재결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화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합산점수는 전학조치를 판정할 수 있는 점수(16~20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학조치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결과 - 가해학생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함

창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2구단10390 판결

- 원고는 친구로부터 자신의 싸움 장면을 증거 활용 목적으로 촬영해줄 것을 부탁받아 싸움 장면을 촬영, 녹화함. 이 행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싸움을 방조하고, 촬영을 통해 싸움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을 의결함
- 원고의 행위를 싸움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만약 원고의 행위를 싸움 방조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학교폭력 심각성 점수를 싸움에 참가한 다른 학생의 평점(높음, 3점) 바로 아래인 '보통(2점)'으로 평가한 것은 의문이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과 - 학교 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구단11136 판결

- 원고는 관련학생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바 있음
- 심의위원회는 관련학생을 피해학생으로 파악하고, 원고의 해명은 쌍방폭행 주장을 위한 변명으로 판단함. 이를 근거로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모두에서 각 3점을 부여한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판단임
- 관련학생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높음(3점)'으로 부여하였으나, 위 진단에도 불구하고 관련학생은 전혀 치료한 바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 정도를 높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임

결과 - 출석정지,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구합12190 판결

-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된 3개의 혐의 중 제1, 제2혐의는 경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제3혐의에 대해서만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짐
- 제3혐의는 피해학생의 자전거를 발로 차서 피해학생이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은 것과, 넘어진 피해학생을 다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 피해학생의 자전거를 손괴한 행위임
- 제3혐의가 중대하여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에서 높은 점수가 부과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 제2혐의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매우 높음(4점)'으로 판정하는 것은 어려움. 이를 고려하면 전학조치를 위한 점수인 '16~20점'에 해당하지는 않는데도 전학조치를 명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기준을 위반한 것임

결과 - 가해학생 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을 취소

아. 절차적 하자 관련 사례

지방법원 판례 중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이 5건 검색되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사실, 청구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내용,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된 사안이 있다.⁵⁰⁾

한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며,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내용에 관한 통지를 서면이 아닌 휴대폰메시지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한 것은 위 행정절차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한다.⁵¹⁾

한편, 사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심의와 의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舊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고 문제된 사안이나,⁵²⁾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을 한 사안⁵³⁾ 등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므로, 해당 위원회에서 한 의결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고등법원 판결 분석

전술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총 6개의 고등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0) 대전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103439 판결.

51)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전자로 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를 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전화 및 문자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목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목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전자문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52) 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구합174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구합21427 판결.

53) 대구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구합20831 판결.

가. 실제적 하자에 관한 사례

1)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만약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어 조치를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 능성,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⁵⁴⁾ 다시 말해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선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2020누15068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는 휴대전화로 피해학생의 신체 일부(무릎 아래 다리 일부와 발)를 촬영한 사실이 있음. 또한 피해학생들이 체육복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로 접근하거나 들여다본 사실이 있음. 그리고 언어폭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치가 부과됨 - 이에 대해 원고는 휴대전화 테스트 중 우연히 피해학생들의 신체일부가 찍혔다고 주장함. 또한 체육복을 가지러 교실에 간 것일 뿐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의 행위는 성인지 감수성이 미숙한 중학교 입학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다른 조치로도 선도가 가능해 보이는데도, 강력한 징계조치인 전학조치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결과	- 전학처분 취소

한편,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에도 각 학생별로 행위의 정도,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도 존재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34133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를 포함 5명의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돌려 심리적 고통을 가한 점은 인정됨 - 원고는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보다 동조한 정도로 판단됨. 이후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하며 화해를 시도한 적이 있음. 이처럼 스스로 사과하고 화해한 정황,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에서 다른 가해학생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따돌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동일한 처분을 함 - 사안 및 행위자에 대한 개별적 판단 없이 동일한 처분을 한 원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함 	
결과	- 1심 판결 취소(출석정지 처분 취소)

54)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2020누15068 판결.

그 외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에, 한쪽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그러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치를 한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누10506 판결

- 피해학생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진술함
- 원고는 자신이 스킨십 전에 피해학생에게 의사를 물어보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함
- 아동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원고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피해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검사결과, 원고 진술의 일관성 및 현실성 등을 바탕으로 원고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함
- 진술이 상반됨에도 피해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부과하였으나,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제시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해당 조치는 실제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결과	- 1심 판결 취소(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처분 취소)
----	----------------------------------

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사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고등법원에까지 소송이 제기되어 원고가 승소한 판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보인다.

1) 서면 통보 불이행 및 의견진술기회 보장 관련 판단

우선 학교폭력을 이유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대상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즉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처분 원인 사실 및 처분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처분 관련 문서를 작성함이 없이 구두로만 처분내용을 설명한 경우라면, 이는 아직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기간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전 학교의 교육장이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존재한다.⁵⁵⁾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정한 교육·훈련 목적 사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대상 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미리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심의대상이 되는 원인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한 판례가 존재한다.⁵⁶⁾ 본 판례는 심의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기에 앞서 원고 측에게 심의대상 행위를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견진술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위반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심의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절차적 하자가 주로 문제된 사안 중에서는 처분을 의결한 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 (舊)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은 자치위원회에 학부모전체회의 등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학부모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선출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⁵⁷⁾ 따라서 선출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조치 요청은 위법하다고 한다.

한편, 심의를 하는 위원회 구성원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피해학생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한 바 있는 교사가 결의에 참여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교사가 위원으로 참가하였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시한 경우가 있다.⁵⁸⁾ 이와 유사한 판례로서 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사유가 인정되어 심의에서 해당인원이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기피신청과 관련한 절차가 적

55) 수원고등법원 2021. 11. 5. 선고 2021누10145 판결.

56) 광주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전주)2021누1898 판결.

57)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2020누15068 판결.

58)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누10506 판결.

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피대상 위원의 의결 참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에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도 있다.⁵⁹⁾

3. 소결

전술한 바와 같이, 위 판례들은 원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위 사안들이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원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이끌어낸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위 판례들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가해학생 조치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둘째,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유형에 대한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학교폭력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예컨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성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에 이를 것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법원은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 있어서는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한 증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사자 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경우, 목적자 진술이나 물적 증거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학생 조치의 부과는 학교의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의 규율을 받는

59)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53233 판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치위원회 위원과 사건 사이의 관계, 즉 자치위원회 위원과 가해학생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치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절차적인 요건이 완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절차적인 하자가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이 적법하지 못했던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가 존재함에도 제척·기피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의 및 의결 과정에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절차의 진행 및 조치 부과가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다.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가해학생의 학교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판단과 그로 인한 조치 부과 과정은 특히 절차적인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3절 |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 서면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 관점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놓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바93결정)이 있었다. 아래는 해당 결정의 주요 내용이다.⁶⁰⁾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7년경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舊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급교체(제7호) 및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부과 받았다. 이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4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면서 주위적으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60) 아래 판례 내용 설명은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판결문 원문을 정리한 것이다. 원문은 https://isearch.court.go.kr/view.do?idx=00&docId=57551_010200 (2023.8.6. 최종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를, 제2예비적 청구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서면사과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를 하였다.

2. 서면사과 조항에 대한 판단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재판소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의 사과를 통한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조치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⁶¹⁾

나. 침해의 최소성

헌법재판소는 가해학생도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서면사과 내용에 대한 강제가 없다는 점,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측면이 있는 점, 서면사과 처분을 불이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서면사과 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⁶²⁾

다. 법익의 균형성

서면사과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과 학교공동체 회복의 공익

61) 헌재 2023. 2. 23. 2019헌바93등, p.311.

62) 헌재 2023. 2. 23. 2019헌바93등, p.311~312.

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서면사과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⁶³⁾

라. 결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방법상의 서면사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⁶⁴⁾

3. 반대의견

한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는 이 사건 서면사과조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서면사과조항은 가해학생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학생에게 서면의 형식으로 사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서면사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내심의 윤리적 판단과 외부의 사회규범과의 괴리나 충돌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격과 양심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이나 분쟁해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교육적 효과나 분쟁조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충분히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도 가해학생의 선도·교육과 피해학생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아 서면사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⁶⁵⁾

63) 현재 2023. 2. 23. 2019헌바93등, p.312.

64) 현재 2023. 2. 23. 2019헌바93등, p.312.

65) 현재 2023. 2. 23. 2019헌바93등, p.317.

4. 소결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에 내려진 고등법원 판례 중에는 서면사과조치가 가해학생에게 서면 작성을 강제하여 그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라서, 교육적 수단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가해학생의 교육 목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경우도 존재한다.⁶⁶⁾ 이 판례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와 유사하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서면사과조치의 합헌성과 교육적 기능을 인정하였지만, 위 반대의견의 문제의식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서면사과 조치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비록 이것이 경미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신중하게 부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제4절 | 언론보도 사례를 통한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이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 논란을 넘어, 역대 정부의 최단기간 내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라는 초강수까지 등장했다.⁶⁷⁾ 도대체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가 되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66) 서울고등법원 2019.10.30. 선고 2019누45144: “...서면사과를 명하는 것 자체가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이를 따라야만 한다는 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교육적 수단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서면사과를 조치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그리고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에 따라 서면사과를 했는지에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뉘우쳐 이를 하도록 할 교육적 유인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 또한 서면사과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나, 졸업 전의 진학 과정에서는 여전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아 있어 향후 자신의 진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서면사과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신의 미래에까지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교육에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온다고 보인다.”

67) 1995년 6월 학교폭력 피해당한 한 고등학생의 자살 사건 이후 1996년 1월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 발표」(약 7개월 소요) →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2012년 6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약 6개월 소요) → 2023년 2월 고위공직자 자녀 학교폭력 사건 논란 이후 같은 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약 2개월).

그동안 언론이 쏟아 올린 학교폭력 선도조치 보도는 사회 각계각층에 파고들어 과도한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과부하 현상은 결국, 학교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관련 기관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급기야 실오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바라봤던 국회는 가·피해자도 없는 맥 빠진 청문회까지 열며 정치 공방까지 펼쳤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핵심 주제는 논하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그렇게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은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관한 쟁점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2월, KBS 단독보도를 시작으로⁶⁸⁾ 현재까지 전국 일간지 등에서 669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아직도 동종 기사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선도조치가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⁶⁹⁾

또, 최근 대전지역에서는 한 여고생이 ‘절교’ 문제로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⁷⁰⁾ 이 사건은 학생 간 단순 다툼인 줄 알았지만, 지난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은 또 한 번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논란 기사를 쏟아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결정을 내려 피·가해 학생을 분리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유족은 “이동 수업할 때마다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라며 실질적인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참변을 당했다며 억울해했다.⁷¹⁾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분리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또, 지난 6월에는 춘천에서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만을 품은 일가족이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를 폭행한 교사를 상대로 신고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증거 불충분 사유를 들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을 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원도 특별자치도교육청은 브리핑을 통해 “관련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

68) KBS,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2023년 2월 24일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3328&ref=A>, 2023.7.31 최종검색).

69) 「빅카인즈」 뉴스 검색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2월 24일 이후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정순신’ AND ‘아들’ AND ‘학폭’으로 검색한 결과 전국 일간지와 방송에서 총 669건의 언론 보도가 검색되었으며, KBS가 2023년 2월 24일 ‘9시 뉴스’에서 첫 단독 보도함.

70) 국민일보, “대전서 17세 동급생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검거”, 2023년 7월 12일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57146&code=61121111&cp=nv>, 2023.7.31. 최종검색).

71) 서울신문, “‘절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 유족 “학교 가기 싫어했다”…‘학폭’ 수사 착수”, 2023년 7월 4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14500203&wlog_tag3=naver, 2023.7.31. 최종검색).

하고 향후 민원 대응 및 사안 처리 절차 계획 등을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지만,⁷²⁾ 이번 사건 또한, 학부모가 학교폭력 선도조치에 대해 인식하는 민감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불거진 선도조치 결정에 대한 논란을 주목하면서, 지난 3년간의 언론 보도 사례를 통해 선도조치와 관련한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해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사례 중 ‘사건’과 ‘사실’ 기사로 재분류해 ‘사건’ 보도 사례에서는 선도조치 결정을 전제로 가·피해 학생의 불복 사건을 추출해 분석하고, ‘사실’에서는 선도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방안을 제시하는 논평을 분석해 선도조치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선도조치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언론 기사는 ‘일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정보 전달 수단’이자 ‘사회현상을 공유하는 탁월한 도구’이다. 결국, 언론 보도의 목적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사를 분석한다는 건 결국, 움직이는 정보·지식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꽤 가치 있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비정형 텍스트로 구성된 언론 기사 콘텐츠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빅카인즈 서비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것으로,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뉴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로서⁷³⁾ 최근 정치·범죄·경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분석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분석방법은 1차와 2차로 나뉘, 1차 빅카인즈를 활용한 기사 분석과 2차 엑셀(Excel)을 활용한 재분류 방식으로 분석했다. 먼저, 빅카인즈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빅카인즈

72) 강원일보, “교육청 방화 시도 50대 구속”, 2023년 6월 30일자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61917292244123>, 2023.7.31. 최종검색).

73)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2017, 1~2p (https://www.kinds.or.kr/manual/%EB%B9%85%EC%B9%B4%EC%9D%B8%EC%A6%88_%EC%82%AC%EC%9A%A9%EC%9E%90%EB%A7%A4%EB%89%B4%EC%96%BC.pdf, 2023.7.31. 최종검색).

를 통해 기사를 수집한 후 기사와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고, 빅카인즈에서 제공한 키워드 중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정독하며 시험 검색을 거친 후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검색어로 기사들을 살핀 후 선도조치와 관련한 주요 키워드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어라는 걸 찾았고, 이후 상세 검색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처분 등의 단어들을 포함했다.

2차 분석에서는 빅카인즈에서 수집한 기사를 ‘사건’과 ‘사실’ 주제로 나눠 엑셀로 정리했으며 특히, 쟁점의 오용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중 ‘선도조치 결정 이후’의 기사에 대해서만 분류하였다. 또, 쟁점 구분을 위해 ‘사건’ 기사와 ‘사실’ 기사 등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기사 내용을 일일이 정독해 ‘사건’ 기사의 경우 동종 기사는 배제해 하나의 기사로 묶고, ‘사실’ 기사 또한 선도조치와 관련성 높은 논평 위주의 기사로 재분류했다. 특히 2차 분석은 엑셀에서 소트(Sort) 별로 ‘보도 일자’, ‘기사 제목’, ‘기사 내용’, ‘가·피해 학생 학교급’, ‘가·피해 학생 성별’, ‘가·피해 학생 인원’, ‘학교폭력’, ‘선도조치’, ‘쟁점’ 등으로 정형화하였다.

2. 분석 대상 및 검색 조건

이번 장의 연구 목적은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가 사회 인식은 물론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에게 어떤 쟁점을 가지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이며, 선도조치가 쟁점을 분석하는 기준인 만큼 학교폭력 사안 중 선도조치가 결정된 사안을 선별하였으며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 초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출석정지’ 등 사전 선도조치를 내릴 수 있는 만큼⁷⁴⁾ 이러한 학교 단위에서의 ‘긴급조치’까지 가능한 쟁점 기사까지 포함했다.

또, 분석 기간 설정에서는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시·군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한 시점인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최근 3년의 기간을 정해 해당 언론 기사를 검색하였고, 상세 검색 조건

74)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

으로 언론사 설정은 전국 일간지·지역일간지 등 39개⁷⁵⁾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합분류는 '사회'만 설정하고 사건·사고 분류에서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연관성도 살피기 위해 '사회'와 '범죄'를 지정하였다. 그 결과 빅카인즈에서 총 2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이후 검색 결과 중 언론사끼리 사건 내용이 중복되거나, 뉴스 제목과 빅카인즈에서 제시한 키워드를 검토해 검색 결과로는 제시됐지만, 선도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고, 단순 통계를 보여주는 기사 혹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사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 과정에서 빅카인즈를 활용해 수집한 260건의 언론 기사를 관계도·키워드 트렌드·연관어를 분석하고, 이후 2차 과정에서 260건의 언론 기사 중 최종 74건의 기사를 선별해 가해학생 선도조치 쟁점 사례를 분석했다.

▶▶ [표 3-1] 빅카인즈 검색 조건

'빅카인즈' 검색 조건			
주요 검색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석 기간	2020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분석 언론	서울신문 등 39개사	통합 분류	사회
사건사고 분류	사회, 범죄	상세 검색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처분

3. 분석 결과와 함의

가. 1차 분석 결과 : 빅카인즈 활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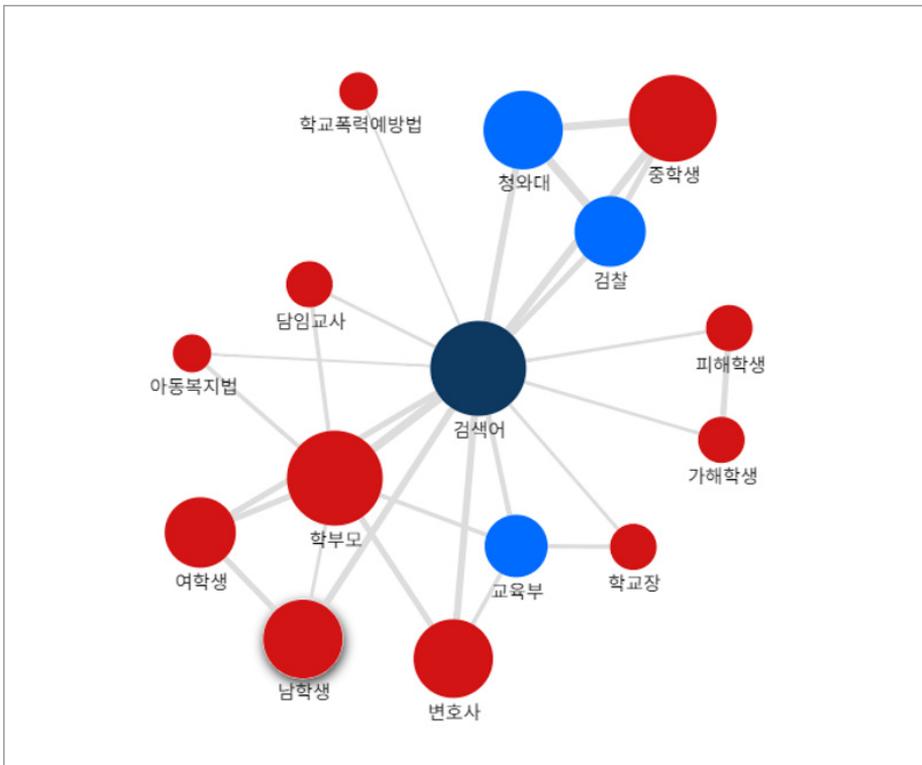
1) 관계도 분석

빅카인즈 관계도 분석은 검색 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기사를 추출하여 개체(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한 기능으로, 이 기능을 통해 본문을 형태소 분석하여 명사 상당어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명사

75)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11개 전국 일간지와 전국 일간지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 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 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등 지역 일간지 28개 지역 언론사 대상으로 분석함.

상당어구에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structured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여 개체명을 재추출했다.⁷⁶⁾ 이때 개체명과 관련된 언론 기사 건수를 고려해 필요한 ‘관련 기사 건수’를 의미하는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빅카인즈 관계도 분석 결과인 아래 [그림 3-1]은 가중치 4 이상 39 이하가 적용된 결과이다.

» [그림 3-1] 관계도 분석 결과



우선 ‘관계도 분석’⁷⁷⁾ 결과를 보면, 개체 중 ‘키워드’는 학부모 → 변호사 → 남학생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고 ‘기관’은 청와대 → 검찰 → 교육부 순으로 나타났다.

76)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2017, p.48 (https://www.kinds.or.kr/manual/%EB%B9%85%EC%B9%B4%EC%9D%B8%EC%A6%88_%EC%82%AC%EC%9A%A9%EC%9E%90%EB%A7%A4%EB%89%B4%EC%96%BC.pdf, 2023.7.31. 최종검색).

77) 관계도 분석이란, 검색한 뉴스에서 추출된 개체(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2017, p.10.

특히, '키워드'에서 '학부모'가 전체 키워드 중 가장 높은 비중치를 보였으며 그 원인으로 언론 기사에서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심의위원회의 선도조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기사가 260건 중 총 107건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관계도 분석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중학생이 관계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중학생들의 가·피해와 관련한 기사가 많았던 걸 알 수 있다.

또, '기관'으로는 '청와대'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학부모가 선도조치 불만에 그치지 않고 일부 사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엄벌을 원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내용을 기사로 다루면서 동종 기사를 포함해 260건 중 47건이 보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⁷⁸⁾ 자체 분석 결과, 47건 기사 중 동종 기사를 하나로 묶어 정리하면 [표 3-2]와 같이 총 12건의 국민청원 사례가 보도된 걸 알 수 있다.⁷⁹⁾

▶▶▶ [표 3-2] 학교폭력 선도조치 기사 중 국민청원게시판 청원 현황

연번	청원 일자	청원인	피해 유형	선도조치	청원 이유
1	'20년 4월 26일	학부모	디지털 성범죄	7호 출석정지 등	선도조치 경미
2	'20년 5월 6일	학부모	디지털 성범죄	7호 출석정지 등	선도조치 경미
3	'20년 7월 30일	학부모	집단 폭행	7호 출석정지 등	선도조치 경미
4	'20년 7월 16일	학부모	동성 간 성폭력	선도조치 미결정	심의판단 불만
5	'20년 12월 15일	학부모	집단 폭행	9호 퇴학	형사처벌 요구
6	'21년 2월 8일	피해학생	디지털 성범죄	미상	심의절차 불만
7	'21년 5월 1일	학부모	집단 폭행	8호 강제전학 등	피해조치 불만
8	'21년 6월 14일	학부모	집단 폭행	7호 출석정지 등	선도조치 경미
9	'21년 7월 5일	학부모	모욕, 명예훼손	7호 출석정지 등	선도조치 경미
10	'21년 12월 2일	학부모	집단폭행	4호 사회봉사 등	신상공개 요구
11	'21년 12월 19일	학부모	상해	학교폭력 아님 결정	심의판단 불만
12	'21년 12월 22일	학부모	폭행	학교폭력 아님 결정	심의판단 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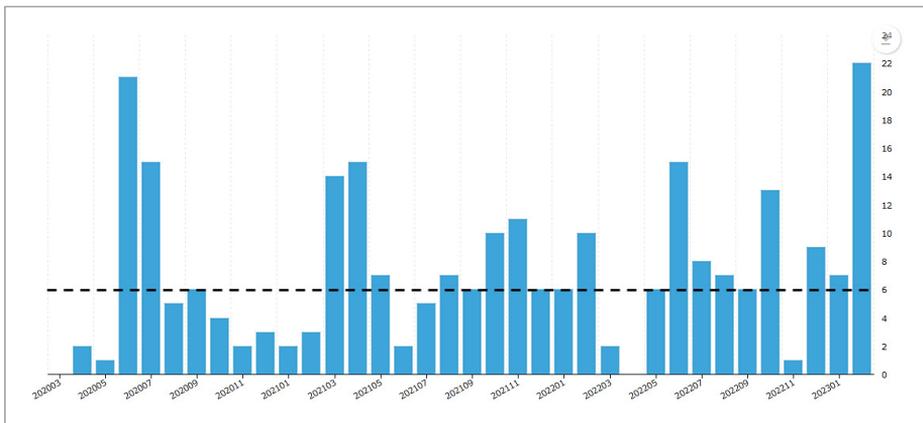
78) 빅카인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검색어로 지정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단어로 '청와대'를 지정해 재검색한 결과, 유사 언론 기사를 포함해 총 47건의 언론 기사를 확인하였다.

79) '학교폭력 선도조치 관련 국민청원 사례 집계'는 빅카인즈에서 보도된 언론 기사 47건을 분석해 유사 기사를 제외하고 분석해 집계한 것임.

2) 키워드 트렌드(Keyword Trend) 분석

검색어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포함된 언론 기사에 대해 ‘키워드 트렌드’⁸⁰⁾ 분석한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키워드 그래프를 살펴보면 분석 기간 중 유독 성범죄 기사가 많았던 2020년 6월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일었던 최근까지 평균 매월 6건 이상의 관련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특히, 매월 2건 이하의 언론 기사가 보도된 월은 36개월 중 8개월에 불과했다. 즉, 성범죄 등 각종 학교폭력 선도조치가 현재까지 꾸준히 언론에서 쟁점이 되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 [그림 3-2] 키워드 분석



[그림 3-2]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기사가 보도된 상위 3개월을 분석해보면, ‘2023년 2월’의 경우 쟁점 기사가 22건 보도되었으며, 당시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이력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동종보도까지 이어져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은 기사가 보도된 ‘2020년 6월’에는 성범죄, 성폭행, 남학생, 음란 메시지 등 주요 키워드를 나타내며 총 21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특히, 포항의 한 고등학생이 SNS에서 여학생 4명에게 지속적인 음담패설을 하였음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선도조치를 결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면서⁸¹⁾ 동종보도를 포함해 성범죄 기사만 16건 보도되

80) 키워드 트렌드는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의 수를 시계열 그래프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2017, p.10.

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 7월', '2021년 4월', '2022년 6월'에는 각 15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2022년 6월은 특히, 초등학교 선도조치에 대한 쟁점 보도가 많았으며, 학교폭력의 자연명화와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통계가⁸²⁾ 이번 쟁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었다.

3)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은 검사 결과 중 건수에 따라 검색어의 연관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WordCloud)로 시각화한 것으로,⁸³⁾ [그림 3-3]은 분석한 언론 기사의 키워드 중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표출한 결과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검색한 결과, 워드 클라우드의 심의위원회·피해 학생·가해자·남학생·학부모·출석정지·사회봉사 등 심의위원회 연관 단어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연관 단어들로 구성되었으며, 관계도 분석처럼, 성폭행, 성추행, 집단폭행과 같은 가해 학생의 주요 연관 단어들도 관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연관어 분석을 통해 주목할 건,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가 불구속 입건과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진 기사가 많았고 또, 국민청원게시판에 가해 학생의 엄벌을 촉구하는 보도 등 청원 관련 보도가 많았던 것에 비해 실질적인 가·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과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연관어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81) 매일신문, "성희롱 '피해-가해' 학생 함께 시험 치르게 한 고교", 2020년 6월 30일자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0063009484752979>, 2023.7.31. 최종검색).

82) 교육부, "[보도자료]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년 9월 6일자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500&lev=0, 2023.7.31. 최종검색>).

83)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2017, p.10.

▶▶ [그림 3-3] 연관어 분석



나. 2차 엑셀(Excel) 분석 : ‘사건’과 ‘사실’ 보도 쟁점

2차 분석에서는 선도조치 결정과 관련해 ‘사건’과 ‘사실’ 두 가지 유형으로 쟁점 사항을 구분했다. 1차 분석 과정에서 표출된 빅카인즈 언론 기사 260건 중 중복 기사와 단순 학교폭력 사안 및 결정 사항, 심의 현황을 제시하는 기사 등을 제외하고 선도조치 결과 관련 불복 쟁점을 다룬 사건 기사와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등 사실 기사를 정리해 총 74건(사건 54건, 사실 20건)의 언론 기사를 추출해 엑셀로 정리했다.

1) 사건 기사 : 선도조치 불복사례 분석

(1) 관련 학생 분석

일단, 총 54건의 선도조치 결정 불복 쟁점 기사 중 나타난 피해 학생의 인원수는 총 83명이었다. 이 중 5건을 제외한 49건이 1인 피해였으며,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총 145명이었는데, 54건 중 20건이 2인 이상 공동으로 학교폭력을 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은 1인 피해가 많았으며, 가해 학생은 집단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피해 학생 인원이 가장 많았던 기사로는 고등학생 13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 6명을 대상으로 SNS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을 저질러 3호 교내봉사(8명), 6호 출석정지(8명), 8호 전학(5명)의 선도조치를 받았으나, 피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을 받지 않은 8명에 대해 조치가 경미하다며 불복의사를 보인 사건이었다.⁸⁴⁾ 또, 고등학생 11명이 피해자 1명에게 기절 놀이 등 집단 괴롭힘을 저질러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심의위원회에서 폭력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는 8호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나머지 동조한 9명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처분해 유가족이 불복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 전원을 처벌한 사건도 있었다.⁸⁵⁾

가·피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급에서는 피해 학생의 경우 고등학생(23건), 중학생(18건), 초등학생(12건), 미상(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24건), 중학생(19건), 초등학생(10건), 미상(1건)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에서 가·피해 학생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에서는 피해 학생의 경우 남성 피해 학생이 31건, 여성 피해 학생이 20건, 미상이 3건으로 남성 피해 학생이 여성 피해 학생보다 다소 많았으며, 가해 학생의 경우 남성 가해 학생이 40건, 여성 가해 학생 8건, 미상이 4건, 남녀 혼성 가해 학생이 1건으로 나타나 언론에 보도되는 선도조치 관련 기사 중 가해 학생 성별의 경우 남성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3-3] 가·피해 학생의 성별, 학교급별 분포 현황

(단위: 건수)

구분	성별					학교급				
	계	여성	남성	혼성	미상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미상
피해 학생	54	20	31	0	3	54	12	18	23	1
가해 학생	54	8	40	2	4	54	10	19	24	4

(2) 학교폭력 유형 분석

선도조치 쟁점 관련 기사 중 어떤 학교폭력 유형이 가장 많았을까? 선도조치 쟁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학교폭력 유형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학교폭력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유형을 적용하였으며,⁸⁶⁾

84) 조선일보, “고교 단톡방서 도 넘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2달간 같은 교실에”, 2022년 7월 6일자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7/06/665KJGRITVGYPMXUUY4NAFK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3.7.31. 최종검색).

85) 머니투데이, “극단 선택한 광주 고교생 ‘학폭’ 가해자 2명 ‘퇴학’, 나머지는 학부모 반발로 미정”, 2021년 8월 20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013421278966>, 2023.7.31. 최종검색).

특히, 한 사건 내에서도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이 존재할 수 있어 두 개 이상의 학교폭력 유형이 포함된 사건이라도 유형별로 분리해 통계에 포함했다. 학교폭력 유형이 이번 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학교폭력 지표와 기사에 드러난 유형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부분이다. 학교폭력 지표는 대표적으로 교육부가 배포하는 수시 통계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꼽는다. 특히, 피해 유형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언어폭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으며, 2018년부터는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을 앞지르는 추세를 보인다. 또, 지난 4월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자료에는 2013년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 학교폭력 유형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달리 신체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13년 66.9% → 21년 35.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또한, 2013년에 비해 2배(13년 5.4% → 21년 11.8%) 가까이 증가했고, 언어폭력은 4배(13년 5.5% → 21년 25.9%)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⁸⁷⁾ 다시 말해,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순이지만,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으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미세하게 앞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가 학교폭력을 접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심의 개최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9월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이후 당해 년도에만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이 28.1%에 불과했고,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이 65%까지 증가하였다. 결국, 현재 학교폭력 신고 사안 중 약 3분의 2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⁸⁸⁾

이번 분석에서도 학교폭력 유형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학교폭력 유형 통계와 다르지 않았다. 분석 결과 선도조치에 불복한 사례의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폭력이

86)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2회 걸쳐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률 등을 설문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등으로 학교폭력 유형을 구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7)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2023년 4월 12일자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66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3.7.31. 최종검색).

88) 교육플러스,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은 ①전체 학폭 신고 사안 65%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2022년 12월 19일자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7>, 2023.7.31. 최종검색).

33건, 성폭력 15건, 사이버폭력 5건, 언어폭력 5건, 집단따돌림 1건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체폭력 외 성폭력이 13건으로 높게 나타났고, 언어폭력이 3건에 불과했던 건, 이슈를 다루는 언론 보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거운 선도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다소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는 기사 내용에 따라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체폭력과 성폭력 유형의 경우 피해가 심각한 사건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4명의 여중생이 몽골 국적 다문화 가정의 동급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집단 폭행하며 동영상 촬영까지 하는 등 가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⁸⁹⁾ 피해 학부모의 선도조치 불복사례가 많은 걸 알 수 있고, 성범죄 경우도 13건 중 8건이나 디지털 성범죄일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민한 인식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사이버폭력의 경우에는 선도조치에 불복한 5건의 사례 모두 인터넷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해 여기에서도 현재 학교폭력 지표에서 사이버폭력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 분석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4] 학교폭력 유형별 보도 건수

구분	학교폭력	기사 건수
1	신체폭력	33
2	성폭력	13
3	사이버폭력	5
4	언어폭력	3
5	집단따돌림	1

(3) 선도조치 유형 분석

선도조치 쟁점과 관련해 가해 학생은 어떤 유형의 선도조치를 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선도조치 결정은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률에서는 동 법 제17조 제1항에서 1호부터 9호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가해 학생 선도조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표 3-5]를 보면 알 수 있다.

89) 서울경제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10대들…성착취물도 찍었다” 2022년 11월 3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HFP5UJW>, 2023.7.31. 최종검색).

▶▶▶ [표 3-5] 학교폭력예방법 중 선도조치 개정 과정

구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선도조치)’ 법 개정 과정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2008년 학교폭력예방법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급 교체	학급 교체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전학	전학	사회봉사
5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사회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7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급 교체
8호	출석정지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전학
9호	퇴학 처분	퇴학 처분	퇴학 처분

2004년 제정 당시 법률을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에서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호 학급교체, 4호 전학, 5호 학교에서의 봉사, 6호 사회봉사, 7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호 출석정지, 9호 퇴학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을 통해 당시 선도조치가 경·중 조치 순이 아닌 단순 나열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2008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서는 일단, 8호 출석정지가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개정됐고, 학교의 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및 제5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도록 했다(법 제17조 제3항).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했다(법 제17조 제8항). 즉, 2008년 개정안을 통해 ‘긴급조치’ 조항이 포함된 걸 알 수 있다. 2012년 개정안은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이어서 대폭 개정했다. 특히,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범위를 성인과 비학생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으며(법 제2조 제1호), [표 3-5]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수정했다. 무엇보다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는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지 못하도록 선도조치를 강화했다(법 제17조 제5항 및 제8항). 이외 이전에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권장 사항이었던 걸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가해 이후 피해자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선도조치를 병과 조치하거나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법 제17조 제1항, 제2항). 특히,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선도조치 대상 범위를 '학생'에서 '학부모'로 확대하면서 처음으로 학부모에게 책무성을 부여하기도 했다(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으로 선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9호 퇴학 처분을 결정할 수 없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선도조치를 결정할 때 상위 조치에서 하위조치로 병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2호와 5호의 경우 단독으로 병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도 54건의 사안 중 24건에서 병과 조치가 이뤄져 한 사건에 포함된 다수 선도조치를 건별로 통계에 포함했다.

일단,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총 54건의 사건 보도에서 나타난 선도조치 결정 현황을 보면, 1호 서면사과(9건),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9건), 3호 교내봉사(11건), 4호 사회봉사(6건),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0건), 6호 출석정지(15건), 7호 학급 교체(3건), 8호 전학(12건), 9호 퇴학 처분(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호 출석정지, 8호 전학, 3호 교내봉사 결정이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던 출석정지 사건을 엑셀로 재분석해보면, 학교폭력 유형에서는 신체폭력(9건), 성폭력(3건), 사이버폭력(2건), 언어폭력(2건) 유형 순으로 나타나 신체폭력이 출석정지의 가장 많은

학교폭력 유형임을 알 수 있고, 가해 학생 인원 분석에서도 15건 중 8건이 집단폭행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또, 학교급에서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던 가해 학생에는 고등학생(7건), 중학생(7건)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은 1건에 그쳤다.

또, 전학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도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유형으로 신체폭력(8건), 성폭력(3건), 사이버폭력(2건), 언어폭력(2건) 순으로 나타나 출석정지와 같이 신체폭력 유형이 많은 걸 알 수 있고, 신체폭력 유형이 많았던 이유 또한 출석정지와 같이 8건 중 5건이 집단 폭행의 유형을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급에서는 출석정지와는 달리 중학생(5건), 고등학생(2건), 초등학생(1건) 순으로 나타나 전학 처분을 받은 사례에서는 가해 학생이 주로 중학생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한편, 가장 중한 조치에 해당하는 퇴학 처분 사건에서도 피해 학생의 선도조치 쟁점이 2건이나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광주 한 고등학생이 동급생 11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가해를 주도한 2명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동조한 9명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어 유족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 학생 11명 모두 형사 처벌한 사건이었다.⁹⁰⁾ 또 한 사례는 인천 한 고등학생이 권투 스파링을 빙자해 폭행을 당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 가해 학생 2명에게 퇴학 처분을 결정했지만⁹¹⁾ 피해 학생측에서 형사 고소한 사건이었다.

» [표 3-6] 학교폭력 선도조치 유형별 보도 현황

선도조치	처분 건수	선도조치	처분 건수
6호 출석정지	15	1호 서면사과	9
8호 전학	12	4호 사회봉사	6
3호 교내봉사	11	7호 학급교체	3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10	9호 퇴학 처분	2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9		

90) 머니투데이, “극단 선택한 광주 고교생 ‘학폭’ 가해자 2명 ‘퇴학’, 나머지는 학부모 반발로 미정”, 2021년 8월 20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013421278966>, 2023. 7.31. 최종검색).

91) 경인일보, “‘스파링 학폭’ 고교생 2명 ‘퇴학’”, 2020년 12월 31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230010006424>, 2023.7.31. 최종검색).

(4) 선도조치 불복 관련 쟁점 분석

선도조치 결정에 따른 가·피해 학생의 쟁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복사례 분석에 앞서 가·피해 학생을 구분하면, 선도조치 쟁점 관련 전체 사건 기사 54건 중 가해 학생의 조치 불복이 11건, 피해 학생의 조치 불복이 43건으로 가해 학생보다 피해 학생의 불복사례 기사가 4배 가까이 많은 걸 알 수 있다. 주로 가해 학생 불복 유형에서는 ‘가해 불인정’(5건), ‘쌍방 가·피해 주장’(4건), ‘과다 조치’(2건) 순의 분포를 보여 가해 학생이 가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피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유형은 ‘경미 조치’(22건), ‘미분리’(9건), ‘쌍방 조치’(6건), ‘무혐의 조치’(5건), 심의 절차 하자(1건) 순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이 선도조치가 가벼워 불복한 사례가 많았다.

▶▶ [표 3-7] 학교폭력 선도조치 불복사례 보도 현황

(단위: 건수)

선도조치 불복 보도 현황			
가해 학생 불복 이유(11)		피해 학생 불복 이유(43)	
가해 불인정	5	경미 조치	22
쌍방 가·피해주장	4	미분리	9
과다 조치	2	쌍방 가·피해결정	6
		무혐의 결정	5
		심의 절차 하자	1

① 가해 학생 불복사례 및 쟁점

가해 학생의 조치 불복 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먼저, ‘가해 불인정’의 경우 총 5건으로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2건), 성폭력(1건), 언어폭력(1건), 집단 따돌림(1건)으로 나타났다. 선도조치 유형으로는 병과 조치를 건별로 분리해 총 5건에 8개의 선도조치가 결정되었으며, 1호 서면사과(3건),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1건), 3호 학교 봉사 6시간 (1건), 5호 특별교육 10시간(1건), 6호 출석정지 5일(1건), 8호 전학(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5건 중 4건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 결과는 4건 중 2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승소하였으며, 1건은 혐의 인정으로 패소, 나머지 1건은 소송 중이었다. 또, 학교급별로는 가·피해 학생

모두 고등학생(2건), 초등학생(2건), 중학생(1건)이었으며, 성별의 경우 피해 학생이 남성(4건), 여성(1건)이었고, 가해 학생의 경우 남성(3건), 여성(2건)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원별 유형에서는 피해 학생의 경우 6명으로 1건만 피해 학생이 2명이었으며, 가해 학생의 경우 1건이 5명으로 총 9명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가해 불인정'의 경우 4건의 소송 중 2건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승소했다는 건, 그만큼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 '가해 불인정' 보도 사례⁹²⁾

"친구 부모 험담한 고교생에...법원 '학폭 인정 안돼'"

친구 부모를 험담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받은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가해학생 처분취소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6일 고교생 A군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B군과 이야기를 하다 C군의 어머니에 대해 험담했다. 이후 C군은 B군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 측은 "C군에게 이야기가 전달될지 몰랐고 직접적인 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둘만의 대화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고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쟁점 사항]

심의위원회는 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없는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험담한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인정해 1호 서면사과 조치 결정. →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처분취소 승소 판결

'쌍방 가·피해 주장'의 경우 학교폭력 유형은 4건 모두 신체폭력으로 나타났으며, 모욕성 언어폭력이 1건 중복으로 포함되었다. 선도조치 유형으로는 병과 조치를 건별로 분리해 3호 학교 봉사(1건), 전학(2건), 6호 출석정지 6일(1건), 8호 전학(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쌍방 가·피해 주장'의 경우 총 4건 중 3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1건이 2년 여간 대법원까지 가면서 최종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판단과 절차하자를 사유로 처분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소송 중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가·피

92) 아시아경제, "친구 부모 험담한 고교생에...법원 '학폭 인정 안돼'", 2022년 6월 7일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0710411619129>, 2023.7.31. 최종검색).

해 학생 모두 고등학생(2건), 중학생(2건)이었고, 초등학생 관련 보도는 없었으며, 성별의 경우 피해 학생의 경우 남성(1건), 여성(3건), 가해 학생의 경우 남성(1건), 여성(2건), 남녀 혼성(1건)으로 나타났다. 인원별에서는 피해 학생의 경우 4명으로 모두 1인 피해였고, 가해 학생의 경우 1건이 4명 가담으로 총 7명을 차지했다. 특히, 기사 내용을 보면 '쌍방 가·피해 주장'의 경우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모면하거나 생활기록부 기재를 지연할 목적으로 피해 학생의 방어 행위조차 가해 행위로 신고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 '쌍방 가·피해 주장' 사례⁹³⁾

"가해자가 왜 잘 살죠?" 학폭 복수극, 현실엔 없다

2020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학교 측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되레 '쌍방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다. A군이 괴롭힘을 방어하면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폭행이라는 게 가해 학생 주장이었다. A군을 절망으로 몰았던 가해 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섰다. 이후 대법원까지 2년여 간 긴 싸움이 이어졌지만, 학교폭력 판단과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심의위원회의 처분 자체가 취소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가해 학생은 "대법원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으니 난 잘못이 없다"며 기세등등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결국 다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건 관계자는 2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시 언급하기를 꺼리는데,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피해 회복도 안될 뿐더러 당장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쟁점 사항]

심의위원회는 동급생을 괴롭힌 행위로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조치를 결정 → 대법원까지 소송 제기 → 처분 취소 판결

'과다 조치'의 경우 학교폭력 유형은 2건 모두 언어폭력이었으며, 그중 1건은 신체 폭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도조치 유형으로는 병과 조치를 건별로 분리해 2호 교내봉사(1건), 8호 전학(2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건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례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1년 여간 모욕해 전학 처분을 받은 사례이고, 1건은 4명의 가해 학생들이 베트남 국적 다문화 가정의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 폭행과 모욕을 한 사례로서 주도한 2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하고 나머지 동조한 2명에게는 교내봉사를 처분하였으며 특히, 2건 모두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됐다. 학교급별로는

93) YTN, "'전학 조치' 가해자가 학교에 다니고, 피해자는 못 가는 기막힌 현실", 2021년 7월 9일자 (https://www.ytn.co.kr/_ln/0115_202107092057251301, 2023.7.31. 최종검색).

가·피해 학생 모두 고등학생, 성별의 경우 가·피해 학생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다. 인원별에서는 피해 학생의 경우 2건에 2명이었지만, 가해 학생의 경우 1건이 4명으로 2건에 5명을 차지했다.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 ‘과다 조치’ 사례⁹⁴⁾

法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일 경북 안동 한 고교생 A군의 부모가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동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A군이 ▷피해 학생의 팔을 치며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갈 것을 요구하고 반찬을 빼앗아 먹거나 ▷다른 교실에 데려가 ‘맛짱뜨자’는 말을 시키고 ▷베트남 출신 학생에게 ‘베트콩’ 등의 말을 시키는 등 신체·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전학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4명의 가해 학생 중 2명에게는 봉사 처분, A군과 다른 한 명에게는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감수성이 부족한 A군이 친구에게 장난치듯이 한 행위”라며 “전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사항]

심의위원회는 남성 다문화 고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가해학생 4명에 대해 8호 전학, 3호 학교 봉사 조치 결정 → 행정심판 제기 → 청구 기각 결정

② 피해 학생 불복사례 및 쟁점

다음으로 피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피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관련 기사는 총 43건으로 ‘경미 조치’(22건), ‘미분리’(9건), ‘쌍방 가·피해 결정’(6건), ‘무혐의 조치’(5건), 심의 절차 하자(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 고소를 진행한 건수는 총 43건 중 15건으로 행정소송은 5건에 불과했다. 즉, 피해 학생의 경우 선도조치 불복에 대한 대안으로 선도조치를 강화해달라는 행정소송보다 엄벌을 원하는 형사 고소를 더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의 조치 불복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경미 조치’의 경우 총 22건 중 학교폭력 유형으로 신체폭력(12건), 성폭력(8건), 사이버폭력(2건), 언어폭력(1건)으로 순으로 신체폭력과 성폭력이 많았으며, 선도조치 별로는 병과 조치를 건별로 분리해 1호 서면사과(2건), 2호 접촉 금지(5건), 3호 학교 봉사(4건), 사회봉사(4건),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6건), 6호 출석정지(12건), 7호 학급 교체(2건), 8호 전학(3건), 9호 퇴학 처분(2건)으로 나타나 이중 ‘출석정지’가 다른 선도조치에 비해 월등하게

94) 매일신문, “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은 정당””, 2021년 9월 2일자 (<https://news.imaail.com/page/view/2021090215154355226>, 2023.7.31. 최종검색).

많은 걸 알 수 있다. 특히, 신체폭력 유형에서는 기절 놀이, 스파링 등 2인 이상의 장난식 폭력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⁹⁵⁾⁹⁶⁾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피해 학생이 선도조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 성폭력의 경우에는 총 8건 중 7건이 디지털 성범죄로,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보내는 학교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피해 학생의 경우 고등학생(7건), 중학생(9건), 초등학생(5건)으로 많았고, 가해 학생의 경우 중학생(10건), 고등학생(6건), 초등학생(4건), 남녀 혼성(1건)으로 많았으며, 성별의 경우 피해 학생의 경우 남성(12건), 여성(10건)이었고, 가해 학생의 경우 남성(19건), 여성(2건), 남녀 혼성(1건)으로 나타나 경미 조치 사안에서 가해 학생 중 남성이 월등하게 많은 걸 알 수 있다. 인원별 유형에서는 피해 학생의 경우 22건에 30명으로 22건 중 3건이 2인 이상이었으며, 가해 학생의 경우 22건에 70명으로 22건 중 11건이 2인 이상 집단 유형, 이 중 1건당 가장 많은 가해 인원은 13명이었다.

▶ 피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 '경미 조치' 보도 사례⁹⁷⁾

“학폭 처벌 솜방망이” 피해 부모 행정소송

같은 반 동급생의 싸움을 말리다 흥기에 찰려 다친 학생(2월 7일자 6면 보도=다툼 말리는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검찰 송치)의 부모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교육 당국의 조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 군은 지난달 9일께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인 B(14)군이 휘두른 흉기에 찰려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B 군은 당시 다른 학생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A 군과 언성을 높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 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B군에게 2호(졸업 시까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4호(사회봉사 8시간), 5호(심리치료 10시간), 6호(출석정지 3일)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A군의 어머니 C씨는 “가해 학생에게 고작 3일의 출석정지가 내려졌다. 이 학생과 우리 아이가 학교를 계속 같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가해 학생과는 화해하지도 않았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군 가족은 지난 9일 심의위원회 결정을 두고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신청(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쟁점 사항]

심의위원회는 싸움을 말리던 동급생을 칼로 찰려 다치게 한 남성 고등학생에게 2호 졸업 시까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 5호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3일 조치를 결정 → 행정심판 제기 → 진행 중

95) 경인일보, “스파링 학폭’고교생 2명 ‘퇴학’”, 2020년 12월 31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230010006424>, 2023.7.31. 최종검색).

96) 국민일보, “1시간 넘게 ‘기절놀이’에 집단구타 징계는 ‘출석정지 5일’”, 2020년 6월 11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8322>, 2023.7.31. 최종검색).

▶ 피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 '경미 조치' 보도 사례⁹⁸⁾**1시간 넘게 '기절 놀이'에 집단구타 징계는 '출석정지 5일'**

전북 전주에서 10대 중·고등학생들이 또래를 집단으로 구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코와 입을 막고 가슴을 압박하는 '기절놀이'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A군(16) 등 8명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군 등은 4월 23일 오후 8시쯤 전주의 한 놀이터에서 B군(15)을 강제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 대부분은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받았다. B군 가족은 이같이 경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B군은 "또 다른 친구도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으로 사과를 받지도 않았는데 출석정지 5일은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쟁점 사항]

심의위원회는 동급생을 상대로 기절 놀이를 하는 등 집단 폭행한 남성 고등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조치 결정 → 형사 고소 → 수사 중

'미분리' 유형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전 긴급조치로 학교가 조치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3호 학교 봉사까지도, 제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와 제6호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미분리'는 사전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선도조치를 의미한다. '미분리'에서는 총 9건 중 신체폭력(5건), 성폭력(3건), 언어폭력(1건) 등으로 나타나 신체폭력과 성폭력 유형이 많은 걸 알 수 있고, 선도조치 유형에서는 병과 조치를 건별로 분리해 2호 접촉 금지(2건), 교내봉사(2건), 5호 특별교육(1건), 8호 전학(2건), 9호 퇴학 처분(1건), 미상(3건) 등 고른 처분을 보여줘 별다른 특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미분리' 관련 보도 사례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징계가 나온 사례가 시선을 끌었다. 전남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한 남성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지속적 집단 성추행을 당해 학교에 신고했으나 급성 취장염으로 사망하면서 유족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97) 경인일보, "'학폭 처벌 솥방망이' 피해 부모 행정소송", 2023년 2월 14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210010001883>, 2023.7.31. 최종검색).

98) 국민일보, "1시간 넘게 '기절놀이'에 집단구타 징계는 '출석정지 5일'", 2022년 6월 11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8322&code=61121211&cp=nv>, 2023.7.31. 최종검색).

분리조치 등 긴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해 학교 교장이 정직 3월, 교감 감봉 1월, 책임교사 견책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⁹⁹⁾ 이외, 학교급별로는 가·피해 학생 모두 고등학생(5건), 중학생(4건)이었으며, 초등학생 관련 보도는 없었고, 성별의 경우 피해 학생의 경우 남성(4건), 여성(4건), 미상(1건), 가해 학생의 경우 남성(7건), 여성(1건), 미상(1건)으로 나타나 가해 학생에서 남성이 월등하게 많은 걸 알 수 있다. 인원별 유형에서는 피해 학생의 경우 9건에 12명으로 9건 중 1건만 2인 이상이었으며, 가해 학생의 경우 9건에 20명으로 9건 중 3건이 2인 이상 집단 유형이고, 이 중 1건당 가장 많은 가해 인원은 6명이었다.

▶ 피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 ‘긴급조치 미분리’ 보도 사례¹⁰⁰⁾

“친구 남친이 성추행” 구미 특목고 여학생 사건에 학교 측 미온 대처로 원성

지난 2021년 10월 29일 구미 A고교에 다니는 B양은 경북 영덕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의 남자친구 C 군이 옆자리에서 치마 속을 만지는 것을 알아채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학교에 도착 후 B양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뒤 룸카페에서 영화를 봤다. 이어 C 군은 또 속옷을 더듬거렸고 이를 거부하자 성추행은 몇 번이고 반복됐다. 이 사실은 C 군의 여자친구와 B양이 학교 보건 교사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회의를 열어 C 군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5시간, Wee 클래스의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각각 2시간씩 내렸다. A고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에도 B양과 C 군을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인 B양이 따돌림을 당하고 사실과 다른 소문이 학교에 퍼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B양의 학부모는 “교장 등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가해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대답뿐이었다”며 “사건 당사자들을 각각 교실과 복도로 분리해 주겠다는 조치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쟁점 사항]

심의위원회는 여성 동급생에게 성추행한 남성 고등학생에게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5호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등 조치 결정 → 학교의 가·피해 학생 긴급조치 ‘분리’ 미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쌍방 가·피해 결정’ 유형에서는 총 6건 중 신체폭력(4건), 사이버폭력(2건)으로 나타났으며, 선도조치 유형에서는 병과 조치를 건별로 분리해 1호 서면사과(2건), 2호 접촉 금지(1건), 3호 학교 봉사(2건), 4호 사회봉사(1건), 8호 전학(2건), 미상(1건)으로

99) 중앙일보, “집단 성추행 뒤 숨진 태한이 보고도 “레슬링”이라 한 부모”, 2020년 10월 23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02286>, 2023.7.31. 최종검색).

100) 세계일보, ““친구 남친이 성추행” 구미 특목고 여학생 사건에 학교 측 미온 대처로 원성”, 2023년 7월 28일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8515935?OutUrl=naver>, 2023.7.31. 최종검색).

나타났다. 특히, ‘쌍방 가·피해 결정’ 사례에서는 행정소송 진행 결과 승소한 보도가 6건 중 3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소송 중 보도였다. 특히, 승소한 3건을 포함해 관련 기사를 분석해보면, 가해 학생 모두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시간 끌기 목적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가해 학생의 주장을 따른 것으로 확인돼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까지 의심받는 사례이기도 했다. 또, 학교급 별로는 가·피해 학생 모두 고등학생(3건), 중학생(2건), 초등학생(1건)으로 많았으며, 성별의 경우 가·피해 학생 모두 남성(4건), 여성(1건), 미상(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별 유형에서는 피해 학생의 경우 6건에 6명으로 모두 1인 피해였고, 가해 학생의 경우 6건에 7명으로 6건 중 1건이 2인 이상 집단 유형이었다.

▶ 피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 ‘쌍방 가·피해 조치’ 사례¹⁰¹⁾

‘ㅋㅋㅋㅋ’ 한줄 썼다고 가해자 된 학폭 피해자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 중학교 3학년 학급 단체채팅방에서 시작됐다. A(15) 군은 반 학생들에게 온라인에서 진행할 중국어 수업에 들어오라고 ‘중국어(중국어의 오타) 수업 들어와’라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대호 군이 ‘?ㅋㅋㅋㅋ’라고 한 줄 썼다. 그리고 일이 터졌다. A 군은 대호 군과의 1대1 채팅방에서 ‘오타 내면 안 돼? ××새끼’, ‘○○년야’ 등 20여 분간 욕설을 퍼부었고, 전화도 수차례 걸었다. 대호 군은 공포감을 느꼈다. 한 달 전에는 대호 군의 불편을 빌려 갔던 A 군이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를 망가뜨렸는데 변상을 미룬 일도 있었다.

지난 2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두 학생 모두를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두 학생은 똑같은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았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8월, 심의위원회 측은 “대호 군의 문자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ㅋㅋㅋㅋ’는 순간적으로 나온 웃음으로, 놀리는 게 아닌 묻는 의도로 보이며 댓글에서 상투적으로 흔히 쓰인다는 점을 감안했다.

[쟁점 사항]

심의위원회는 단체대화방에서 동급생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가해 행위를 한 남성 중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게도 가해학생에게 ‘ㅋㅋㅋㅋ’를 써서 놀렸다는 이유로 1호 서면사과 조치 결정 → 행정심판 제기 → 처분 취소 결정

‘무혐의 결정’ 유형에서는 학교폭력 유형별로 신체폭력(4건), 성폭력(1건), 사이버폭력(1건)으로 나타났으며, 5건 모두 증거 불충분 사유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한 사안이었고, 그중 1건은 안전사고로 판단한 사안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북 한

101) 서울신문, “‘ㅋㅋㅋㅋ’ 한줄 썼다고 가해자 된 학폭 피해자(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12월 5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5001008&wlog_tag3=naver, 2023.7.31. 최종검색).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학교에서 아동학대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다룬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전북 한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을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사고’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무혐의 결정 이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기사에서는 5건 모두 소송 관련 보도는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가·피해 학생 모두 초등학생(3건), 고등학생(2건) 순이었고, 인원별로는 5건 모두 1인 피해였으며, 가해 학생만 1건이 2인 사례였다.

‘심의 절차 하자’ 유형은 단 1건 보도되었는데, 선도조치 결과 통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가·피해 학생에게 이름을 바꿔 통보한 해프닝을 다룬 사례였다. 하지만 이 사건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설 기사 : 선도조치 논평 분석

(1) 사설 기사 : 문제 제기 및 방안 제시 분석

사설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주제에 맞춰 ‘문제 제기’와 ‘방안 제시’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연구 방향에 맞는 기사를 선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선도조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기사는 제외하였으며 특히, 단순 선도조치 통계 현황을 제시하거나 관련기관을 홍보하는 등의 기사는 제외했다. 이렇게 선별한 결과 총 20건의 사설 보도 기사를 추출하였으며, ‘문제 제기’ 관련 기사가 14건, ‘방안 제시’ 관련 기사 6건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표 3-8] 학교폭력 선도조치 쟁점 관련 사설 보도 현황

(단위: 건수)

선도조치 관련 사설 보도 현황				
‘문제 제기’ 보도(14건)				‘방안 제시’ 보도(6)
전문성 부족	소송	피해 보호	기타	제도 방안
5	4	1	4	6

먼저, ‘문제 제기’ 기사를 분석한 결과,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역량 중 하나인 ‘전문성’ 부족에 관한 문제 제기가 14건 중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적용하는 선도조치 고시별 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가지 요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교육지원청별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동종 사안이라도 다른 선도조치가 결정되고 또, 반성과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심의 원칙과 기준조차 없어 실효성 없는 선도조치가 내려지는가 하면, 욕설이나 놀림 같은 언어폭력의 경우 40%가 입증이나 진위 파악이 어려워 과소 처분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¹⁰²⁾ 특히, 학부모 위원들의 자격 문제와 함께 외부전문가의 학폭위 참여 비율이 낮다는 것도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한 기사에서 보도되었으며,¹⁰³⁾ 또, 심의위원회 담당 교원과 위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의 개최 지연 사태가 증가하면서 피해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의 문제도 심의위원회 ‘전문성’과 관련해 보도되었다.¹⁰⁴⁾

‘전문성’에 이어 문제 제기 사실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기사는 바로 ‘학교폭력 소송’이었다. 이와 같은 기사는 4건으로 현재 학교폭력 소송비용은 건당 300만에서 5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으며, 증거수집 요령과 승소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광고 문구까지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¹⁰⁵⁾ 아예 선도조치 처분 수위를 낮춰준다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기사도 있었다.¹⁰⁶⁾ 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까지 신설했다는 기사도 있었고,¹⁰⁷⁾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서면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등 조치에 대한 헌법 소원 결과 합헌 결정을 소개한 기사도 눈에

102) 서울신문, “[단독] 반성문만 쓰면 ‘숨방망이’ 피해자 올리는 ‘고무줄’ 학폭 처분[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12월 12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12008006&wlog_tag3=naver, 2023.7.31. 최종검색).

103) 충청투데이, “외부전문가 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객관성 확보할 수 있나”, 2020년 10월 14일자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485>, 2023.7.31. 최종검색).

104) 경인일보, “[긴급진단] 인력 모자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21년 11월 3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102010000481>, 2023.7.31. 최종검색).

105) 서울신문, ““건당 300만~500만원” 증거수집 요령 주며 학폭 판 키우는 ‘조력자들’[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12월 5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5008003>, 2023.7.31. 최종검색).

106) 동아일보, ““가해학생 처분 수위 낮춰드려요”…‘학폭 전문 변호사 성행’”, 2022년 10월 10일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9/115875569/1>, 2023.7.31. 최종검색).

107) 머니투데이,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소송’전담 재판부 신설”, 2023년 2월 27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714304392719>, 2023.7.31. 최종검색).

떡었다.¹⁰⁸⁾ 결국, ‘소송’ 사설 기사의 핵심은 2차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즉, 소송으로 인해 선도조치 이행이 일시 중지되면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하고 2차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 구조를 핵심문제로 보았다.¹⁰⁹⁾

이외, 문제 제기 사설에서는 최근 프로 스포츠 구단들이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가장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게 학교폭력이라며, 학교폭력 자체가 하나의 ‘블레임 룩(Blame look)’ 현상을 보여 학교폭력 사안이 구단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을지 고민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으며, 한 기사에서는 선도조치 중 중징계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학교가 학교폭력을 학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신기도 했다.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시·군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늘 고민이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에 비례해 행정소송·심판까지 증가하다 보니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학부모 위원 구성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이상 연수를 통해 교육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또, 선도조치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고시별 세부 기준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및 객관성 부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관련 학생에게는 예민한 문제이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선도조치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선도조치 중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서면사과와 같은 현장에서 점점 실효성을 잃는 선도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도 타당해 보인다. 실질적으로 피해 학생이 피해회복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태도가 회복과 학업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해 학생의 선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학교측의 통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감독 역할도 할

108) 강원일보, “현재 “학폭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교체 조치는 합헌””, 2023년 2월 28일자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22808130035304>, 2023.7.31. 최종검색).

109) 경인일보, “폭력에 멍든 학교…때린 자와 맞은 자 분리 ‘아직’”, 2021년 3월 19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318010004097>, 2023.7.31. 최종검색).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이후 교사와 전문가들은 향후 학교폭력과 관련해 줄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가해 학생이 선도조치 결정 이후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했을 때 가·피해 학생의 분리 방안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 개정과 교육부 고시를 통해서라도 소송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대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도조치와 관련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시설이 많지 않았던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선도조치 쟁점 관련 사건 유형에서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의 미분리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가 7건이나 있었지만, 정작 사설 보도에서는 20건 중 한 건에 불과했고, 그것도 피해 보호 주제만 다루지 않고 다른 쟁점과 함께 다뤘다는 건 언론의 인식 문제보다 사회가 가지는 대중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방안 제시’와 관련해서는 총 6건의 기사 모두 선도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방안’을 보도하는 기사였다. 딱히 유형이 많고 적음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건별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는데 먼저,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소개하였으며,¹¹⁰⁾ 또, 초등1·2학년에 대해서는 공동체 경험이 부족하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미숙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처분해야 한다는 기사도 있었다.¹¹¹⁾ 또, 특별교육과 같은 선도조치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책무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다.¹¹²⁾ 무엇보다 방안 제시에서는 문제 제기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었던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련해 전문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심의 전후 단계에서 관계회복지원단을 꾸려 가·피해 학생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서울교육청에서는 운동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선도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게 선수자격을 박탈하는 엄벌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10) 한국일보, “‘수능만 잘 보면 합격 OK?’… 학폭 가해자 못 거르는 ‘정시모집’”, 2023년 2월 28일자(<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716560003687>, 2023.7.31. 최종검색).

111) 서울신문, “[단독] ‘처분대상서 초등 1~2학년 제외’”, 2023년 1월 16일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81/0003332514?date=20230116>, 2023.7.31. 최종검색).

112) 파이낸셜 뉴스, “‘주먹구구식’ 학폭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2021년 3월 8일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3071709594483>, 2023.7.31. 최종검색).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엄벌주의를 표방해 교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피해 보호의 공백을 마련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의무화가 시행되었을 때 가·피해 학생 간 갈등 조정과 화해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 운동부 학교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시행 예정인 운동부 학생들의 선수 활동 제한과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문제는 학생을 중심으로 시행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은 보호자와 감독자의 부재에서 비롯된 사례가 많고 특히, 운동부의 경우 감독이나 코치의 관리 문제로 빚어져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가 먼저 도입되어야 운동부 학교폭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해 6만2,05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는 3만 8,540건이고, 교육청 심의는 2만 3,602건이다.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전체 학교폭력 사례 중 ‘맞푼’이 절반에 이른다는 말도 나온다. 결국, ‘맞푼’ 현상은 학부모가 아이들의 가방에 액션캠을 달도록 만들었다.¹¹³⁾ ‘증거 불충분’이 학교폭력 인정과 선도조치 결정에 영향을 주면서 학부모 사이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무리수가 등장한 셈이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부는 교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을 위해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는 ‘학교폭력 제로 센터’ 설치안을 내놓았다.¹¹⁴⁾ 교육부는 또 한 번 교사, 학부모를 개입시켜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인 듯 보인다. 중요한 건, 아직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선도조치의 효과성을 높일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도조치 쟁점의 핵심은 가·피해 학생의 선도조치 불복 이유였다. 가해 학생의 경우 ‘가해 불인정’이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고, 피해 학생의 경우 ‘경미 조치’에

113) 동아일보, “학폭 가해자 ‘맞푼’ 늘자… “증거 확보” 액션캠 달아 학교 보내”, 2023년 5월 13일자(<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512/119269877/1>, 2023.7.31. 최종검색).

114) 세계일보, “‘정순신 사태’ 계기…교육부,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립 추진”, 2023년 7월 17일자(<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17523352?OutUrl=naver>, 2023.7.31. 최종검색).

대해 불복사례가 많았지만, 특히, 선도조치 쟁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해 학생보다는 피해 학생의 요구에서 대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피해 학생의 경우, '경미 조치', '미분리', '쌍방 가·피해 결정'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피해 학생의 최대 관심사는 가해 학생을 다시 마주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경미 조치'의 사례가 많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선도조치가 전학이나 퇴학 같은 완전한 분리가 아닌 선도조치 이행 이후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복하는 이유가 다수였던 걸 고민해야 한다. '미분리' 또한 다르지 않았다.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사전 긴급조치로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 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등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피해 학생 간 분리를 위해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6호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이러한 긴급조치를 결정하지 않아 '미분리'에 대한 불복사례가 많았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또, 사설에서 나타난 다수의 문제 제기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기사였다. 학교폭력 선도조치가 근본적으로는 피해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이자 가해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대학입시에 영향까지 줄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임에도 언론 기사에서는 여전히 심의위원회의 개최 지연과 심의과정에서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국, 심의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다수의 보도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쟁점 분석은 심의위원회의 선도조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 고민의 첫 번째는 '인식'이다. 현재 학교폭력 선도조치는 분석 과정에서 선별한 사건 54건 중 12건이 피해 학생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하였고, 54건 중 13건이 가·피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또, 선도조치 결정에도 모자라 피해 학생이 형사 고소한 건도 9건이나 되었다. 즉, 54건 중 22건이 선도조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단순한 교내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전문성'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건, 반대로 절차나 결정에

서 공정과 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전문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즉,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심의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전문성을 갖추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에 있어서 현행 구성원으로 극복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 책임교사의 근무환경과 성과 인정 제도를 검토해야 하며 또, 심의위원회 담당 교원의 인력 확충은 절대적인 검토 대상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해회복’이다. 이렇게 학교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또, 사안 처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을 갖췄다면 이제 남은 건 선도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피해회복’일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후 ‘관계회복지원단’을 꾸려 가·피해 학생의 갈등 해소를 돕고 있다. 이 시점에서 관계회복지원단 같은 별도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선도조치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 한 언론에서는 지난해 학교폭력을 저질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오른 가해 학생 중 9.3%가 이전에도 학교폭력을 저질러 선도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해 학생 10명 1명꼴로 심의위원회 처분을 받고도 또 가해 행위를 했다는 걸 의미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상습 가해’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¹¹⁵⁾ 학교폭력 사안 절차와 심의위원회 심의의 핵심이 ‘공정’과 ‘전문성’에 있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인정된 이후에는 피해자를 향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의미한다. 즉, 선도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해 학생을 원래의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피해 학생은 피해 이전으로 되돌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115) 동아일보, “학폭위 처분받은 학생 9%는 상습가해”, 2023년 6월 15일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15/119773446/1>, 2023.7.31. 최종검색).

제 4 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정책

김민규

제4장

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정책

제1절 | 영국의 현황 및 대응¹¹⁶⁾

1. 영국의 학교폭력 현황

잉글랜드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에 의하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말의 기간 동안에 조사에 참가한 10세~15세 거주 어린이(2,793명)¹¹⁷⁾ 중 약 17%가 지난 12개월 사이에 '괴롭힘(bullying)¹¹⁸⁾'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¹¹⁹⁾

116) 영국 정책 동향 파악은 명지대학교 이유경 객원교수의 자문을 받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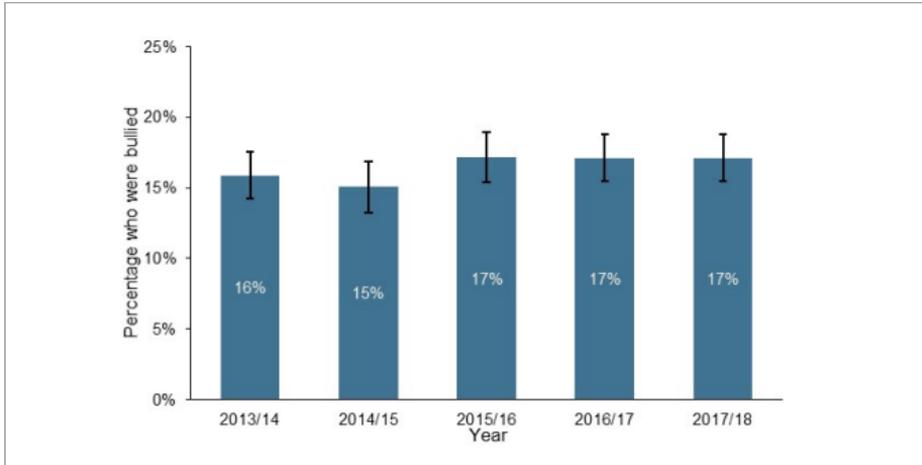
117) 참고로 잉글랜드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웨일즈 지역에서 응답한 수는 제외하였다고 하며, 2013/14 응답자는 2,674명, 2014/15 응답자는 2,181명, 2015/16은 2,580명, 2016/17은 2,824명이 조사에 참가하였다. 위 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DfE), 「Bullying in England, April 2013 to March 2018. Analysis on 10 to 15 year olds from the Crime Survey for England & Wales」, 2018.11, 4면 이하 참조. 원문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19474/Bullying_in_England_2013-2018__1_.pd.pdf (2023.8.10. 최종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118) 'bullying'은 괴롭힘 외에도 따돌림, 폭력 등 여러 의미로 번역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괴롭힘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119) DfE, 앞의 「Bullying in England, April 2013 to March 2018」, p.5.

▶▶ [그림 4-1] 지난 12개월간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

(단위: %)



주: 백분율은 전체 아동 중 '예'라고 대답한 아동의 비율이며, 여기에는 '모르겠다(4%)'와 '대답하고 싶지 않다 (2%)'라고 답한 아동이 포함됨. 백분율은 가독성을 위하여 반올림/내림한 수치임. 신뢰구간 95%임
출처: DfE, 앞의 「Bullying in England, April 2013 to March 2018」, p.5의 [Figure 1] 및 주를 발췌하였음

위 그림에 의하면 2014/15년도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괴롭힘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3%는 학교(학교 운동장, 스쿨버스 및 수학여행을 포함한다)에서 모든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3%는 괴롭힘 중에 일부 유형이 학교에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11%만이 학교에서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¹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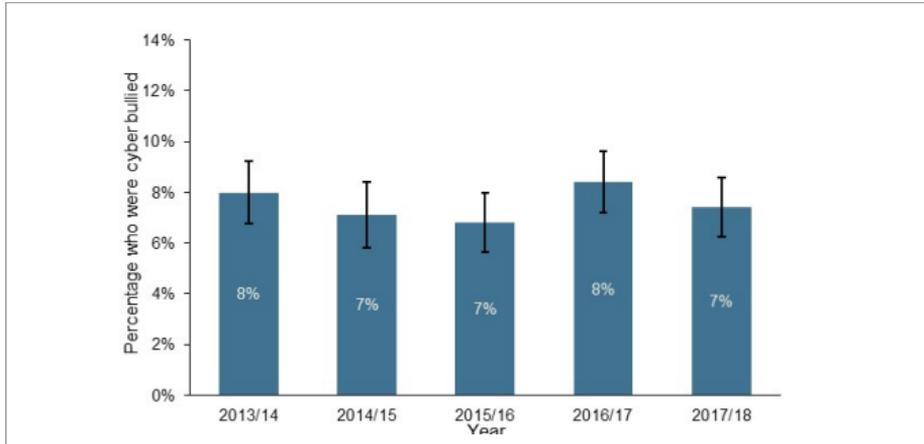
한편, 2017년 월 1일부터 2018년 3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을 경험한 학생 통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약 7%로 조사되었는데, 이 역시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된다.¹²¹⁾

120) DfE, 앞의 「Bullying in England, April 2013 to March 2018」, p.15.

121) DfE, 앞의 「Bullying in England, April 2013 to March 2018」, p.17.

▶▶ [그림 4-2] 지난 12개월간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

(단위: %)



주: 백분율은 전체 아동 중 '예'라고 대답한 아동의 비율이며, 여기에는 '모르겠다(2%)'와 '대답하고 싶지 않다(1%)'라고 답한 아동이 포함됨. 백분율은 가독성을 위하여 반올림/내림한 수치임. 신뢰구간 95%임
출처: DfE, 앞의 「Bullying in England, April 2013 to March 2018」, 17면의 [Figure 17] 및 주를 발췌하였음

위 조사에서 2018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응답자 중 71%는 학교가 괴롭힘 문제에 잘 대응하였다고 응답하였다('아주 잘'은 30%, '다소 잘'은 41%).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은 17%('별로'가 13%, '나쁘게'는 4%)의 응답자는 학교의 대응이 좋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어린이가 5%,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어린이는 6%, "대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어린이는 1% 미만이었다고 한다.¹²²⁾

그러나 범위를 영국 전역으로 확장하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 보인다. 예컨대, 'Ditch the Label'이라는 청소년 지원 자선단체가 매년 수행하는 '연례 괴롭힘 조사(The Annual Bullying Survey)' 2020년 판에 의하면, 영국 전역(주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12~18세 청소년 13,387명에 대하여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25%가 지난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괴롭힘을 경험하였고, 26%는 괴롭힘을 목격하였으며, 3%는 타인을 괴롭혔다고 응답하였다.¹²³⁾ 주요 유형으

122) DfE, 앞의 「Bullying in England, April 2013 to March 2018」, p.19.

123) Ditch the Label, 「Annual Bullying Survey 2020」, 2020, pp.8~14. 해당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tch the Label' 홈페이지, https://dtl-beta-website-assets.s3.amazonaws.com/The_Annual_Bullying_Survey_2020_2_a8a474bb3f.pdf (2023.8.10. 최종검색) 참조.

로는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 89%, 언어적 괴롭힘 86%, 악의적 소문내기(Rumours) 54%, 위협(intimidation)이 35%, 사이버 폭력(Cyber Bullying)이 27%였으며, 협박(threatened) 24%, 신체적 공격(Physical assault) 24%, 조종(manipulation) 19%,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괴롭힘(in Online games) 11% 등으로 조사되었다.¹²⁴⁾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는 영국에서도 큰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2. 영국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영국은 각 지역별로 법률과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각급 학교도 학생 보호 및 학교 운영과 학생 징계를 위한 독자적인 ‘행동지침(School behaviour policy)’을 준비하여야 한다.¹²⁵⁾

핵심이 되는 법률은 2006년 제정된 「교육 및 검사에 관한 법(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이다. 이 법률은 영국 내의 모든 초중고교 및 직업학교 등에 재학 중인 모든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영국 정부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²⁶⁾ 특히 제89조 제1항은 학생들이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고 모든 형태의 학생 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행동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90조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에게 부과하는 ‘징계조치(disciplinary penalty)’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제91조 이하에서 이러한 징계조치의 종류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잉글랜드의 경우 학교 및 대학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의 아동 안전유지(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2022)」 지침이 존재한다. 이 지침은 학교와 대학에서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학교가 수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들을 명시한 것이다.¹²⁷⁾ 또한 동지침은 관리 기관 등에게 아동 복지의

124) Ditch the Label, 앞의 「Annual Bullying Survey 2020」, p.16.

125) 영국정부 홈페이지(Gov.UK), “Behaviour in schools: sanctions and exclusions” (<https://www.gov.uk/school-behaviour-exclusions/print>, 2023.8.10. 최종검색).

126)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Introductory Text”,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0/introduction>, 2023.8.10. 최종검색).

127) 영국교육부(DfE), 「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2023. Statutory guidance for schools and colleges」, 2023, pp.3-5. “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2022” 지침이 최근 개정되어, 2023년 9월부터 “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2023”이 시행될 예정이다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는 사이버 괴롭힘이나 차별적인 따돌림을 포함한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²⁸⁾

한편,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방에서는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써 「학교에서의 괴롭힘에 관한 법(Addressing Bullying in Schools Act 2016)」을 2016년에 제정하였다. 동법 제1조는 ‘괴롭힘(bullying)’의 개념을 말이나 글, 전자통신 방식을 사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⁹⁾ 동법은 또한 공립학교 교장의 의무, 괴롭힘을 기록하여 보관할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아일랜드는 위 법률에 기초하여 2022년 1월에 「괴롭힘에 대한 효과적 대응(Effective Responses to Bullying Behaviour)」이란 지침을 발표하였다.¹³⁰⁾ 동 지침은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방법,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괴롭힘)을 4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별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단계는 낮은 수준의 괴롭힘에 대한 대응으로서 괴롭힘 등을 한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반성하여 다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개입단계이다.¹³¹⁾ 2단계는 학생 개인보다는 보다 큰 그룹 내지 학급에 대한 개입을 의미한다.¹³²⁾ 3단계는 더 나아가 보다 복합적인 괴롭힘 상황(complex bullying behaviour)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동보호교사, 학습지원 코디네이터 등이 위험 평가 및 위험감소조치계획(Risk Reduction Action Plan, RRAP)에 참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결정하는 단계이다.¹³³⁾ 마지막 4단계는 고위험 행위에 대한 개입(High Risk Interventions)을 위한 것으로서 심각한 괴롭힘에

ile/1161273/Keeping_children_safe_in_education_2023_-_statutory_guidance_for_schools_and_colleges.pdf. 2023.8.10. 최종검색) 참조.

128) 영국교육부(DfE), 앞의 「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2023」, p.27.

129) Addressing Bullying in Schools Act (Northern Ireland) 2016.

130) DfE/EA/ni ABF, 「Effective Responses to Bullying Behaviour」, 2022.1, p.2.

131) DfE/EA/ni ABF, 앞의 「Effective Responses to Bullying Behaviour」, p.22.

132) DfE/EA/ni ABF, 앞의 「Effective Responses to Bullying Behaviour」, p.23.

133) DfE/EA/ni ABF, 앞의 「Effective Responses to Bullying Behaviour」, p.24.

대한 학교의 학생의 학생 안전보장 절차(the school's Safeguarding and Child Protection Policy and Procedures)가 수행되어야 한다.¹³⁴⁾

3. 가해학생 조치

가. 법률상 허용되는 제재

학교의 교사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고 기대되는 행동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의 부과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 학생에 대한 제재 결정은 학교장(headteacher)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교직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2) 제재 부과 결정과 제재의 실시는 학교 내에서 또는 교직원의 감독 하에 있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고, 3) 특히 교육적 필요 및 인권을 고려하여 타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¹³⁵⁾

한편,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Sanctions)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이 고려될 수 있다.¹³⁶⁾

- 구두 경고
- 집으로 편지 송부
- 교실에서의 배제(퇴거)
- 방과 후 교육(Detention)
- 정학(suspension) 또는 퇴학(permanent exclusion)

위 제재 중 '방과 후 교육(Detention)'은 학칙 위반 등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이후에 특정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도록 하면서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¹³⁷⁾ 정학은

134) DfE/EA/ni ABF, 앞의 「Effective Responses to Bullying Behaviour」, pp.24-25.
135) 영국교육부(DfE), 「Behaviour and discipline in schools. Advice for headteachers and school staff」, 2013.7, p.8.
136) 영국정부 홈페이지(Gov.UK), "Behaviour in schools: sanctions and exclusions" (<https://www.gov.uk/school-behaviour-exclusions/print>, 2023.8.10. 최종검색).
137) 영국정부 홈페이지(Gov.UK), "Behaviour in schools: sanctions and exclusions" (<https://www.gov.uk/school-behaviour-exclusions/print>, 2023.8.10. 최종검색).

최대 45일까지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2021/22 학년도를 기준으로 퇴학이 약 6,500건(0.8%), 정학은 약 578,280건(6.91%) 정도 발생하여 전체 학생 1만명당 대략 8%가 정학이나 퇴학과 같은 강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⁸⁾

이 외에도 교사나 권한이 있는 자는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수색이나 금지물품에 대한 압수를 할 수 있다.¹³⁹⁾ 즉, 학생이 칼이나 무기, 술, 불법약물, 도난물품 등이나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물건, 또는 담배나 음란물과 같이 학칙으로 금지하는 물건 등 금지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가 있는 경우, 학생에 대한 수색(search)을 할 수 있다.¹⁴⁰⁾ 한편,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거나, 금지물품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범죄에 연관이 있는 증거물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압수(Confiscation)할 수 있다.¹⁴¹⁾

나. 사이버 폭력의 제재

학교는 학생이 온라인상에서 한 행위가 다른 학생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온라인상에서의 학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¹⁴²⁾

한편, 학교는 핸드폰의 사용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즉 학칙에서 수업일 전체 또는 일시적으로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¹⁴³⁾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나 경찰관 또는 학교 경찰(Safer School Police Officers)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내용을 수색할 수 있다. 수색 대상에는

138) 영국정부 홈페이지(Gov.UK), “Permanent exclusions and suspensions in England”, 2023.7.20.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permanent-and-fixed-period-exclusions-in-england>, 2023.8.10. 최종검색).

139) DfE, 「Searching, Screening and Confiscation. Advice for schools」, 2022.7, p.4.

140) DfE, 앞의 「Searching, Screening and Confiscation. Advice for schools」, p.7.

141) DfE, 앞의 「Searching, Screening and Confiscation. Advice for schools」, p.17.

142) 영국정부 홈페이지(Gov.UK), “Behaviour in schools: sanctions and exclusions”, <https://www.gov.uk/school-behaviour-exclusions/print> (2023.8.10. 최종검색).

143) 영국정부 홈페이지(Gov.UK), “Behaviour in schools: sanctions and exclusions”, <https://www.gov.uk/school-behaviour-exclusions/print> (2023.8.10. 최종검색) 참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파일이나 데이터, 예컨대 아동음란물이나 음란물, 학대로 의심되는 모욕적 메시지·이미지·동영상 등이 포함된다.¹⁴⁴⁾ 다만, 수색을 수행한 담당자는 해당 아동음란물이나 이미지 등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인쇄, 저장, 공유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이를 경찰 등 적합한 담당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¹⁴⁵⁾

4. 소결

전술한 것과 같이 영국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북아일랜드가 최근 제정한 법률과 지침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대응책 및 절차를 행위의 심각성 및 대상자 범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점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행위의 정도가 매우 사소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곤란한 정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경우(Level 1)라면 조기에 교육적인 조치를 통해 개입하는 점도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¹⁴⁶⁾

한편, 사이버 폭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미 학칙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절 | 프랑스의 현황 및 대응¹⁴⁷⁾

1. 프랑스의 학교폭력 현황

프랑스 국립 통계경제연구소(The French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EE)에 의하면, 2018~2019학년도에 중·고교 교장으로부터 보

144) DfE, 「Searching, Screening and Confiscation. Advice for schools」, 2022.7, pp.19~20.

145) DfE, 「Searching, Screening and Confiscation. Advice for schools」, 2022.7, p.19.

146) DfE/EA/ni ABF, 앞의 「Effective Responses to Bullying Behaviour」, p.22.

147) 프랑스어 자료의 번역 및 동향 파악은 계명대학교 김택수 교수의 자문을 받아 수행함.

고된 심각한 사고 건수는 학생 1,000명당 12.2건이었다고 한다.¹⁴⁸⁾ 이 중 타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 행위가 전체의 79.3%였는데, 구체적으로 언어적 폭력이 41.8%, 신체적 폭력은 29.8%이었고, 기타 유형이 7.7%이었다. 이에 비해, 재산상 침해의 경우는 7.1%로 조사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4-1] 2018-2019학년도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 사건의 성격

(단위: %)

사람에 대한 공격	
언어적 폭력	41.8
신체적 폭력	29.8
사람에 대한 기타 유형의 침해*	7.7
재산적 침해**	7.1
안전에 대한 침해(Atteinte à la sécurité)	
알코올/마약 사용 또는 거래	4.7
기타 침해(Autres atteintes)***	8.8

* 사생활 침해(특히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성적 폭력, 갈취(racket), 촬영 목적의 '문지마 폭행'(happy slapping), 신고식(bizutage) 등

** 절도, 건물, 물건, 사적 재산의 손상 등

*** 칼, 총기 등 무기 소지, 위험한 물건 휴대, 비폭력적 침입, 자살 또는 자살시도, 세속주의 공격을 포함한 기타 폭력 행위(autre fait de violence dont atteinte à la laïcité)

출처: Insee Références, 앞의 「Sécurité et société」 Édition 2021, 155면, 표-1(Nature des incidents graves dans les collèges et les lycées, en 2018-2019)을 발췌하여 번역함. 위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통계의 원출처는 MENJS-DEPP의 설문조사(enquête Sivas 2018-2019)임.

이에 대해 학생이 보고한 폭력 유형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가벼운 폭력 유형이 포함된다. 2016-17학년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2.7%의 학생과 2017-18학년도에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42.3%의 학생은 '학용품이나 개인물품, 또는 금전의 도난'을 신고하여, 재산적 침해가 신고된 폭력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¹⁴⁹⁾ 같은 조사에서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5명 중 1명은 1년 동안 1회 이상의 차별적인 모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⁵⁰⁾ 한편, 2016-17학년도 중학생 및 2017-18학년도 고등학생 대상 조사에서 사이버 폭력 피해를 신고한 비율은

148) Insee Références, 「Sécurité et société」 Édition 2021, 2021, p.154.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fichier/5763633/IREF_SECUR21.pdf, 2023.8.10. 최종검색).

149) Insee Références, 앞의 「Sécurité et société」 Édition 2021, p.154.

150) Insee Références, 앞의 「Sécurité et société」 Édition 2021, p.154.

각각 17.8%와 14.2%였다.¹⁵¹⁾

2. 프랑스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프랑스 정부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한 명 이상의 학생이 다른 급우에게 가하는 반복적인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²⁾ 이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학교에서의 폭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괴롭힘’의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며, 2010년대 들어서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한다.¹⁵³⁾

그러다 2022년에는 학교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동 법률의 정식명칭은 「학교에서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2022년 3월 2일 법률(LOI n° 2022-299 du 2 mars 2022 visant à combattre le harcèlement scolaire)」이다. 이 법률은 그 자체로 적용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학교폭력 방지 및 괴롭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형사사법법(code de la justice pénale des mineurs)」 등 법률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게 하는 일종의 법률 개정을 위한 시행입법이라 할 수 있다.¹⁵⁴⁾ 위 법률 제1조에 따라 프랑스 「교육법」 제111-6조는 모든 프랑스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교육기관(학교)에서는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형법의 개정이다. 위 법률 제11조에

151) Insee Références, 앞의 「Sécurité et société」 Édition 2021, p.155, 표-3(Part de collégiens et de lycéens déclarant des violences au cours de l'année scolaire) 참조. 이 조사에서의 ‘사이버 폭력’에는 ‘촬영 목적 문자나 폭행(happy slapping)’, ‘모욕적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인터넷 신분 도용’, ‘SNS 상에서의 모욕, 조롱’ 등이 포함된다(표-3의 주 3 참조).

152)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De nouvelles mesures contre le harcèlement scolaire”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de-nouvelles-mesures-contre-le-harcèlement-scolaire>, 2023.8.10. 최종검색) 참조.

153) 이영란/김민, “청소년폭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 청소년 도시폭력과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8권 제4호, 2019, pp.205-206.

154) 이 법률의 원문은 프랑스 법률정보 홈페이지, “LOI n° 2022-299 du 2 mars 2022 visant à combattre le harcèlement scolaire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45287658>, 2023.8.10. 최종검색) 참조.

따라 프랑스 「형법」 제222-33-2-3조¹⁵⁵⁾가 신설되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교육시설(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을 상대로 정신적인 괴롭힘이 가해진 결과, 8일 이하의 노동력 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및 4만5천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제2항), 만약 8일을 초과하는 노동력 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및 7만5천 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된다(제3항). 더 나아가 만약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하도록 이끈 경우'에는 무려 10년 이하의 구금형 및 1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여, 두 배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이는 그간 프랑스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기조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적 담론을 중시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되던 것¹⁵⁶⁾과는 다소 다른 기조인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학교에서의 폭력에 대한 교육적 처분보다 처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고까지 평가될 것은 아니나, 적어도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가해학생 조치

가. 법적 조치

프랑스 「교육법」 규칙편(Partie réglementaire) 제5권(Livre V), 제1장(Titre Ier), 제2절(Section 2)은 '징계 제도'라는 제목하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계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부속절(Sous-section 1) 시행규칙 제511-13조¹⁵⁷⁾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155) Code pénal, Art. 222-33-2-3

156) 이영란/김민, 앞의 글, pp.221-223.

157)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법령정보 홈페이지, "Code de l'éducation - Livre V : La vie scolaire (Articles R511-1 à D567-2) - Titre Ier : Les droits et obligations des élèves (Articles R511-1 à R511-75) - Section 2 : Régime disciplinaire (Articles R511-12 à D511-58) - Sous-section 1 : Sanctions applicables aux élèves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du second degré (Articles R511-12 à R511-19),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1191/LEGISCTA000020663064/#LEGISCTA000020743428, 2023.8.10. 최종검색) 참조.

- 경고(L'avertissement)
- 견책(Le blâme)
- 책임 부과(La mesure de responsabilisation)
- (8일까지의) 일시적 수업 배제(L'exclusion temporaire de la classe)
- 일시적 배제(L'exclusion temporaire de l'établissement ou de l'un de ses services annexes)
- 완전 배제(L'exclusion définitive de l'établissement ou de l'un de ses services annexes)

위 조치에서 일시적 배제는 우리의 정학과 유사하고 완전 배제는 퇴학과 유사한 조치로 이해된다. 제3호부터 6호까지의 제재는 시행규칙 제511-13-1조에 정한 세부 절차에 따라 집행의 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동조 IV에 따르면 해당 조치들이 행해진 경우에 이는 학생부에 기록되며, 경고의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가 지나면, 경고와 책임 부과 처분은 제재가 선고된 해의 다음 학년도에 완료되면 삭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동 교육법상의 징계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등교육을 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랑스 정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그 학부모의 동의 없이 다른 학교로 배정(전학)할 수 있도록 교육법을 개정하려 시도하고 있다.¹⁵⁸⁾ 이러한 전학 조치는 교육적 조치가 실패한 경우로서, 다른 학생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전학을 보낼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에는 가해학생이 아닌 분리를 원하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했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문제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⁹⁾

158)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Des nouvelles mesures contre le harcèlement scolair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6509>, 2023.8.10. 최종검색) 참조.

159) Liberation 2023.4.12.자, “Changement d'école pour les harceleurs : pour les associations, un «premier pas en avant» mais pas une solution miracle” (https://www.liberation.fr/societe/education/harcèlement-scolaire-en-primaire-ce-sera-desormais-au-harceleur-de-changer-decole-20230412_ZY3SJVD6GBHOJEXYHRR3IE26ZM, 2023.8.10. 최종검색).

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대응

프랑스 형법 제222-33-2-2조는 온라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을 괴롭힌 행위에 대해서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대 2년의 구금형 및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년의 구금형 및 4만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디지털 폭력에 대한 직통의 익명 신고 전화인 '3018번'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다.¹⁶⁰⁾ 한편, 사이버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NGO인 'e-Enfance'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관련 증거의 채증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L'app 3018'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¹⁶¹⁾ 이 앱은 신속한 개별 지원을 위한 전문가 채팅 서비스, 괴롭힘 증거(스크린샷, 사진 등)의 보관 및 전송, 자가평가도구, 전문가 조언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4. 소결

프랑스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적 조치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시해왔으나, 최근 발생하였던 여러 심각한 학교폭력 사태의 영향으로 '괴롭힘'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개정을 시행하였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포기하고 처벌 일변도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교육법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에서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교육적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가 단순하고, 학생부에 기재되더라도 1~2년 정도의 기간 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160) <https://e-enfance.org/informer/cyber-harcelement/> (2023.8.10. 최종검색).

161) <https://e-enfance.org/app3018/> (2023.8.10. 최종검색).

제3절 | 독일의 현황 및 대응

1. 독일의 학교폭력 현황

독일에서 괴롭힘(mobbing)'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폭력'의 특별한 형태로서, 괴롭힘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⁶²⁾

이하의 표는 독일 학교 내에서 '괴롭힘(Mobbing)' 및 '사이버 괴롭힘(Cybermobbing)'이 어느 정도나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 학교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나타낸다. 이 연구는 「독일의 2017/18학년도 학령기 아동의 건강 관련 행동 연구(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Studie, 이하에서 'HBSC-연구'라 한다)」¹⁶³⁾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정리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한다.¹⁶⁴⁾ 본 연구의 바탕이 된 '2017/18학년도 HBSC-연구'는 독일 내 146개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4,347명(여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53%)의 11세(5학년, 32.2%), 13세(7학년, 32.6%), 15세(9학년, 35.2%) 학생이 조사에 참가하였다.¹⁶⁵⁾

우선 괴롭힘이 만연한 정도 및 그룹별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62)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2020) "Mobbing und Cybermobbing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utschland – Querschnittergebnisse der HBSC-Studie 2017/18 und Trends", Journal of Health Monitoring 2020 5(3), Robert Koch-Institut, 2020.9.16., S.56.

163) 'HBSC-연구'란, 여러 국가에서 11세, 13세 및 15세 학생(독일의 경우 5, 7, 9학년에 해당)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조사로서, 학생의 건강 관련 인식, 태도,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건강 관련 정보 이외에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연구라 한다. 독일에서 시행된 '2017/18학년도 HBSC-연구'의 상세한 내용은 '독일연방 보건 모니터링 시스템(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 GBE) 홈페이지, "Die HBSC-Studie", https://www.gbe-bund.de/gbe/abrechnung.prc_abr_test_logon?p_uid=gast&p_aid=0&p_knoten=FID&p_sprache=D&p_suchstring=14467 (2023.8.10. 최종검색) 참조.

164)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0 참조.

165)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 58-59 참조.

» [표 4-2] 괴롭힘 확산정도 및 그룹 차이

(단위: %)

	비관여 (Unbeteiligte)	괴롭힘 가해 (Mobbende)	괴롭힘 피해 (Gemobbte)	가해/피해 복합 (Kombiniert Mobbende und Gemobbte)
전체	86.7	3.9	8.3	1.1
성별				
여학생	88.9	1.8	8.6	0.8
남학생	84.5	6.0	8.0	1.5
연령그룹				
11세	87.8	2.3	9.0	0.8
13세	85.4	3.6	9.3	1.7
15세	86.9	5.5	6.8	0.8
학교형태				
초등학교	81.2	5.5	11.0	2.3
실업학교	83.6	4.7	9.6	2.1
고등학교	91.0	2.4	6.0	0.7
혼합형	84.9	4.6	9.6	0.9

출처: Saskia M. Fischer 외, 앞의 "Mobbing und Cybermobbing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utschland", 61면, 표 1(Tabelle 1)을 발췌하여 번역함.

우선 86.7%의 학생들은 괴롭힘 가해나 피해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비해 8.3%의 학생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9%는 타인을 괴롭힌 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수의 학생(1.1%)이 복합적인 경험, 즉 괴롭힘을 당하면서 동시에 타인을 괴롭힌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¹⁶⁶⁾ 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남학생(6.0%)이 여학생(1.8%)보다 괴롭힘 가해 경험이 많다고 조사되었지만, 괴롭힘 피해 경험에 있어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남 8.0%, 여 8.6%).¹⁶⁷⁾ 연령별 차이에 있어서는, 15세 집단(5.5%)이 11세 집단(2.3%)이나 13세 집단(3.6%)에 비해 괴롭힘 가해 경험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에 피해 경험은 11세 집단(9.0%)나 13세 집단(9.3%)보다 15세 집단이 가장 낮았다(6.8%).¹⁶⁸⁾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재학 중인

166)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1.

167)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1.

168)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학생들이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각 2.4%, 6.0%). 반면 그 외 학교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⁶⁹⁾ 다음으로 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4-3] 괴롭힘 유형별 확산 정도 및 그룹 차이

(단위: %)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관계형 괴롭힘			
	비 관여	가해	피해	혼합	비 관여	가해	피해	혼합	비 관여	가해	피해	혼합
전체	95.0	1.5	3.0	0.5	82.8	5.3	8.2	3.7	86.3	3.3	8.4	2.0
성별												
여학생	96.9	0.6	2.2	0.3	84.7	3.0	9.5	2.8	84.6	3.0	10.2	2.2
남학생	93.0	2.3	4.0	0.7	80.7	7.7	6.9	4.6	88.0	3.6	6.5	1.8
연령 그룹												
11세	95.3	1.2	3.2	0.3	88.2	2.4	7.7	1.7	89.9	1.6	7.2	1.3
13세	93.6	1.6	4.2	0.6	81.9	5.0	9.0	4.1	85.1	3.6	9.4	2.0
15세	96.0	1.5	1.9	0.6	78.5	8.3	8.0	5.3	84.3	4.4	8.6	2.7
학교 형태												
초등학교	94.0	2.0	3.5	0.5	80.1	7.1	9.1	3.8	84.2	4.3	9.8	1.8
실업학교	93.4	2.1	3.7	0.8	78.7	6.9	11.2	3.3	83.6	3.9	10.0	2.5
고등학교	97.0	0.8	1.9	0.4	86.6	3.9	5.9	3.7	88.9	2.9	6.6	1.6
혼합형	93.8	1.8	3.9	0.5	81.4	5.6	9.0	4.0	85.2	3.2	9.2	2.4

출처: Saskia M. Fischer 외, 앞의 “Mobbing und Cybermobbing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utschland”, 62면, 표 2(Tabelle)를 발췌하여 번역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괴롭힘’보다는 ‘언어적 괴롭힘’이나 따돌림과 같은 ‘관계형 괴롭힘’이 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신체적 괴롭힘(2.3%)이나 언어적 괴롭힘(7.7%)의 가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형 괴롭힘의 가해 경험은 성별로 인한 차이가 크지 않다고 조사되었다(남 3.6%, 여 3.0%). 피해 경험에 있어서 남학생(4.0%)은 여학생(2.2%)보다 신체적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당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여학생은 언어적 괴롭힘(9.5%)이나 관계적 괴롭힘(10.2%)

앞의 글, S.61.

169)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1.

피해 경험이 남학생(각 6.9%, 6.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⁷⁰⁾ 연령별 차이에 있어서 15세는 언어적 괴롭힘의 가해 경험이 8.3%, 관계형 괴롭힘 가해 경험이 4.4%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세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괴롭힘 피해 경험 응답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괴롭힘(8.0%) 및 관계형 괴롭힘(8.6%)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에 본 연구는 주목하고 있다.¹⁷¹⁾ 학교 유형별 분류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괴롭힘 피해 경험 및 가해 경험 모두 다른 학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언어적 괴롭힘이나 관계형 괴롭힘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각 3.9%, 2.9%)은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는 점에 본 연구는 주목하고 있다.¹⁷²⁾

다음으로 사이버 괴롭힘 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4-4] 사이버괴롭힘의 확산 정도 및 그룹 차이

(단위: %)

	비관여	괴롭힘 가해	괴롭힘 피해	복합
전체	96.0	1.3	2.0	0.6
성별				
여학생	95.9	1.0	2.5	0.5
남학생	96.1	1.6	1.5	0.7
연령그룹				
11세	97.4	0.6	1.7	0.2
13세	95.8	0.9	2.4	0.8
15세	95.1	2.4	1.7	0.8
학교형태				
초등학교	95.7	1.5	2.0	0.8
실업학교	94.5	1.7	2.5	1.3
고등학교	97.8	0.7	1.2	0.3
혼합형	94.8	1.8	2.8	0.6

※ 출처: Saskia M. Fischer 외, 앞의 "Mobbing und Cybermobbing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utschland", 63면, 표 3(Tabelle 3)을 발췌하여 번역함.

170)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2.

171)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2.

172)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2~63.

조사 대상 학생 중 1.3%가 온라인 괴롭힘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0%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¹⁷³⁾ 한편, 여학생(2.5%)이 남학생(1.5%)보다 피해 경험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 수준은 비슷한 정도이지만, 가해 경험 비율은 15세(2.4%)가 어린 학생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11세 0.6%, 13세 0.9%).¹⁷⁴⁾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전술한 것처럼 사이버 괴롭힘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모두 낮게 나타났지만, 그 외 학교 유형에서는 가해 경험 및 피해 경험이 모두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¹⁷⁵⁾

전반적으로 독일 학교에서의 괴롭힘이나 사이버 괴롭힘은 잘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¹⁷⁶⁾ 그러나 여전히 학생 7명당 1명은 괴롭힘에 연관되어 피해 또는 가해 경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모든 교실에 괴롭힘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 차원의 효과적 예방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지속되어야 하며, 동시에 괴롭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 향상,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¹⁷⁷⁾

2. 독일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가. 법적 조치

앞서 괴롭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괴롭힘이나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적극적 개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촘촘하게 구성된 법제도를 통해 아동의 복지에서부터 소년 범죄의 예방,

173)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3.

174)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3

175)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3~64.

176)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9.

177)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앞의 글, S.69.

그리고 범죄의 처벌까지를 처리하고 있다.

우선 독일 「형법」 제19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책임 무능력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 제3조에 따라 행위 당시에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형사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14세 미만 아동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 비행으로 나아갈 것이 우려되는 등 아동의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이라고도 불리는 「사회법전 제8권(Sozialgesetzbuch (SGB VIII))」에 따라 아동청(Jugendamt)과 가정법원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14세 이상의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괴롭힘이 범죄로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바로 성인을 위한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년법과 유사한 「소년법원법」이 적용되어 소년형(Jugendstrafe),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 또는 징계처분(Zuchtmittel)이 부과될 수 있다.¹⁷⁸⁾

그렇지만 학교폭력이 범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거나 교육적 조치를 통해 조기에 개입하여 학생의 비행을 예방하고 사법절차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 차원의 통일적 법률 대신 각 주별로 「교육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각 주가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사이버 괴롭힘 방지

아직까지 독일 형법에 ‘사이버 괴롭힘’이란 유형의 범죄 구성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괴롭힘 유형은 형법상의 중대 범죄에

178)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년도 용역과제보고서, 2022.2. p.100-104.

해당될 수 있다. 예컨대, 모욕이나 명예훼손(독일 형법 제185조~제187조), 강요 및 협박(제240조~제241조), 스토킹(제238조), 사진 촬영 등 사생활 침해(제201a조) 등이 그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금지규정은 없다. 다만, 각 주의 교육법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는 있다. 예컨대, 바이에른 州 「교육법」 제56조 제5항은 “학생은 수업 및 기타 학교 행사에서 지도자의 감독 하에서, 또는 그 밖에 학교 경영진이 동의하였거나 개별적 사례에서 지도자의 감독 하에 학교 건물 및 운동장 내에서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엄격하게 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하겠지만,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무단 촬영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일시 금지가 교육적 조치에 해당할 수 있고,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학교에서의 사이버 괴롭힘에도 자주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¹⁷⁹⁾

3. 가해학생 조치

전술한 바와 같이 학생이 학교폭력을 범한 경우 각 주 「교육법」상의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베를린 「교육법」 제62조는 학교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적 조치(Erziehungsmaßnahmen)’를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 의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79) Cedric Vornholt, “Handy und Smartphone in der Schule – Handyverbot, Wegnahme und Cybermobbing”, Anwalt.de 2023.1.18. (<https://www.anwalt.de/rechtstipps/handy-und-smartphone-in-der-schule-handyverbot-wegnahme-und-cybermobbing-207814.html>, 2023.8.10. 최종검색).

- 학생과의 교육적 상담(erzieherische Gespräch)
- 합의(gemeinsame Absprachen)
- 구두 견책(mündliche Tadel)
- 학생기록부 기재(Eintragung in das Klassenbuch)
- 발생한 피해배상(Wiedergutmachung angerichteten Schadens)
- 대상물의 일시적 압수(vorübergehende Einziehung von Gegenständen)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의 연령이나 성격뿐만 아니라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62조에 따른 교육적 조치로 분쟁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에 따라 비례원칙을 준수하면서 '징계조치(Ordnungsmaßnahmen)'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징계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서면 징계(schriftliche Verweis)
- (최대 10일까지의) 수업배제(Ausschluss vom Unterricht und anderen schulischen Veranstaltungen bis zu zehn Schultagen)
- 학급 교체 또는 다른 학년으로의 교체(Umsetzung in eine Parallelklasse oder eine andere Unterrichtsgruppe)
- 동급 학교로의 전학(Überweisung in eine andere Schule desselben Bildungsgangs)
- 퇴학(Entlassung aus der Schule)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학생이 심각하고 반복적인 비행을 한 경우에만 취해질 수 있다(동조 제3항). 다만, 퇴학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면한 이후에만 가능하다(동조 제2항 제5호).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서면징계나 수업배제(출석정지)는 학교장이 주재하는 학급회이나 총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전학이나 퇴학은 학교감독기관이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에른 州 「교육법」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6조 제1항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 조치로는 서면 징계, 가중 징계, 학급교체, 행위 유형에 따른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이 가능하다.

4. 소결

독일은 학교폭력의 예방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학교폭력 사안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학교폭력 등 분쟁에 대하여 학생의 연령이나 성격, 문제사안의 내용 등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거쳐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적 조치를 우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시도하고,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징계조치를 부과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4절 | 일본의 현황 및 대응¹⁸⁰⁾

1. 일본의 학교폭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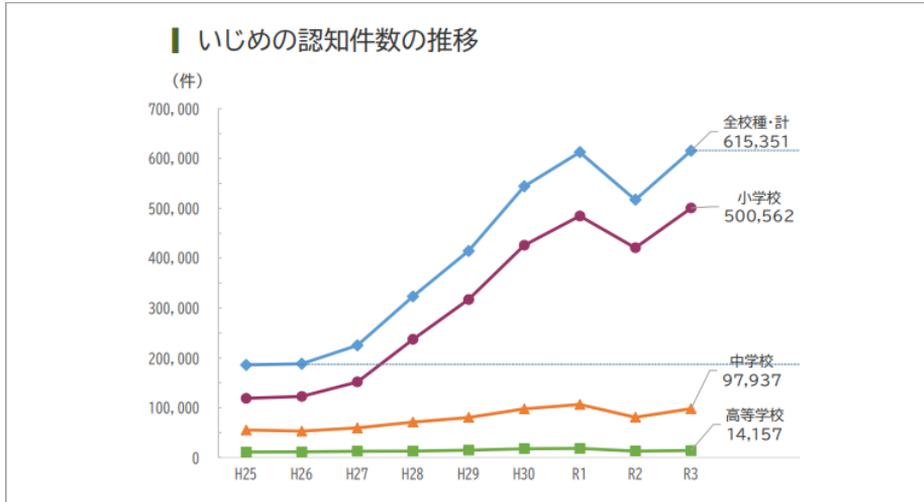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2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인지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에서 발생한 따돌림을 뜻하는 ‘이지메(いじめ)’ 사건 수는 총 615,351건으로, 이는 아동 인구 1,000명당 47.7건에 해당한다.¹⁸¹⁾

180) 일본 자료의 번역 및 동향 파악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손여옥 전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수행함.

181)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 「いじめの状況及び 文部科学省の取組について」(2022.11.24.), 2頁 (https://www.cas.go.jp/jp/seisaku/kodomo_ijime_boushi_kaigi/dai1/siryou2-1.pdf, 2023.8.10. 최종검색).

▶▶ [그림 4-3] 이지메 인지 건수 추이

(단위: %)



출처: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 앞의 「いじめの状況及び 文部科学省の取組について」, 2면의 그림을 발췌함.

위 그림을 보면 2021년도(R3)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는 500,562건, 중학교 97,937건, 고등학교 14,157건의 이지메가 인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H25)부터 발생한 이지메 인지 건수 추이를 보면, 중학생·고등학생의 경우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유지 또는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초등학생의 이지메 인지 건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본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일본은 1980년대부터 학교폭력 정책을 구축하였는데,¹⁸²⁾ 특히 ‘이지메’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그 대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¹⁸³⁾

이지메에 대한 대처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2013년 제정된 「이지메방지대책

182) 이승현/정제영/강태훈/김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p.182.

183) 일본에서 학교폭력, 즉 ‘교내폭력(校内暴力)’이란 학교생활 중에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교사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행위, 기물파손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한다(文部科学省, 生徒指導上の諸問題の現状について(2000.12.), “第2章 暴力行為”,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03/toushin/001219b.htm, 2023.8.28. 최종검색).

추진법(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이다.¹⁸⁴⁾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이지메’란,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등이 재학 중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등 해당 아동 등과 지속적인 인적 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 등이 실시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주는 행위(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포함)로서,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 등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된다.¹⁸⁵⁾ 이 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제1조~제10조), 제2장 이지메 방지 기본방침 등(제11조~제14조), 제3장 기본 시책(제15조~제21조), 제4장 이지메 방지에 관한 조치(제22조~제27조), 제5장 중대사태의 대처(제28조~제33조), 제6장 잡칙(제34조~제35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지메의 방지를 위한 학교의 조치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는 ‘이지메 방지에 관한 조치를 실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2조). 한편, 이지메가 발생하였고, 교육적 조치의 필요가 있는 경우, 동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법」 제11조상의 징계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6조는 가해 아동의 출석정지 명령 등을 통해 괴롭힘을 당한 아동이 안심하고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지메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괴롭힘으로 인하여 아동의 심신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거나, 괴롭힘으로 인하여 학교에 결석하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 학교장 등은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조사의 중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8조).

한편,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폭행이나 상해,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14세를 기준으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동상담소를 통한 조치를 받게 되고, 14세 이상의 경우 범죄소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3. 가해학생 조치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1조에 의하면, 학교의 교장 및 교원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벌은 금지된다.

184) 이승현/정제영/강태훈/김무영, 앞의 보고서, p.179.

185) 동조의 번역은 이승현/정제영/강태훈/김무영, 앞의 보고서, p.179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징계권자에 대해서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¹⁸⁶⁾ 우선 교장 및 교원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아동의 심신 발달 상황에 의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징계 중에서 퇴학(退學), 정학(停學), 훈계(訓告)는 교장이 실시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우선 퇴학은 시정촌의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또는 공립 특별지원 학교에 재학하는 의무교육대상 아동이나 학생을 제외하고 (1) 성행이 불량하며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 자, (2) 학력이 부진하고 학업을 마칠 의사가 없는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자, (4) 학교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생으로의 본분에 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이에 비해 정학(停學)은 만 6세에서 만 15세에 해당하는 학령아동(學齡兒童)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없다(제26조 제4항).

한편,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 제26조에서는 이지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학교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아동 등의 출석정지 제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출석정지(兒童の出席停止)’란, 학생이 일정 행위를 한번 또는 두 번 이상 하는 등 성행이 불량하고 해당 아동이 다른 아동의 교육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출석정지 대상은 (1) 다른 아동에게 상해, 심신의 고통 또는 재산상 손실을 준 행위, (2) 직원에게 상해 또는 심신의 고통을 준 행위,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는 행위, (4) 수업 또는 다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아동이다. 이 경우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사전에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학교교육법 제35조 제2항).¹⁸⁷⁾ 이 중 (1)의 행위는 다른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심신의 고통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이지메와 유사하기 때문에 문부성의 ‘출석정지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에 관하여(통지)’에서 이지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출석정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⁸⁸⁾

186) 이승현/정제영/강태훈/김무영, 앞의 보고서, p.180.

187) 이승현/정제영/강태훈/김무영, 앞의 보고서, p.181.

188)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長通知, “出席停止制度の運用の在り方について(通知)”(2001.11.6.), 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4121502/013.htm (2023.8.28. 최종 검색).

그런데 이러한 출석정지 규정은 전술한 것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지명령 이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문서로 해당 조치를 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다고 한다. 실제로 2021년도에는 출석정지를 실시한 건수가 전국 중학교에서 1건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¹⁸⁹⁾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사카 네야가와시(寝屋川市)’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에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다른 교실에 분리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¹⁹⁰⁾ 그 외에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旭川市)’ 역시 조례를 통해 시장에게 출석정지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¹⁹¹⁾ 이 밖에도 이지메 사안의 특성상 사태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태파악을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¹⁹²⁾ 이와 유사하게 피해아동과 가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가 현재로서는 출석정지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 분리조치로서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징계제도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¹⁹³⁾

4. 소결

일본의 학교교육제도 및 소년사법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이 많다. 특히 이지메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점은,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따돌림’이나 ‘왕따’와 같은 관계형 학교폭력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9) 朝日新聞(2022.11.12.), “いじめ被害者が別室登校に 教室に通い続ける加害生徒”

(<https://www.asahi.com/articles/ASQCC7618QC5UDCB011.html>, 2023.8.28. 최종검색).

190) ‘寝屋川市子どもたちをいじめから守るための条例’, 제13조 (<https://www.city.neyagawa.osaka.jp/material/files/group/17/izimezyourei.pdf>, 2023.8.28. 최종검색).

191) 旭川市いじめ防止対策推進条例, 제13조 제3항 제3호 (https://www.city.asahikawa.hokkaido.jp/kurashi/218/251/257/d077793_d/fil/ijime_jorei.pdf, 2023.8.28. 최종검색).

192) 弁護士ドットコム(2022.1.6.), “いじめ加害者は出席停止にすべき? 改めて考えたい「最も大切な目的」とは” (https://www.bengo4.com/c_18/n_13991/, 2023.8.10. 최종검색).

193) 読売新聞オンライン(2022.5.13.), “いじめ加害者に学校への立ち入り制限…自民作業部会が提言案”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20513-OYT1T50122>, 2023.8.10. 최종검색).

제5절 | 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정책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그 발생 추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학생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영국, 그 중에서도 북아일랜드의 최근 학교폭력 대응 법제를 보면, 학교폭력의 유형 및 심각성의 정도를 개별화하여 총 4단계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1단계 대응은 피해가 경미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사전적 개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 및 조치 대상의 특성에 비추어 개별화된 대응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최근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 또는 자살 시도를 한 경우 매우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여전히 프랑스 「교육법」 등을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교육적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각 주의 「교육법」에서 학교폭력 등이 문제된 학생의 지도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교육조치와 징계조치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학생 개인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적 조치’와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징계 조치’를 구분하여 부과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가해 학생에게도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선도, 교육 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징계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학교폭력예방법과는 다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우리의 ‘따돌림’과 유사한 ‘이지메’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

로 대두되었다. 이지메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 점,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여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는 점, 또한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와도 연계하여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 등은 관계형 학교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다.

제 5 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이 승 현

제5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1절 | 서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하기 전과 조치한 후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전 연구결과¹⁹⁴⁾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각각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가 대부분 일주일 이내의 단기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여러 가지 조치가 병합되는 관계로 어느 하나의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평가를 정책, 법률, 판례, 언론보도 등으로 다각화하여 분석하였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안 도출은 1) 현재의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의 조사과정이나 선도조치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인지를 평가한 대안, 2) 9가지 선도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구동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3) 조치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조치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들을 파악한 대안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이에 본 장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조치 결정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가해학생 선도조치 자체의 개선방안, 조치 결정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94) 이승현/정제영/강태훈/김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p.193 이하.

제2절 | 학교폭력 사안의 조기해결을 위한 방안

1. 사안 ‘인지 직후’ 갈등해결을 위한 개입

학교 내의 갈등해결절차인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양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게 된다. 경미한 사안임에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쟁해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처리하는 것이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체해결을 의무화할 경우 양당사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종결해버린다는 의미가 되므로, 행정심판 청구 등 과거의 문제들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자문위원 6의 의견). 따라서 사안이 “인지된 직후” 절차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설명으로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대응사례에서도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모두 학교폭력에 대한 조기개입을 목표로 사안 발생 직후 빠른 시간 내에 갈등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가. ‘관계회복’ 중심의 절차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내에서 관계회복을 통해 ‘처벌’보다는 ‘회복’의 관점에서 먼저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보면 기계적으로 사법적 영역에서 내리는 판단의 잣대를 통해 처벌 중심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구현하고 싶은 것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빠른 조치를 통해 문제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과정이 필요하다.¹⁹⁵⁾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양당사자와 만나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인 것이다(자문위원 16의 의견). 예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중재단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전에 모든 당사자가 학교에 모여 해당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36시간의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¹⁹⁶⁾ 인천교육청의 경우에도 갈등 해결기회를 전 단계에서 열어놓고 양당사자가 갈등중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두고 있다.

나. 절차가 아닌 ‘대화’ 중심의 갈등 해결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절차 과정에서 가해학생측이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부족하다. 가령 즉시분리를 실시하더라도 즉시분리가 왜 필요한지, 현 단계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대상학생에게 어떠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이를 위한 시간적·공간적 분리가 필요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절차를 안내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가·피해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학교의 담임교사나 전담기구에서 할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절차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 절차 진행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외부의 갈등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시도 조차 없이 즉시분리절차나 학교장 자체해결절차에 돌입할 경우 가해학생측에서는 잘못 인정시 더 큰 책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게 되고, 피해학생측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195) 이근영/강미선/장훈승/최지현,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활성화 방안 연구: 관계회복 및 갈등 조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2021, p.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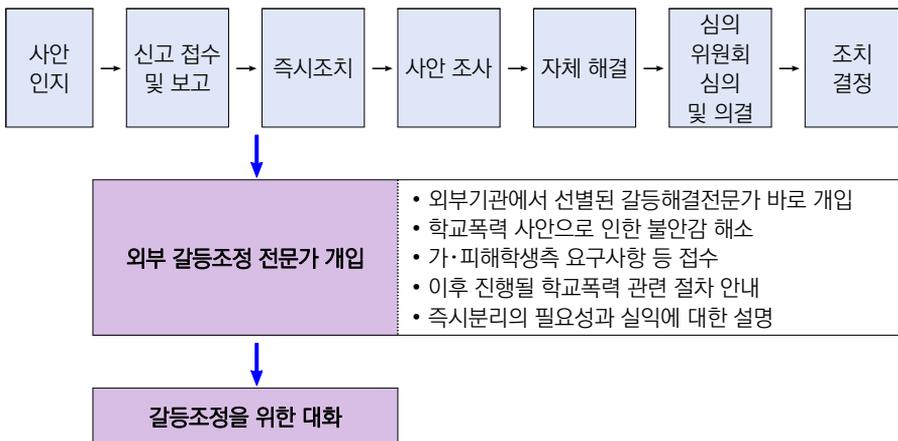
196) 경기교육뉴스, “학폭, 관계회복 통한 갈등해결 먼저”...최우성 장학사, 36시간 법칙 도입 제안”, 2022년 3월 17일자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 2023.8.16. 최종검색). 이는 덴마크의 제도에서 착안한 것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36시간 이내에 당사자들이 모여 사안을 해결하려는 제도라고 한다. 덴마크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사안이 48%에서 3%로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다. 따라서 사안인지 직후 외부 갈등해결 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학생측과 가해학생 측이 각각 인정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결하길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 보완된 갈등해결절차 방식

현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에서 개선된 부분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즉시 외부의 갈등해결 전문가가 참여하여 양당사자의 요구와 과정의 실익에 대한 안내를 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폭력 당사자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아이가 겪게 될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들만 취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가 길어지면 질수록 양당사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양측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복귀할 기회들은 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즉시 외부 갈등해결 전문가가 개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과정을 통해 관계회복을 이룰 수 있는지, 학교폭력 판단에 있어 미비점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조기에 화해와 회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대화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후 학교에서의 자체해결 대상인지의 판별 과정을 통해 단계마다 해결의 기회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 [그림 5-1] 학교폭력 대응절차 흐름도 개선안



갈등해결 절차가 조기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의 진행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동반될 수 있도록 평소에 갈등해결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갈등해결 전문가를 섭외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교육청 산하 갈등해결팀이 마련되어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갈등해결절차를 진행할 사안 중 제외할 사안(예를 들어, 성관련 사안, 보복행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관련 사안의 경우 즉각적인 증거수집과 피해자 보호가 진행되어야 하는 바 이들 사안에 대하여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해결은 사안 인지 직후 사안조사 전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필요하다면 사건처리 단계별로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도 필요하다. 갈등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에 관한 담보도 필요하다. 평소 갈등해결 전문가의 관리, 보수교육, 자격조건 등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갈등해결전문가의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외부전문가 투입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갈등해결 전문가도 전담기구의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갈등해결로 사안이 조기에 화해로 진행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진행되어 종료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2. 즉시분리의 대상 유형화

현행법상 즉시분리는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6조 제1항 단서) 시행령에서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를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2) 가해 또는 피해학생측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시분리가 피해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가해학생측의 입장에서는 가해가 확정되기 전인데 학습권을 침해당하면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해학생측의 불만이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제나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분리의 기준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 피해학생측의 입장에서도 3일 정도(4.12 대책에서는 7일까지 연장)의 기간만으로는 피해학생의 불안감 해소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관계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즉시분리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시분리가 꼭 필요한 사안 유형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긴급한 개입이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머지 사안의 경우 자체해결제나 분쟁조정 과정을 거쳐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시분리가 필요한 긴급한 사안으로는 성폭력 관련 사안이나 집단폭행, 보복행위 사안 등 재발의 위험성이 큰 사안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 학교폭력 조치결정의 전문성 강화

1.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조치 결정을 하는 외에도 제18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분쟁조정의 권한은 금전배상액을 합의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제18조 제3항에서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호가 손해배상액 조정이다 보니, 심의위원회가 선도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

시도교육청 산하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자치위원회와 달리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들 가운데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조치결정을 하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분쟁조정을 통해 한번 더 변화의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3항에 분쟁조정 내용에 갈등조정 사항도 담기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8조(분쟁조정)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분쟁조정)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학교폭력 관련 갈등 조정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하나 해결되어야 할 것은 분쟁조정 결과가 조치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서는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만 기술되어 있을 뿐 분쟁조정이 된 경우 조치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년법」 제25조의3에서는 소년의 품행 교정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화해가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주축이 되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사법절차에서도 화해의 결과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인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양당사자가 분쟁조정에 합의한 경우 이후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8조(분쟁조정) <없음>	제18조(분쟁조정) ⑧ <신설> 분쟁조정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치 결정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폭력 현장지원체계 및 교육적 해결정책안>에서 심의위원회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합의 결과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에 반영 가능하도록 내용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조치 경감, 경미한 경우 조치 없음 결정, 학교장 자체해

결 요건 미충족 사안에 대하여 자체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⁹⁷⁾

2. 가해학생 세부조치기준 개선방안

학교폭력 사안판단 주체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기는 하였으나, 세부조치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교육부의 지침이나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판단기준이 상이하거나 소위원회별로 특정위원의 의사에 따라 판단기준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치 결정의 전문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세부조치기준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지 않다.¹⁹⁸⁾ 가해학생 조치결정에 있어서 판정점수는 1점이 어디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조치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속성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 지속성의 판단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저께-어제-오늘 순으로 연속적일 경우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판정점수가 높아질 수 있으나, 사안 접수 기준으로 볼 경우 접수 이후 1건인 경우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접수 이전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해오더라도 접수 이후 1건이므로 1회적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판례분석 내용에서도 지속성 판단이 일관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해학생측의 문제제기에 손을 들어준 사안도 발견되었다. 불복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단의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지속성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화해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도 혼선이 있다. 화해의 판단은 화해를 하였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가부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4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고 있어서, 화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심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판정결과를 내고 있다. 어떠한 사안에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가해학생측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고 평가하여 2점 또는 3점으로 평가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화해의 판단은

197) 문정복 의원실/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2, p.20.

198)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 p.7 1 이하.

정도의 판단이 아니라 화해를 하였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가부로 평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반성의 정도는 주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가해학생의 태도 여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치결과를 기다리는 당사자는 당연히 반성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고 그래야만 처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성태도를 보일 것이다. 조치결정 과정에까지 가해학생이 반성의 자세와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분석한 행정소송 판례들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별표내용에 대한 판단은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그에 대한 조치,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 지속성 판단을 “서로 다른 시기에 행해진 것이고, 해당사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의 언론보도 분석사례에서도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전문성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인력확충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세부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관련 세부 기준표가 고시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세부 기본구성요소와 부가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역시 교육부의 고시 기준으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변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주어지는 조치 외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가해학생의 조치 이상으로 강력하다. 학교폭력 사안이 생활기록부 기재될 경우 입시 등 장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도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시되는 제도일 뿐 가해학생의 선도와 향후 재발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년사법 단계에서도 소년보호처분의 기록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소년법 제32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조치에 대하여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에 4.12 대책은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졸업 후 2년’ 유지를 ‘졸업 후 4년’까지 유지되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가해학생이 선도과정을 통해 개선과 재발방지 노력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과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활기록부 기재는 모든 조치 유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적 변동과 상위학교에 학사일정에 영향을 주는 전학 및 퇴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1년 또는 2년 이내 삭제하는 방법을 취하여 가급적 생활기록부 기재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4절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유형별 개선방안

1. 서면사과 방식의 개선

서면사과의 경우 가해학생이 사과하더라도 피해학생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 통보서에 “서면사과 편지를 가해학생에게 받아서 검토 후 이상 없을시 피해학생측에 전달하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서면사과문 작성까지를 실효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피해학생측에 전달하는 것까지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서면사과 조치의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사과를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서면사과의 판단방법을 형식이 아닌 실질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면사과는

피해학생측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문위원 17, 자문위원 20의 의견). 또한, 사과의 진정성에 바탕을 두고 조치 결정 시 ‘서면사과’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조치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사과가 이루어지고 피해학생측이 이러한 사과를 받아들였을 때 사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정점수 산정시 피해자와의 화해정도 판단시에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접촉금지조치의 개선방안

가. 접촉금지를 접근금지로 변경하는 방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접촉금지는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교실 이외에 일상공간 전체를 규제하거나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접촉금지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에 해당하는 ‘접근’금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¹⁹⁹⁾ 접근금지는 그야말로 일상생활에 있어 자유에 제한을 두는 조치로 법원의 판단에 기초하여 내려지는 임시조치이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의 임시조치로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이 내려지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현장의 특성상 100미터 이내라는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전학 또는 퇴학이 아닌 한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 학교현장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조치를 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의한 긴급조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접촉금지가 남용될 수 있다.

‘접촉 금지’에서 ‘접근 금지’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조건도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법원의 판단에 준할 정도로 금지의 판단주체가 명확하고 엄격한 판단을 해야 한다. 둘째, 금지로 인해 교육의 손실이 없도록 대체교육을 실현할 장소와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와 같이 긴급조치나 부가적인 조치로

199) 이택난/유지연, 앞의 논문, 2023, p.21.

서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금지의 대상에게만 적용되도록 사안처리 가이드가 변경되어야 한다.

나. 사이버폭력행위에 대한 접촉금지방안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표준연수자료」에 따르면 친구에게 욕설을 한 경우 사이버폭력이 오프라인 폭력을 한 경우보다 심각성과 고의성이 더 높게 나타나므로 더 큰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²⁰⁰⁾

▶▶ [그림 5-2] 사이버폭력과 오프라인폭력의 조치부과 차이

친구에게 욕설을 한 경우: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에 비해 더 큰 조치 부과						
<small>(출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준하여 작성됨)</small>						
오프라인 폭력 경우				사이버폭력 경우		
<small>가해학생기본판단요소판정점수</small>				<small>가해학생기본판단요소판정점수</small>		
심각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판정 점수별 조치
심각성	4	3	2	1	0	1~3점 1호서면사과
지속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필요시) 2호보복금지
지속성	4	3	2	1	0	4~6점 3호학교통사
고의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7~9점 4호사회봉사
고의성	4	3	2	1	0	(필요시) 5호특별교육
반성정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0~12점 6호출석정지
반성정도	4	3	2	1	0	13~15점 7호학급교제
회해정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6~20점 8호전학
회해정도	4	3	2	1	0	16~20점 9호퇴학처분
위원회 평균이 아닌 혐의로 점수 산정-총 (5)점 (3)호 조치				위원회 평균이 아닌 혐의로 점수 산정-총 (10)점 (6)호 조치, 5호병과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표준 연수자료(심화), 2022, p.35.

그러나 실제 판례에서는 여전히 사이버폭력 사안이 오프라인 폭력 사안보다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신체적 폭력에 집중하여 판단하는지라 사이버폭력의 경우 장기적으로 피해의 심각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이다.²⁰¹⁾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판단에서도 사이버폭력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200)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표준 연수자료(심화), p.35 (https://edubook.ice.go.kr/20220714_090529, 2023.7.31. 최종검색).

201) 유지연/이덕난,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1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p.14.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에 있어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피해자가 피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피해의 심각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모르는 집 단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높아지며, 발생하면 이후 피해를 지우거나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면,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글 하나, 이미지 하나를 전송했을 뿐이기 때문에 가해의 심각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접촉금지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사이버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온라인 사용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온라인 상 행위로 학교환경에 영향을 끼친 경우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나 학교경찰관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는 규정도 가지고 있다.²⁰²⁾ 사이버상 접촉금지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개입과 노력이 절실하다(자문위원 18의 의견). 접촉만을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자문위원 17의 의견).

3.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방식의 개선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 봉사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실시된다. 학교에서 가해학생이 발생할 때마다 봉사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지역사회 내 봉사기관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조치의 대상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현장은 혼란을 겪는다.

그러므로 가해학생 조치로서 3호와 4호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시도 교육청 산하 봉사프로그램과 계획 하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5호처분 특별교육기관의 경우 법률에 명확하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4호처분의 사회봉사기관은 기관의 규정 근거도 없다. 이에 사회봉사기관의 지정에 관해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라는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사회봉사기관을 ‘공공·행정기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봉사단체로 확대

202) DfE, 『Searching, Screening and Confiscation. Advice for schools』, 2022.7, pp.19~20.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봉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학교 외 봉사의 경우 봉사과정을 통해 가해학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봉사기관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사후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4. 특별교육의 실효성 평가 필요

가해학생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특별교육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되지만, 뿐만 아니라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도 부가적인 형태로 특별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두 특별교육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가해학생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특별교육을 받아온 바 이들이 교육으로 변화를 꾀하기에는 어려운 대상이다. 특별교육 기관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교육의 특수성도 발견하기 어렵다(자문위원 13의 의견).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특별교육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첫째, 기관마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해서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의 가해학생이 전문적이고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육 기관을 유형별로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특별교육기관 교육의 이수 여부에 대한 판단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고 있어, 교육을 통해 실제 아이가 변화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자문위원 20의 의견), 평가방식이 아니라 교육 종료 후 테스트나 평가과정을 통해 실제로 교육 이후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특별교육기관에 대한 전문성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특별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 평가나 교육 이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자문위원 16의 의견). 특별교육기관이 특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유형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교육 질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출석정지의 개선방안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고 있는 출석정지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가해학생 조치로서 출석정지는 등교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와 차별성이 없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실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출석정지보다 즉시분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단기간 일회성 조치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이후 학교에서 3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4주의 기간 동안을 모두 출석정지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기간 제한이 없이 운영하기보다는 가해학생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이 제한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학생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무한정 산정하기 보다는 법률에서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징계조치로서 수업배제조치가 있지만 '최대 10일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6. 교육적 조치와 징계적 조치의 구분 필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적·선도적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징계적 조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또는 가해학생을 분리하고 징계하기 위해 조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교육적 조치와 징계적 조치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적 조치(학생상담, 합의, 구두 견책, 학생기록부 기재, 피해배상, 대상물 일시 압수)는 학생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하는 반면에, 징계조치(서면징계, 수업배제, 학급교체, 전학, 퇴학)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조치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가해학생도 명확히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조치 유형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7. 조치 이행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하에서는 조치의 이행만 강조하고 있지 조치를 잘 이행할 경우의 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령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잘 이수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조치를 경감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가해학생들이 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고 교육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착안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년사법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도 조건부 훈방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다. 선도조건으로 붙은 교육 등을 잘 이수한 경우에 경찰단계에서 훈방을 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선도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단순 훈방이나 단순 기소유예를 할 때보다 선도조건을 붙여 실시하는 경우 선도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제방식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한 경우 그 이수정도에 따라 조치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제5절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후의 개선방안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후관리의 필요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통해 조치사항이 관리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이 다시 폭력 재발의 상황에 나아가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후관리'라는 개념은 조치 결정 이후에 절차인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조치 이행뿐만 아니라 이후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까지를 의미한다.

사안처리 과정을 거쳐 가해학생의 조치가 끝난 이후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의 목적은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있다. 그렇다면 조치 이후에도 학생이 다시 학교폭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가해학생의 학부모 역시 책임의식을 느끼고 가해학생 보호와 감독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주시해야 하므로 사후관리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안처리 이후 가해학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때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모니터링 강화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치 이후에 다시 학교폭력을 하지 않도록 가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해학생 모니터링의 범주는 가해학생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정보들의 취합 및 관리, 공유에 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조치 이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정보가 체계적으로 시스템 상으로 관리되거나 이후 학교급이 달라지는 경우 자료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심지어 같은 학교급 안에서 학년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 사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부터 사안처리절차, 조치이행과정, 사후관리 등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가해학생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가령 학교폭력 재발이 지속되는 가해학생을 살펴보아 가정 내에서 부모의 지속적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모교육과 그 가정에 대한 컨설팅지원이 지역사회 내 자원을 통해 확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손잡고 사후관리에 힘써야 한다.

3. 가해학생 학부모 책무성 강화 방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의 개인적 문제에서 비롯된 폭력인 경우도 있지만 가해학생의 가정 및 부모의 훈육태도에서 발현된 폭력인 경우도 많다(자문위원 19의 의견). 이런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을 이행하도록 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학부모 역시 학교폭력 사안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절실하다.

요즘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민원제기 사례들을 보면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학생 학부모가 사안 발생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기보다는 교원에 대한 책임전가나, 법률조력을 통해 법적으로만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 부모가 책무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안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가해행위를 반성하게 될지는 우리가 최근 언론 보도사례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의식 부여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나고 나면 가해학생측은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책임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 내에 있는 ‘가족센터’의 부모교육 이수라든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부모교육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부모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의 참여만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성실한 이행이 이후 자녀의 생활기록부 삭제와 연동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교육이수를 받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구조로 부모교육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자문위원 13의 의견).

4.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피해학생 보호방안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엄벌을 한다고 해서 피해학생이 보호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해학생이 조속히 회복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호절차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4.12 대책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다수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바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2017년 6월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재심절차 진행시 피해학생측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알리라는 권고²⁰³⁾를 한 바 있다.

또 하나의 대책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록을 삭제할 때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하는 것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삭제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과연 피해학생을 위한 것인가가 의문이 든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삭제하고자 할 때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둔다면 동의과정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여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기록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서 법률적 조력이 많아진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피해학생 측의 경우 경제적 우위에 있는 가해학생측이 다양한 회유와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측의 상황이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되 삭제 여부 결정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⁴⁾

203) 연합뉴스, “권익위, 학교폭력 가해자가 재심청구하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2017년 6월 15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5068400001>, 2023.7.31. 최종검색).

204)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교폭력과 차별, 현주소와 과제 세미나 자료집, 2023, p.96 이은심 토론의견.

제 6 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결론

이승현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만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해학생 조치들이 학교폭력예방방법이 당초 목표로 한 가해학생 선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이행가능성에 주목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정책변화, 관련 규정의 변화흐름, 판례와 언론보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해학생 조치의 공정성·전문성, 외국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등을 중심으로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보았다.

현재의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의 조사절차가 개선되면서 과거보다 많은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조치기준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조치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고 하였으나, 세부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문성에 흠결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또한 절차 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방법」이 추구하는 분쟁조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조치 이전의 즉시 분리는 가해의 '추정'만으로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 갈등의 고리가 되고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이루어지는 9가지 선도조치 역시 선도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징계적 성격'이 강하고 각각의 조치들이 학교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조치들이 많았다. 서면사과는 사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서면 작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법적 대응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의 경우 봉사를 통해 책임의식을 함양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수업을 피하는 수단으로, 학교현장에서는 봉사기관을 찾지 못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

려운 조치가 되어버렸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운 조치였다. 접촉금지의 경우 사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접근금지’ 수준의 금지가 아닌 관계로 피해학생측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가지고 있었다. 특별교육 역시 가해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웠다. 출석정지도 등교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피해의 접촉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학급교체의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학급교체를 실시할 경우 교원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구동되기 어려운 조치가 다수였다.

학교폭력 조치결정 이후에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외에는 별다른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기관이나 인력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갈등해결을 위한 조기개입과 선별적 제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반성을 유도하고 피해학생이 빠른 피해회복단계에 이르려면 신속하게 갈등해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기개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를 보면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학교장 자체해결제나 심의위원회 분쟁조정단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다. 이러다보니,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이미 갈등의 고리가 커지고 법적 조력을 받으면서 유리한 쟁점을 끌어내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즉시분리 이전에 “사안인지 직후” 바로 외부의 갈등해결 전문가가 개입하여 즉시분리와 사안조사절차의 필요성과 이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에 대한 ‘추정’만으로 학습권을 제한하는 즉시분리는 갈등을 심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집단폭력이나 성사안 등 즉시분리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즉시분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폭력 조치결정과정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결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법상 분쟁조정은 금전배상액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 조정” 규정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조정 결과가 조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8항에 “분쟁조정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치결정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의 경감, 조치없음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가해학생 조치의 세부적용기준에서는 고의성, 지속성, 화해정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들 지속성 판단기준 시점의 명시, 화해는 정도가 아닌 여부로 판별하도록 판정점수척도의 변경, 반성의 정도 판단을 위한 교사 등의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기본구성요소와 부가적 요소의 판별기준을 교육부 고시기준에 명확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개별조치는 학교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선도목적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서면사과는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서면이라는 형식에 의존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과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촉금지가 접근금지에 준할 정도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금지의 판단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금지로 인해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학습권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이나 장소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조치에 부가적인 조치가 아니라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실시되도록 가이드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 사안의 경우 접촉금지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외국의 경우와 같이 휴대폰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폭력의 경우 접촉금지의 방식에 정보통신기기 제한을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의 경우 봉사기관을 공공·행정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봉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 유형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특별교육기관의 질 담보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최대 10일 등 기준을 두거나 가해학생의 상황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모두 징계적 조치이다. 그러나 독일의 예와 같이 ‘교육적

조치'와 '징계적 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당 조치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해학생측이 명확히 알고 이행하도록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치이행에 따른 구제절차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선도조건부 훈방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럼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조치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해학생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를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치 이후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학교급 또는 관련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어 필요한 때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가해학생 학부모의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발생에 대해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지속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모 양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보호에 있어서도 보호를 이유로 절차단계에서 모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만들게 되면 동의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절차단계에서 신중한 접근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국내문헌

- 관계부처합동,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2017.
- 관계부처합동,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보완대책, 2018.
-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23.
- 관계부처합동,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9.
- 관계부처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4.
- 관계부처합동,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요약, 2019.
- 관계부처합동,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0.
-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9.
- 교육부,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2.
-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2016.
- 교육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 2013.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
- 교육인적자원부,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5.
- 문정복 의원실/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2.
-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교원표준 연수자료(심화) (https://edubook.ice.go.kr/20220714_090529, 2023.7.31. 최종검색).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s://isearch.ccourt.go.kr/view.do?idx=00&docId=57551_010200, 2023.8.6. 최종검색).
- 배상균/김민규/김성규/이유경,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년도 용역과제보고서, 2022.
- 양승미/최승원,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21.
- 유지연/이덕난,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1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 이근영/강미선/장호승/최지현,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활성화 방안 연구: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2021.
- 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9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 이승현/정제영/강태훈/김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 이승현/이천현/안성훈/박성훈/이덕난/김영식, 『현장중심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 이영란/김민, “청소년폭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 청소년 도시폭력과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8권 제4호, 2019.
- 이현정,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8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7.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교폭력과 차별, 현주소와 과제」 세미나 자료집, 2023.

2. 국외문헌

- 영국 -

- Department for Education, 「Bullying in England, April 2013 to March 2018. Analysis on 10 to 15 year olds from the Crime Survey for England & Wales」, 2018.1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19474/Bullying_in_England_2013-2018__1_.pd.pdf (2023.8.10. 최종검색))
- _____, 「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2023. Statutory guidance for schools and colleges」, 202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61273/Keeping_childr

- en_safe_in_education_2023_-_statutory_guidance_for_schools_and_colleges.pdf. 2023.8.10. 최종검색)
- _____, 「Behaviour and discipline in schools. Advice for headteachers and school staff」, 2013.7.
- _____, 「Searching, Screening and Confiscation. Advice for schools」, 2022.7
- DfE/EA/ni ABF, 「Effective Responses to Bullying Behaviour」, 2022.1.
- Ditch the Label, 「Annual Bullying Survey 2020」, 2020, (https://dtl-beta-website-assets.s3.amazonaws.com/The_Annual_Bullying_Survey_2020_2_a8a474bb3f.pdf, 2023.8.10. 최종검색).
-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Behaviour in schools: sanctions and exclusions” (<https://www.gov.uk/school-behaviour-exclusions/print>, 2023.8.10. 최종검색).
-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Permanent exclusions and suspensions in England”, 2023.7.20.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permanent-and-fixed-period-exclusions-in-england>, 2023.8.10. 최종검색).
- 영국 법령정보 홈페이지,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Introductory Text”,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0/introduction>, 2023.8.10. 최종검색).

- 프랑스 -

- Insee References, 「Securite et societe」 Edition 2021, 2021. (원문 다운로드: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fichier/5763633/IREF_SECUR21.pdf, 2023.8.10. 최종검색).
-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De nouvelles mesures contre le harcèlement scolaire”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de-nouvelles-mesures-contre-le-harcèlement-scolaire>, 2023.8.10. 최종검색).
-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Des nouvelles mesures contre le harcèlement scolair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6509>, 2023.8.10. 최종검색).

프랑스 법령정보 홈페이지, “LOI n° 2022-299 du 2 mars 2022 visant à combattre le harcèlement scolaire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5287658>, 2023.8.10. 최종검색).

프랑스 법령정보 홈페이지, “Code de l’éducation - Livre V : La vie scolaire (Articles R511-1 à D567-2) - Titre Ier : Les droits et obligations des élèves (Articles R511-1 à R511-75) - Section 2 : Régime disciplinaire (Articles R511-12 à D511-58) - Sous-section 1 : Sanctions applicables aux élèves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du second degré (Articles R511-12 à R511-19),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1191/LEGISCTA000020663064/#LEGISCTA000020743428, 2023.8.10. 최종검색).

e-Enfance Association (<https://e-enfance.org/informer/cyber-harcelement/>, 2023.8.10. 최종검색).

_____ (<https://e-enfance.org/app3018>, 2023.8.10. 최종검색).

Liveration 2023.4.12.자, “Changement d’école pour les harceleurs: pour les associations, un «premier pas en avant» mais pas une solution miracle” (https://www.liberation.fr/societe/education/harcelement-scolaire-en-primaire-ce-sera-desormais-au-harceleur-de-changer-decole-20230412_ZY3SJV6GBH0JEXYHRR3IE26ZM/, 2023.8.10. 최종검색).

- 독일 -

Saskia M. Fischer/Nancy John/Wolfgang Melzer/Anne Kaman/Kristina Winter/Ludwig Bilz (2020.9.16.), “Mobbing und Cybermobbing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utschland – Querschnittergebnisse der HBSC-Studie 2017/18 und Trends”, Journal of Health Monitoring 2020 5(3), Robert Koch-Institut.

Cedric Vornholt, “Handy und Smartphone in der Schule – Handyverbot, Wegnahme und Cybermobbing”, Anwalt.de 2023.1.18. (<https://www.anwalt.de/rechtstipps/handy-und-smartphone-in-der-schule-handyverbot-wegnahme-und-cybermobbing-207814.html>, 2023.8.10. 최종검색).

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 “Die HBSC-Studie” (https://www.gbe-bund.de/gbe/abrechnung.prc_abr_test_logon?p_uid=gast&p_aid=0&p_knoten=FID&p_sprache=D&p_suchstring=14467, 2023.8.10. 최종검색).

- 일본 -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 「いじめの状況及び 文部科学省の取組について」(2022.11.24.), (https://www.cas.go.jp/jp/seisaku/kodomo_ijime_boushi_kaigi/dai1/siryou2-1.pdf, 2023.8.10. 최종검색)

文部科学省, 生徒指導上の諸問題の現状について(2000.12.)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03/toushin/001219b.htm, 2023.8.28. 최종검색).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長通知, “出席停止制度の運用の在り方について(通知)”(2001.11.6.), (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4121502/013.htm, 2023.8.28. 최종검색)

‘寝屋川市子どもたちをいじめから守るための条例’(<https://www.city.neyagawa.osaka.jp/material/files/group/17/izimezyourei.pdf>, 2023.8.28. 최종검색)

旭川市いじめ防止対策推進条例(https://www.city.asahikawa.hokkaido.jp/kurashi/218/251/257/d077793_d/fil/ijime_jorei.pdf, 2023.8.28. 최종검색).

朝日新聞(2022.11.12.), “いじめ被害者が別室登校に 教室に通い続ける加害生徒”(https://www.asahi.com/articles/ASQCC7618QC5UDCB011.html, 2023.8.28. 최종검색)

弁護士ドットコム(2022.1.6.), “いじめ加害者は出席停止にすべき? 改めて考えたい「最も大切な目的」とは” (https://www.bengo4.com/c_18/n_13991/, 2023.8.10. 최종검색)

読売新聞オンライン(2022.5.13.), “いじめ加害者に学校への立ち入り制限…自民作業部会が提言案”(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20513-OYT1T50122, 2023.8.10. 최종검색)

3. 언론보도자료

- 강득구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증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2021년 10월 1일자(<https://blog.naver.com/dulipapa/222523245602>, 2023. 5. 30. 최종검색).
- 강득구의원실, “[보도자료] 강득구의원,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17.5%에 그쳐”, 2023년 2월 28일자(<https://blog.naver.com/dulipapa/223031080124>, 2023.5.30. 최종검색).
- 강득구의원실, “[보도자료]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이상이 기각”, 2021년 10월 6일자(<https://blog.naver.com/dulipapa/22528489290>, 2023.5.30. 최종검색).
- 강원일보, “교육청 방화 시도 50대 구속”, 2023년 6월 30일자(<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61917292244123>, 2023.7.31. 최종검색).
- 강원일보, “헌재 “학폭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교체 조치는 합헌””, 2023년 2월 28일자(<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22808130035304>, 2023.7.31. 최종검색).
- 경기교육뉴스, “학폭, 관계회복 통한 갈등해결 먼저”...최우성 장학사, 36시간 법칙 도입 제안”, 2022년 3월 17일자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 2023.8.16. 최종검색).
- 경인일보, “[긴급진단] 인력 모자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21년 11월 3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102010000481>, 2023.7.31. 최종검색).
- 경인일보, “스파링 학폭 고교생 2명 ‘퇴학’”, 2020년 12월 31일자(<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230010006424>, 2023.7.31. 최종검색).
- 경인일보, “폭력에 멎은 학교…때린 자와 맞은 자 분리 ‘아직’”, 2021년 3월 19일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318010004097>, 2023.7.31. 최종검색).
- 경인일보, ““학폭 처벌 솜방망이” 피해 부모 행정소송”, 2023년 2월 14일자(<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210010001883>, 2023.7.31. 최종검색).

-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2023년 4월 12일자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66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moe&m=020402&opType=N>, 2023.7.31. 최종검색).
- 교육부, “[보도자료]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년 9월 6일자(<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500&lev=0>, 2023.7.31. 최종검색).
- 교육플러스,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은 ①전체 학폭 신고 사안 65%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2022년 12월 19일자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7>, 2023.7.31. 최종검색).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2023년 4월 12일자(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3197&srSearchVal=%ED%95%99%EA%B5%90%ED%8F%AD%EB%A0%A5&srSearchKey=article_title&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3.5.30. 최종검색).
- 국민일보, “1시간 넘게 ‘기절놀이’에 집단구타 징계는 ‘출석정지 5일’”, 2020년 6월 11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8322>, 2023.7.31. 최종검색).
- 국민일보, “대전서 17세 동급생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검거”, 2023년 7월 12일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57146&code=61121111&cp=nv>, 2023.7.31. 최종검색).
- 뉴스1, “학폭 엄벌 후 소송 시달리는 학교...현황도 모르는 교육부”, 2023년 3월 5일자 (https://news1.com/view/?id=NISX20230303_0002213727&cID=10205&pID=10200, 2023.7.31. 최종검색).
- 동아일보, ““가해학생 처분 수위 낮춰드려요”...‘학폭 전문 변호사 성행’”, 2022년 10월 10일자(<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9/115875569/1>, 2023.7.31. 최종검색).
- 동아일보, “학폭위 처분받은 학생 9%는 상습가해”, 2023년 6월 15일자(<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15/119773446/1>, 2023.7.31. 최종검색).

- 동아일보, “학폭 가해자 ‘맞폭’ 늘자… “증거 확보” 액션캠 달아 학교 보내”, 2023년 5월 13일자(<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512/119269877/1>, 2023.7.31. 최종검색).
- 라이프, “학교폭력에 자살한 아들 대기업 임원 관둔 아버지 사연”, 2015년 3월 31일자 (<https://www.wikitree.co.kr/articles/213385>, 2023.7.31. 최종검색).
- 매일신문, “성희롱 ‘피해-가해’ 학생 함께 시험 치르게 한 고교”, 2020년 6월 30일자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0063009484752979>, 2023.7.31. 최종검색).
- 매일신문, “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은 정당””, 2021년 9월 2일자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090215154355226>, 2023.7.31. 최종검색).
- 머니투데이, “극단 선택한 광주 고교생 ‘학폭’ 가해자 2명 “퇴학”, 나머지는 학부모 반발로 미정”, 2021년 8월 20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013421278966>, 2023.7.31. 최종검색).
- 머니투데이,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소송’ 전담 재판부 신설”, 2023년 2월 27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714304392719>, 2023.7.31. 최종검색).
- 비디오머그,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보내면 그걸로 끝인가요?”, 2022년 7월 15일자(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20799, 2023.8.10. 최종검색).
- 서울경제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10대들…성착취물도 찍었다” 2022년 11월 3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HFP5UJW>, 2023.7.31. 최종검색).
- 서울신문, “[단독] 반성문만 쓰면 ‘숨방망이’ 피해자 올리는 ‘고무줄’ 학폭 처분[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12월 12일자(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12008006&wlog_tag3=naver, 2023.7.31. 최종검색).
- 서울신문, “[단독] “처분대상서 초등 1~2학년 제외””, 2023년 1월 16일자(<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81/0003332514?date=20230116>, 2023.7.31. 최종검색).
- 서울신문, ““건당 300만~500만원” 증거수집 요령 주며 학폭 판 키우는 ‘조력자들’[학폭

- 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12월 5일자(<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5008003>, 2023.7.31. 최종검색).
- 서울신문, “‘절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 유족 “학교 가기 싫어했다”...‘학폭’ 수사 착수”, 2023년 7월 4일자(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14500203&wlog_tag3=naver, 2023.7.31. 최종검색).
- 서울신문, “‘ㅋㅋㅋㅋ’ 한줄 썼다고 가해자 된 학폭 피해자[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12월 5일자(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5001008&wlog_tag3=naver, 2023.7.31. 최종검색).
- 세계일보, “‘정순신 사태’ 계기...교육부,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립 추진”, 2023년 7월 17일자(<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17523352?OutUrl=naver>, 2023.7.31. 최종검색).
- 세계일보, “‘친구 남친이 성추행’ 구미 특목고 여학생 사건에 학교 측 미온 대처로 원성”, 2023년 7월 28일자(<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8515935?OutUrl=naver>, 2023.7.31. 최종검색).
- 시사인, “학교폭력 그 이후, ‘생기부 빨간 줄’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 2023년 4월 13일자(<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56>, 2023.7.31. 최종검색).
- 아시아경제, “친구 부모 험담한 고교생에...법원 “학폭 인정 안돼””, 2022년 6월 7일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0710411619129>, 2023.7.31. 최종 검색).
- 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용의자는 17살 이웃 여성”, 2017년 3월 30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70330002654065>, 2023.7.31. 최종 검색).
- 연합뉴스, “권익위, 학교폭력 가해자가 재심청구하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2017년 6월 15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5068400001>, 2023.7.31. 최종검색).
- 연합뉴스, “경산서 고교생 투신자살...‘학교폭력’ 유서(종합 2보)”, 2013년 3월 12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30312181900053>, 2023.7.31. 최종 검색).
- 연합뉴스, “인권위 학폭가해자 강제전학, 왕복 3시간 거리는 인권침해”, 2022년 6월

- 24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052000004>, 2023.7.31. 최종검색).
- 연합뉴스, “학교폭력 느는데.. 학폭위 30%가 4주내 심의 지침 못지켜”, 2022년 10월 17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7039900530?input=1195m>, 2023.8.31. 최종검색).
- 오마이뉴스, “‘기피학교’에서 2년간 학폭을 담당했습니다”, 2023년 8월 11일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952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3.8.14. 최종검색).
- 월간조선,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사의표현”, 2023년 2월 25일자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7152&Newsnumb=20230217152, 2023.7.31. 최종검색).
- 이데일리, “정순신 아들, 1년만에 전학.. 평균보다 11배소요 이례적”, 2023년 3월 22일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07846635545944&mediaCodeNo=257&OutLnkChk=Y>, 2020.7.31. 최종검색).
- 중앙일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2018년 2월 2일자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56>, 2023.7.31. 최종검색).
- 중앙일보, “집단 성추행 뒤 숨진 태한이 보고도 “레슬링”이라 한 부모”, 2020년 10월 23일자(<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02286>, 2023.7.31. 최종검색).
- 조선일보, “고교 단톡방서도 넘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2달간 같은 교실에”, 2022년 7월 6일자(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7/06/665KJGRITVGYPMXUUY4NAFK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3.7.31. 최종검색).
- 충청투데이, “외부전문가 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객관성 확보할 수 있나”, 2020년 10월 14일자(<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485>, 2023.7.31. 최종검색).
- 파이낸셜뉴스, “‘주먹구구식’ 학폭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2021년 3월 8일자(<https://www.fnnews.com/news/202103071709594483>, 2023.7.31. 최종검색).

- 한겨레, “가해학생 사회봉사 보낼 데 없나요?... 헛도는 학폭처분”, 2023년 3월 20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4347.html>, 2023.7.31. 최종검색).
- 한국교육신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종류 및 특징”, 2021년 7월 5일자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4069>, 2023.7.31. 최종검색).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2017. (https://www.kinds.or.kr/manual/%EB%B9%85%EC%B9%B4%EC%9D%B8%EC%A6%88_%EC%82%AC%EC%9A%A9%EC%9E%90%EB%A7%A4%EB%89%B4%EC%96%BC.pdf, 2023.7.31. 최종검색).
- 한국일보, “‘수능만 잘 보면 합격 OK?’... 학폭 가해자 못 거르는 ‘정시모집’”, 2023년 2월 28일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716560003687>, 2023.7.31. 최종검색).
- KBS,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2023년 2월 24일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3328&ref=A>, 2023.7.31. 최종검색).
- KBS 뉴스, “국회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의결”, 2023년 3월 22일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1920&ref=A>, 2023.7.31. 최종검색).
- MBN, “정순신아들 학폭 피해자 고통 막는 방법은...시간끌기 방지법 발의”, 2023년 3월 12일자 (<https://www.mbn.co.kr/news/society/4911109>, 2023.7.31. 최종검색).
- YTN, “대구에서 친구들 괴롭힘에 중학생 투신”, 2011년 12월 22일자 (https://www.ytn.co.kr/_ln/0115_201112221509487259, 2023.7.31. 최종검색).
- YTN, “‘전학 조치’ 가해자가 학교에 다니고, 피해자는 못 가는 기막힌 현실”, 2021년 7월 9일자 (https://www.ytn.co.kr/_ln/0115_202107092057251301, 2023.7.31. 최종검색).

Abstract



Counter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on Aggressor Students in School Violence

Lee, Seung-Hyun / Kim, Min-Kyu / Seo, Min-Su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urrent measures for aggressor students in school violence contribute to achieving the intended guidance purposes of those students as stipulated by the Act of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particularly in situations where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aggressor students are emphasized. This study also evaluated the implementation of current guidance measures for aggressor students by focusing on policy changes, shifts in relevant regulations, the fairness and expertise of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s of judicial precedents and media coverage, and foreign policies regarding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With improvement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current exclusive unit and the Committee of School Violence, professionals have been involved in establishing the countermeasure standards to ensure objectivity and expertise of decision-making. However, some deficiencies in expertise have been identified in the application of detailed standards. Moreover, it was difficult to evaluate the process as fully committed to “raise students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through the mediation between victim students and aggressor students, as pursued by the Act of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e immediate separation measure, which restricts aggressor students’ learning rights based on the ‘presumption’ of wrongdoing, led to conflicts in schools.

The nine measures designed for aggressor students aim to guide them onto

the right path and teach appropriate behavior. Yet, several measures have a strong 'disciplinary nature' and challenging to implement effectively within schools. For instance, an order to give a written apology to a victim student presupposes a genuine apology, but it often functions as a mere legal formality, lacking genuine repentance. Similarly, the service to the school or society aims to instill responsibility through service, but has proven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the lack of volunteer institutions, and its effectiveness in inducing repentance is questionable. The service to the school or society has often been used as a way to skip classes. Additionally, measures such as the prohibition against making contact have limitations. There was an issue where the anxiety of victim students could not be resolved due to the lack of a prohibition at the level of 'a restraining order' during the judicial phase. Dealing with cyber-violence also had a limitation in terms of response. Completing a special educational course or psychological treatment from experts from within and outside school lacks personalized application to aggressor students. Since the suspension of attendance does not equate to school suspension, there is a constraint in preventing contact between a victim student and an aggressor student. Concerning the change of class, schools face challenges with teachers and complaints, especially when the school violence is already known.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on aggressor student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revealed that many of these measures could not be effectively applied within schools. Post the decisions to tak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there are no follow-up actions beyond entering student records, and there is no system in place to monitor measure implementation continuously.

Early interventions and selective sanctions are essential to resolving conflicts before imposing measures on aggressor students in school violence cases.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should be immediately undertaken to facilitate aggressor students' repentance and aid victim students' speedy recovery. In contrast to

Korea's process of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cases, foreign countries focus on early intervention and conflict resolution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chool violence. In Korea, efforts to restore relations are made only in the Self-Resolution by Heads of Schools or the stage of the mediation of disputes by a deliberative committee. As a result, the conflicts between both sides escalate because they focus on drawing favorable issues with legal assistanc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cases by the Organization of Exclusive Units. To mitigate the potential for conflicts, an external conflict resolution expert should immediately intervene before immediate separation and fully explain the necessity and benefits of immediate separation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Immediate separation, which could restrict aggressor students' learning rights based on the 'presumption' of wrongdoing, might contribute to intensifying conflicts. Hence, it is more appropriate to utilize immediate separation selectively in cases where it is urgently needed, such as group violence or sexual violence.

In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s regarding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 deliberative committee needs to actively engage in the mediation of disputes stipulated by the Act of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rather than focusing only on decision-making. Currently, the mediation of disputes under the Act of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emphasizes monetary settlements, bu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a deliberative committee to make more active efforts toward conflict resolution by including a provision of "the mediation of conflicts related to school violence" in the provis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18.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nclude a new provision that "if a settlement is reached as a result of mediation of a dispute, the result of the medi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 of measures" in Paragraph 8. Measures such as mitigation of measures or taking no measures may also be considered as possible approaches.

In the Standards Applicable to Each Measure to Aggressor Students, factors

such as the deliberateness and continuity of school violence inflicted by an aggressor student, the extent of reconciliation, and the degree of repentance of an aggressor student are taken into account to calculate assessment scores.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establish criteria for determining basic and additional factors, such as defining the time point of continuity determination criteria, modifying the assessment score scale for the reconciliation,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eachers to express their opinions to determine the degree of repentance of aggressor students.

Individual measures against aggressor students who commit school violence need to be tailore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schools and the intended guidance purposes. First and foremost, an order to give a written apology to a victim student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genuine apology,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he format of a written document. The prohibition against making contact with a victim student should align with restraining orders' standards, while improving the learning environment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aggressor students' learning rights. In instances of cyber-violence, additional measures such as mobile phone usage restrictions, similar to those implemented in foreign countries, should be introduced to complement the prohibition against making contact with victim students. Regarding cyber-violence, regulations encompassing communication device restriction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easures. Concerning the service to the school or society, the scope should be expanded beyond public o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llowing for a greater variety of choices. Systemat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process and outcomes of the measur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peci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programs for different types of aggressor students and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for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Given the absence of a limit on suspension periods,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criteria, such as a

maximum of 10 days or setting suspension periods selectively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aggressor students.

The measures taken against aggressor student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are all disciplinary measures. However, as seen in the example of Germany,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educational measures” and “disciplinary measures” and categorize them in a way that the intended purpose of each measure is well understood and adhered to aggressor students. Furthermo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ensure that remedial procedure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can be materialized. Incorporating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allows for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measures based on sincere implementation, such as the release of juvenile delinquencies under proper guidance conditions or the suspension of the prosecution with the supervision for the juvenile, could encourage aggressor students to actively engage in education or treatment.

Ensuring proper implementation of measures is important, but it is equally crucial to establish a systematic process for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school violence after these measures have been taken. To prevent recurrence, there needs to be continuous monitoring of aggressor students,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schools and relevant institution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enable proactive support when needed.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the aggressor students’ parents in the post-management phase is necessary. Not only should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be placed on the aggressor students, but their parents should also deal with this issue with an ongoi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is purpose, a coordinated system within a local community that provides resources for parental guidance and necessary support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protection of victim students, efforts should be made to take a cautious approach,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secondary victimization if a procedure is implemented to obtain the consent of victim

20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students at all stages of the procedure.

Keywords: School Violence, Aggressor Students, the Act of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educational measures

연구총서 23-AB-0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발행 | 2023년 11월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인 | 하태훈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 979-11-91565-88-1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